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2013년도 박사학위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정 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u>지도교수</u> 김 형 태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7월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정 순

박정순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문 영 희



심사위원 <u>조성은</u>

심사위원 이 준 우

심사위원 강대중

심사위원 김형태

2014년 7월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감사의 글

시작 전에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저를 오늘까지 학부로부터 대학원에서 학문을 배우게 배려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소박한 논문이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적응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살았다면 박사가 된다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나를하나님께서 통일을 대비하여 선택하여 학부에서부터 박사까지 준비하게하여 주신데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따름입니다.

저를 오늘날 박사까지 갈 수 있게 기초를 닦아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여 주신 훌륭하신 스승님들과 학우님들이 계셨기에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모두 서울기독대학교 스승님들과 학우님들의 은혜입니다.

학문의 길에서 학부시절부터 오늘까지 좋은 동기(同期)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서로를 보듬고 마음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공(功)을 나에게 돌리는 우리 박사동기들, 실상은 그런 말을 듣기에 부족한 사람임을 잘 알기에 그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부하는데 정신이 팔려 저를 대한민국에 데려온 사랑하는 둘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은 막내사위를 잘해주지 못하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공부를 어머니에게 양보하고 묵묵히 어머니를 기도해준 사랑하는 둘째딸과 막내사위에게도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외손녀 김상아와 외손자 김남율 빠쁘다는 핑계로 한번 안 주지 못하여 미안하기만 하였습니다. 60년의 오랜 세월을 영상 필름이 돌아가듯 꿈속에

서나 볼 수 있는 이북에 두고 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만 딸과 만사위 그리고 얼굴도, 목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으로 그리 는 나의 귀여운 외손자 리광과 외손녀 리미영, 또한 고향의 향기를 풍 기는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하고 온 제자 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느끼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이 하나씩 하나씩 희미하게 저의 머릿속에서 멀어져갑니다. ... 그리고 길 지는 않지만 새로운 터전에서 만남이 된 황금보다 귀중한 학우님들이 모 두 고마울 따름입니다.

특별히 잊지 못할 학부시절부터 오늘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처음으로 받아 학교의 관심과 사랑을 혼자 독차지 하게 지켜주시고 격려해주신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님들과 박사동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박사과정 입문에서부터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관심 갖고 후원하고 지지해주신 든든한교회 송자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부터박사까지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특히 말없이 조용한 미소를 지으시며저를 졸업할 수 있게 극진히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김형태 지도교수님과 논문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 힘을 주신 박사 이수천 목사님, 그리고 저의 논문을 위해 바쁜 시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여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장문영희 교수님, 심사위원 조성은 교수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준우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박사과정을 마침니다. 감사드립니다.

<목 차>

국문초록\Ⅲ
Abstract233
I. 서론1
제1절 문제의 제기1
제2절 연구의 목적11
Ⅱ. 이론적 배경12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현황12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12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현황14
제2절 가정폭력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경험20
1. 가정폭력의 정의 및 특성20
2. 가정폭력관련 현행 북한 법 및 남한 법 비교32
3.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인식과 경험40
제3절 사회적 차별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55
1. 사회적 차별의 개념 및 정의55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57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67
1. 심리·사회적응의 개념67
2.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70
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73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75
제5절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과 심리·사회적응 관련 선행연구77
Ⅲ. 연구방법87
제1절 양적연구 방법88
1. 양적연구모형88
2. 양적조사대상과 자료의 수집89
3. 양적연구 조사도구의 구성89
4. 양적연구의 자료분석 방법97
제2절 질적연구 방법98
1.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방법98
2.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111
3. 질적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자의 선 이해112

Ⅳ. 연구결과 ····································
제1절 양적연구결과114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14
2.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121
3. 주요변인의 집단 간 차이125
4. 주요변인의 상관관계137
5.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140
제2절 질적연구 결과148
1. 연구참여자의 구성요소148
2. 질적연구의 주요범주에 대한 기술 분석151
V. 결론 ···································
제1절 양적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179
제2절 질적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184
제3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190
참고문헌199
부록(설문지)220

<표 차 례>

<표-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	3
<표-2>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표-3> 가정행복상담센터	7
<표-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13
<표-5>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5
<표-6> 북한이탈주민 재북 출신지별 현황	15
<표-7>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지 현황	16
<표-8>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	17
<표-9> 북한이탈주민 국내 재북 직업별 유형	17
<표-10> 북한이탈주민 국내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18
<표-11> 가정폭력관련법 주요 변화	33
<표-12> 최근에 개정된 법률자료	36
<표-13> 난민 신분 탈북자 국가별 거주 현황	64
<표-14> 연구방법 요약	87
<표-15> 설문지 배부 , 회수 및 분석상황	89
<표-16> 가정폭력인식 하위척도와 역문항	90
<표-17> 가정폭력 직접경험 하위척도와 역문항	91
<표-18> 가정폭력 간접경험 하위척도와 역문항	92
<표-19> 폭력태도 하위척도와 역문항	93
<표-20> 폭력허용도 하위척도와 역문항	94
<표-21> 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역문항	94
<표-22> 사회적 차별의 하위척도와 역문항	95
<표-23> 심리·사회적응 하위척도와 역문항	96
<표-24> 가정폭력관련 법 인식 하위척도와 역문항	97
<표-25> 인터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9

<班-2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15
<	조사대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117
<	조사대상자의 취업과 경제형태119
<班-29>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와 가족 실태120
<亞-30>	주요변인의 일반적 특성122
<亞-31>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124
<噩-32>	폭력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127
<亞-33>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집단 간 차이130
<翌-34>	심리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132
<丑-35>	사회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134
<丑-36>	주요변인의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136
<班-37>	주요변인의 상관관계139
<丑-38>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142
<班-39>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144
<翌-40>	남녀에 따라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146
<亞-41>	남녀에 따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147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경험 구성요소149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경험151
<翌-4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166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174
<	북한이탈주민 제도 주요내용193

<그림차례>

[그림-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34
[그림-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절차4	0
[그림-3]	연구모형8	8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양적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로부터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 경험'이라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양적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성비는 남성이 135(36.5%), 여성이 235(63.5%)로 전체 응답자의 2/3가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심리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예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차별경험은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폭력인식변인과 폭력경험변인이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폭력인식변인과 폭력경험변인은 심리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다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보다 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주요 구성요소와 범주들의 특성을 보면 연구 참여자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구성요소와 9개의 범주와 22개의 하위 범주로 정리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경험 구성요소에서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4개 범주와 11개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범주는'어린 시절 폭력경험', '폭력과의 결혼', '이용당함', '가정폭력 인식부재'로 나타났다. 범주에 따른 각 하위범주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됨', '이혼/새가정', '인신매매를 당함', '할 수 있는 곳이 없음', '시아버지에게도 구타당함', '자식을 낳고 엄마 이해함', '180도 달라짐', '가정폭력이해가 부족했음', '남한에 와서 가정폭력 알게 됨', '가정폭력을 알게 됨'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희망을 안고 들어오지만 가정폭력과 결혼이 어린 시절 폭력 가정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생활 역시 폭력가정의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른 모습을 갖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결혼하여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대로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구성요소에서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3개 범주와 6개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범주는 '중국에서 차별', '또 다른 차별', '남한사회에 속하지 못함', '국적 없음', '도움을 받 고도 차별함', '한국인데도 이방인으로 차별함', '따가운 시선',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 '인종차별 받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별 및 폭력상황 에 있는 결혼생활이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 울거나 소리 내어 통곡하는 경우가 있으며, '말하는 짐승과도 같음'(인간의 가치가 없음)며 차별을 당하던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은 남한사회가 다문화인을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흑인보다는 낫게 여기지만 조선족보다는 못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 구성요소에서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범주는 '우울증'과 '분노'이며, 각각 하위범주는 '우울증', '울다', '분하다', '화가난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였고, 남한에 와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우울증이 심각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 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마음을 토로할 때가 없어서 바닷가나 공 원에 나가 '통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과거에 주로 참고 살아왔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폭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폭력에 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격한 폭력으로 치닫기 보다는 폭력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정도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정신 질환을 앓다가 심하면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한에 도착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이질적인 남한문화와 언어로 인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변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끝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은 역경을 해치고 성장하는 모습의 발견과 분단의 아픔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역경을 타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제시된 것처럼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이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단어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가정폭력 인식, 사회적 차별, 심리·사회 적응, 가정폭력 법 인식.

I.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이 발생하였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죽음과의 힘겨운 시련을 겪으며 제3국 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회정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김정은이 정권을 집권이후에 남한으로 입국이 20%로 줄었으며¹⁾ 2014년 3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6,483명이다. 윤여상(2003: 354)은 현재 중국등지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70%가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북한사회에서는 "여자와 명태는 3일에 한 번씩은 두들겨 주어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있다. 과거부터 남성이 행하는 폭력을 공공연하게 묵인해왔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고 "맞을 짓을 하였으니 맞았겠지"라고 말을 할 정도로 폭력이 용인되어왔다.

특히 북한사회에는 '가정폭력'이란 용어자체가 없다. 북한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말 대신 가정불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정폭력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역시이러한 가정폭력 및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살아온 사람들이다.

북한사회에서도 매년 분야별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를 조사하지만 일반 인들은 통계조사를 하여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가정폭력과 이혼통계에 대한 논문을 내놓는 것은 없다.

1990년 이전에는 가정폭력을 될 수 있으면 '조직'2)에서 교양 설득하는

¹⁾ KBS1남북의 창 2013년 6월에 방송되었다.

^{2) &#}x27;조직'이란 북한사회자체가 개인이 없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당은 '당조직', '여맹조직', '직맹조직', '사로 청조직', '농근맹조직'등으로 분류가 되어 움직인다.

^{&#}x27;당조직'은 당원들로, '여맹조직'은 당원이 아닌 가정주부를 말하며, '직맹조직'은 공장기업소에서 장가를 같은데 당원이 아닌 사람, '사로청조직'은 만 30세미만인 청년들, '농근맹조직'은 농촌에 입당 못한 사람 등으로 분류가

방향으로 하지만 정 안되면 법적으로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1990년 대부터는 가정폭력을 국가기관에서 단위별로 가해자상담3)을 통해 교양설득하여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조직에서 이혼을 승인4)받아야 법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환경 속에서 살아온북한의 특수한 사회 환경에서 학습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가 남한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속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국회가 주체한 세미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서 참석한 가운데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과 그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2010)에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관련된 연구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로표상되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성은, 2011: 252).

머지않아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1,000명이 넘는 수가 입국하였다면 2006년부터는 매해 2,000명이 넘는 수가 남한으로 들어왔으며 2009년에 이르면 그 해에만 약 3,000명이 입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2부: 600).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이 심각하여도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1997 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혀 교육프로그램 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 가정폭력은 물리적·정신적 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을 겪는 과 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회구조적 불이익을 준다. 폭력은 피해자로

되어다.

³⁾ 북한사회에서는 상담을 개별담화라고 한다. 그리고 집단 상담이란 개념이 없다.

⁴⁾ 가정폭력 이혼문제 너무도 많이 제기됨으로 조직이 개입을 하여 이혼을 막으려고 한 것임.

하여금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것은 자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불평등과 어려움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이희연·박태정, 2010: 161). 가정폭력이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그 피해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Reisenhofer & Seibold, 2007: 3. 강호선, 2011: 24 재인용).

2014년 1월까지 전국에 예산이 지원되는 가정폭력상담 기관5)은 <표 -1>에서 나타나 있다. 전국에 193개 기관이 있으며, 그 중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이 서울에는 12개 기관이며, 지금 현재 전국의 가정폭력가운데유독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상담기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1개 기관 밖에 없으며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여성의긴급전화1366서울센터6)에서 가정폭력 실태 2014년 1월-5월 통

⁵⁾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u> </u>									(2014)	년 1	월말 :	기준)		(1	단위:개	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님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	193(2)	12	11	4(1)	8	10(1)	5	4	49	8	4	12	15	12	22	14	3
통합	10	1	1	2	1	-	1	-	1	2	1	-	-	-	1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광주21, 대구1(장애인+통합)), 통합상담소 수는 가정폭력상담소 수에 포함

<표-2>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2014년 5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계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기 족 문제	본인 신상	미혼모	기관 문의	기타
내국인	1925	767	85	7	5	24	40	232	4	149	639
외국인	5	1	1	0	0	0	1	0	0	0	2
1월 계	1930	768	86	7	5	24	41	232	4	149	641
년누계	1980	768	86	7	5	24	41	232	4	149	641
내국인	2009	696	117	18	5	34	48	186	1	107	797
외국인	15	9	1	0	0	0	0	0	0	0	5
2월 계	2024	705	118	18	5	34	48	186	1	107	802
년누계	3954	1,473	204	25	10	58	89	418	5	256	1443
내국인	2,437	887	155	16	27	29	61	248	8	169	837
외국인	10	1	0	0	1	0	0	0	0	0	8
3월 계	2,447	888	155	16	28	29	61	248	8	169	845
년누계	6401	2,361	359	41	38	87	150	666	13	425	2,261
내국인	2,421	882	244	11	17	53	69	258	15	189	683
외국인	11	6	0	0	0	0	0	2	0	0	3
4월 계	2,432	888	244	11	17	53	69	260	15	189	686
년누계	8833	6945	603	52	55	140	219	926	28	614	2947
내국인	2499	1086	173	17	18	36	65	260	11	238	595
외국인	15	6	0	0	1	1	0	0	0	0	7
5월 계	2514	1092	173	17	19	37	65	260	11	238	602
년누계	11,347	8037	776	69	74	177	284	1, 186	39	852	3549

⁶⁾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 분석자료<표-2>에서 11.347건 중에 가정폭력 상담이 8.037건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유학생 또는 대사관에서 망명하였거나 3.8선을 넘은 남성 입국자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남성보다 여성의비율이 높아 졌으며, 한때는 이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북이 증가했건만 이제 더 이상 탈북이 쉬운 일이 아니며, 북한에서는 더 집중하여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2,000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는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중간역할, 브로커들의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입국경로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되고 있다(최승호, 2010: 3).

2004년부터는 북한에서 바로 직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나서 자란 환경은 나고 자란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북한에서 익혀온 모든 관심을 버리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터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김형태, 2004: 7).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절대 소수자(minority)로서 이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박정순, 2008: 31). 최근에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함에따라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강란혜, 2008: 158). 배영미(2014: 4)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고 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 구성들과 함께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에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고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문제도 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600).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차별 장벽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전영평·장임숙, 2008: 240). 이렇듯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하여 겪는 적응의 문제는 정치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문화적 적응, 심리

적 적응, 사회관계적 적응, 건강수준의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Kim, 2008; Song, 2009; 김정규외, 2014: 90 재인용).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경우남녀역할과 지위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부부불화와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꽤 있다(조영아·전우택, 2005: 22).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가정폭력관련 방지관련특별법이 1997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실태는 전체가정의 31.4%가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김재엽, 1998: 133, 류도희, 2013: 16).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Campbell, 1991; Kobin, 1995), 폭력자에 의해 한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 상실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아동에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해숙, 2004: 612).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연로한 노인에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접할 수 있고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다(이연복, 2001: 181).

남한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정폭력문제를 가지고 이슈화를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7) 1990년대 들어서가정폭력의 문제가 성폭력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입법의 과제가 되었다.8) 199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남편이 61.0%, 남한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남편의 50.5%가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4년간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자살하거나 가해자를 살해한 사

⁷⁾ 여성폭력문제에 관한 국내 여성단체의 활동은 남한여성의 전화연합이 발간한 남한 여성 인권운 동사 , 1999를 참조하였다.

⁸⁾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경위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1999년 12월 3일 주관한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이찬진,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법시행상의 문제점"을 참조하였다.

전이 40여전에 이른다고,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김재엽, 1998: 96).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 문제를 먼저 경험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원주민(natives)과 이주민(immigrants)의 가정폭력을 비교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로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서 가정폭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essler et al, 2001; 남보영·김재엽, 2013:72 재인용). 문헌자료는 가정 내 폭력의 희생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정신질환이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폭력의 결과라는 점을 주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충격이 큰 인생경험의 부정적인 정신적 건강효과를 기록하고 있는 증거와도 일치하고 있다 (Breslau 외 다수, 1998, 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및 Nelson, 1995; Kessler et al, 2001: 487 재인용).

윤여상(2002: 74)은 북한이탈주민이 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빈곤의해결이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정치적 망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시 갖는 기대수준은 생계보장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욕구임을 알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탈북은 더 이상 식량난으로 인한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없이 부단한노력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이에관계없이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 가운데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과 상호지지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꼽힌다. 가정 내에서 개인들의 생물학적 기본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동시에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받게 된다(김재엽, 1998: 88).

여성가족부(2005)에서 실시한「2004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자료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율은 28.4%로 보고되었고, 남편 주도의

아내 폭력율은 12.1%. 아내 주도의 남편 폭력율은 3.7%로 나타나 가정 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최선희·김희수, 2007: 77 재 인용). 또한 여성가족부(2010: 699)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층은 40대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0.5%, 50대 17.8%, 60대 4.7%, 20대 3.3%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72.3%가 30대에서 40대 연 령층에 해당되었다. 피해여성들의 결혼 상태는 혼인 중이거나 동거중인 경우가 43.6%로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2009년까지만 하여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남한 사회에의 정 착, 특히 경제적, 심리적 적응에만 치우쳤으며, 남한사회에 입국하는 북 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았던 것이 다. 그러나 연구자가 2009년 국회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하나원'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늘 현재까지 '하나원'교육프로그램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이 없으며, 전국가정폭력실태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사회를 이루는 취 약계층의 하나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생활과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꼭 필요한 일이다(여성가족부, 2010: 601).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으로 상담하여 주고 있는 기관은 남북하나재단이 있지만 가정폭력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기관은 가정행복상담센터 한기관 이며, 가정행복상담센터 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실태10)가 <표-3>에서 잘

<표-3> 가정행복상담센터 현황 (2014년 5월말 기준)

											<u>(단위:명)</u>
구분	계	가정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가족	본인	미혼모	기관	기타

⁹⁾ 교육과정에서 ①정규교육과정(12주 392시간)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46시간):심리검사, 집단상담,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121시간):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해, 한국사 등 교육, 생활현장 체험, 역사문화 탐 방 등 실생활 위주의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ㅇ 진로 지도 직업적응훈련(174시간):적성 검사, 직종 설명회, 직업훈련기관 방문, 직종별 직업훈련 등 기초 직업적응능력 제고 를 필요로 한다.

[○] 초기 정착지원(51시간): 정착금 지급, 거주지 배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을 한다.

②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259시간)

[○] 일과 전후 과정 : 우리말 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운전이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한다.

[○] 주말 과정 : 요양보호사, 정착사례 특강, 체육 문화활동 등을 한다.

¹⁰⁾ 가정행복상담센터의 가정폭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여 주고 있다. 상담통계에서 보여주듯이 2014년 1월-5월까지 상담건수 3,2204건 중 610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에서 당한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력, 고문피해 후유증 때문에 건강의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적응에서 사회적 편견과 무시, 격멸, 정신적, 육체적, 외상 후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공포 속에서도 남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동시에 이들이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먼저 입국한 가족들이 제3국이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뒤따라 입국시키는 경향이들고 있기 때문에, 단독 입국한 후에 원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을 남한에서 다시 이루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강은희·이현림(2008: 87)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1998년 7월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6년 4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 문제도 그들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개입하여야 한다. 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2중 3중의 폭력과 사회적 편

		폭력				갈등	문제	신상		문의	
내국인	640	86	45	17	5	54	33	120	2	24	254
외국인	15	3	1	0	0	4	1	0	0	0	6
1월 계	655	89	46	17	5	58	34	120	2	24	260
년누계	655	89	46	17	5	58	34	120	2	24	260
내국인	387	96	11	1	8	29	34	94	0	17	97
외국인	186	9	1	0	5	2	12	126	0	0	31
2월 계	573	105	12	1	13	31	46	220	0	17	128
년누계	1228	194	58	18	18	89	80	340	2	41	388
내국인	503	121	43	2	2	16	31	156	0	27	105
외국인	19	7	0	0	3	0	0	0	0	0	9
3월 계	522	128	43	2	5	16	31	156	0	27	114
년누계	1750	322	101	20	23	105	11	496	2	68	562
내국인	682	130	52	1	4	22	58	261	0	43	111
외국인	19	8	0	0	0	0	0	2	0	0	9
4월 계	701	138	52	1	4	22	58	263	0	43	120
년누계	2451	460	153	21	27	127	169	759	2	111	622
내국인	729	138	62	8	5	27	50	237	1	59	142
외국인	24	12	0	0	2	7	0	0	0	0	3
5월 계	753	150	62	8	5	34	50	237	1	59	145
년누계	3204	610	215	29	34	161	219	996	3	170	767

^{**} 참고자료 : 가정행복상담센터 nttp//counsellng1004.onmam.com

견뿐만 아니라 탈북자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무시, 격멸, 가족들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정체감과 혼란, 가정폭력의 공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열악한 상태에 있다.

가정폭력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늘어나는 가정폭력은 항상 곁에 있었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알면서도 방관했던 문제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심각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마음의 병이 가정 내에서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오랜 기간 얻은 마음의 병을 단 하루만의 상담과 치료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박가람, 2014). 국민으로서 가정11)을 행복하게 화목하게 꾸려가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사명이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하여 왔지만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어 오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오래 동안 서로가 다른 체제에서 다른 문화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존의 문화 속에서 우리 문화에 동화 되는 데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며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정폭력속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및 사회적 차별을 조사하여 가정폭력이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가를

¹¹⁾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항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3항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 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함께 어울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그것이 가정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가정폭력자료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북한을 떠나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까지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사회적 경험에 이들 폭력 및 차별경험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주장12)에 따라 2010년 여성가족부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실태만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및 사회적 차별을 먼저 확인하고, 가정폭력경험 및 사회적 차별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폭력경험 및 사회적 차별경험과관련 맥락을 찾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연구자는 2009년 7월 3일 국회방송의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북한이탈주민여성 1만 명 시대 삶의 현장"에 출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주장을 한 바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3.8선13)이 막혀있어서 제3국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다. 윤여상(2001: 3)은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북한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며, 윤여상(2003: 188)은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종교, 출생지, 민족 그리고 소속집단과 국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전영평과 장임숙(2008: 239-240)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으로는 내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외국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이들의 지위는 애매모호하다. 특히 남한과북한이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동기와 정치적성향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는 관계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내부의 경계인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아래 <표-4>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책을 여러 차례 바뀌어 가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이 깃들어 있지만 밖에서 들여다

^{13) 1953}년 7월 27일 정전담판에서 휴전으로 하였다.

본 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집단은 정부 기관과 약간의 시민단체 및 교회 등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을 해야하는 대상은 남한사회이며 남한 주민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뿐 아니라 남한사회 전체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양계민·정진경, 2005: 98).

<표-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 순자 특별원호법(62.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79.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귀순용사로'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 ('93.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								
1997~1999	기존의「귀순」의 개념을「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1999~2004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2006~2008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윤여상(2002: 66-67)은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에 대한 용어의 설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성격과 탈출상황,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어려운 탈주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탈출목적 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 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이 국내로 오는 것은 일괄적으로 '귀순'으로 처리해 왔으나, 국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측에서도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불리 웠지만 2008년 11월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조에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현황을 북한이탈주민의 관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90년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적은 인원이 입국하였으나 이들의 1998년 이후 국내 입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표-5>에서 보여주는 것같이 12월 말까지 입국 수는 26,124여명이 넘는다고 통일부가 밝히고 있다.14) 2014년 3월말까지 26,483명이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된 인원이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14)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하였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2월말까지 총 20,399명의 북한이탈주민

²⁰⁰⁷년 2월 국안이탈구민 총 업국사구가 1만명을 넘어졌고, 2010년 12월발까지 총 20,399명의 국안이탈구민 이 국내에 입국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 도에는 약 77%를 차지를 하였다.

²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조 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이 법률은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한다.

12월말까지 총 20,39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 년도에는 약 77%를 차지하였지만 2014년 6월말 기준 총 26,854명이 입 국한 가운데 남성은 8,078명이고, 여성은 18,776명으로 남성보다 여성비 율이 70%로 나타나고 있다.

<표-5>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2014년 6월말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6 (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131	8,07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601	18,77 6
합 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732	26,85 4
여 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82%	70%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2014.6. 보호결정기준으로 집계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연 2,500~3,000명의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는 북·중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1,5,09명이 입국하였다. 또한 재북 출신지역별 입국현황을 아래 <표-6>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 듯이 남한사회적응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표-6>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출신지별 현황(1948.1~'14.2월말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계
남	206	59	917	61	399	334	309	719	4,465	249	154	44	78	7,994
여	306	65	2,144	112	523	374	208	1,666	12,493	158	215	25	85	18.374
합계 (명)	512	124	3061	173	922	708	517	2,385	16,958	407	369	69	163	26.368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2014년 3월말까지 26,483명이 입국한 가운데 남성은 7,734명이고, 여성은 17.581명으로 남성보다 여성비율이 69%로 나타나고 있다.

함경북도가 탈북인원이 많은 이유는 두만강을 끼고 중국과 인접하고 있으며, 대체로 중국 맞은편은 친척들이 살고 있으므로 탈북이 쉬웠다. 2012년 통계에서 본다면 함경도 출신(76%), 20대 40대(74%), 여성(69%), 수도권 거주(67%)의 통계가 나왔다면 2014년 6월말 기준 통계는 아래 <표-7>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표-7>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14.6월말기준)

(단위 : 명)

									(= 1) - 07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211	1,825	667	285	252	231	175	183 256		
여	4,358	5,216	1,613	645	736	670	527	727	778	
합계	6,569	7,041	2,280	930	988	901	702	910	1,034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2	150	125	152	116	132	51	6,953		
여	428	459	367	399	370	298	127	17,718		
합계	570	609	492	551	486	430	178	24,671		

※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사망,말소,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지 현황 2014년 6월말 기준 통계를 본다면 서울시거주자가 6,569명보다 경기도 7,041명으로 제일 많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2,28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은 지방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이 되지 못한 결과에 집중이 되었지만 최근에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0년 10월 22일에 재단으로 발족하고 전국에 30여개의 '하나센터'를 설치하여 정착을 도와 준 결과 지방에도 점차 거주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아래 <표-8>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30대 7,890명(29.9%)가 제일 많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20대 7,339명(27.8%)가 많이 입국하였다. 40대 4249명(16.1%)로 입국을 하였다.

<표-8>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유형(~14.2월 말기준, 입국당시 연령)

(단위 : 명)

								(411 . 07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577	1,483	2,169	1,905	1,135	418	307	7,994
여	575	1,746	5,170	5,985	3,114	935	849	18,374
합계(명)	1,152	3,229	7,339	7,890	4,249	1 ,3 53	1,156	26,368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입국하였으며, 입국의 연령대에서 나타 나듯이 고난의 행군시기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또 부모가 다 굶어 죽었거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교도 못가고 '꽃제비'생활로 자기의 생명부지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나이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제는 남한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표-9>에서 북한에서 직업별 유형들을 보면 다양한 직업들이 입국하여 사회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표-9>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재북 직업별 유형(~'14.2월 말 기준)

(단위 : 명)

										(12 11 + 07
구 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등)	기타	계
남	320	605	3,421	2,956	69	66	187	289	81	7,994
여	100	92	6,530	9,793	970	151	345	254	139	18,374
합계 (명)	420	697	9,951	12,749	1,039	217	532	543	220	26,368

출처 :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특성과 대조를 이루는 남한사회와의 갈등 양상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직업을 본다면 무직·부양자 12,7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노동자 9,951명이 입국하였다. 1990년부터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생활고 때문에 탈북한 여성들이 많았으며, 중국에서 숨어 있는데

도 여성이 더 안전하였다는 점이 많은 여성들이 탈북하게 된 경우로 보인다. 북한의 직업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남한 사회적응에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응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영어를 배운 사람은 여기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러시아어를 배운 사람은 조금 힘은 들어도 그래도 고등졸업생보다는 적응력이 빠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 <표-10>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표-10>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14.2월 말기준)

(단위 : 명)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 원	인민 학교	중학교 (구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계
남	382	116	705	4,861	677	885	343	25	7,994
여	360	116	1,065	13,535	1,762	955	445	99	18,374
합계(명)	742	269	1,770	18,396	2,439	1,840	788	124	26,368

사망,말소,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출처 : 통일부자료 www.unikorea.go.kr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시작된 대량 탈북이 부모를 잃고 학교도 못가고 고아(꽃제비)로 정처 없이 중국에서 떠돌다 입국한 아동·청소년들이 많았다.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이 심리·사회적 어려움이나 가족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생각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여러 문제들은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이정윤, 2004: 165). 사회적으로 위기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가출, 학업중단 등 청소년이 부적응 행동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김정수, 2008: 272).

현재의 학년배치 방침은 학력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평균 25세 정도 자기 연령보다 낮

은 학급에 편성되는데 자존심이 상하여 학교에 다니기 싫어지기 쉽다. 실제로 학력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6: 362).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교육에서도 차질이 생기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입국하기 때문이다. 지금 고등중학교 18,396명이 제일 많이 입국한 것으로통일부 자료에 나타났다. 2004년도부터 가족단위입국과 좀 더 좋은 삶을찾아 지식인들이 많이 입국이 되었다. 지금 현재까지 지식층(엘리트)은전문대 2,439명, 대학이상 1,840명, 이와 반대로 무학력이 788명이 입국하였다. 무 학력은 고난의 행군시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떠돌다가 입국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현재 나이가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대상이 있으므로 1980년 이후 출생들 중에 평생교육으로 학력인정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다. 그와 반대로 엘리트들은 북한에서배운 지식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항에는 북한의직업에 따라 채용을 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이들의 출신배경과 입국 전 제 3국 체류경험, 그리고 국내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제3국 체류경험이 많을 수록 적응 수준이 낮은 것이 알려져 있다. 연구자의 상담경험에서도 보여주 고 있지만 지식수준과 나이에 따라 적응수준이 높다(윤여상, 2001: 108).

최근에 의사들을 따로 교육을 하여 의사검정시험을 볼 수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령상 문제와 교육의 차이로 장벽을 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북한에서 의학용어는 라틴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를 든다면 임상에서는 크게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비뇨기내과, 소화기내과 등으로 분류하여 배워주지만 남한처럼 인체를 세분화하여 나누어 배워주지 않으므로 힘든 상황이다. 북한의학과 남한의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체의 세분화를 배운 것과 신체를 크게 분류하여 배운데서 합병증환자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북한에서 배우고 온 엘리트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조금만 본인이 노력한다면 정착이 빠르다. 그러므로 학력에 따라 적응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가정폭력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1. 가정폭력의 정의 및 특성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과 같지 않다. 첫째,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둘째,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가정폭력은 가족구성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본다면 첫째 신체적 폭력,15)언어·정서적 폭력,16)경제적 폭력,17)성적폭력18)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은 은폐되는 폭력,19)반복되는 폭력,20)중복되는 폭력,21)순환되는 폭력22)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학습되는 경우가 있다(여성가족부 중앙회, 2014.7.2.).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가정 내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¹⁵⁾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행동자유 구속.

¹⁶⁾ 욕설, 폭언, 가족 비난, 심리적 괴롭힘, 외부 관계단절, 일거수일투족감시.

¹⁷⁾ 경제적 방임, 유기, 경제활동 통제, 지출 목록 감시, 양육비 미지원.

¹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부강간, 강제불임 및 낙태, 자녀에 대한 성학대.

¹⁹⁾ 사적 공간 내 발생, 사적인 묵인.

²⁰⁾ 오랫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

²¹⁾ 배우자, 자녀폭력, 부모폭력.

²²⁾ 세대간의 되물림.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다(강은희, 2009: 1). 그동안 가정폭력문제는 많은 부분이 은폐 또는 축소되어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가정폭력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대응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정폭력은 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상해를 입히는 것이며 이를 연구자들마다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으며, 용어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방임, 유기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²³⁾

김승용(2002: 41)은 폭력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체적, 심리적, 성적이든지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 상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기물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고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용어의 혼란도 있지만 가족원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정폭력24) 속에는 아동학대, 아내학대, 배우자 학대, 아내 구타, 배우자

^{23)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한 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남한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 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²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구타, 아내폭력, 배우자 폭력, 노인학대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학대는 주로 권력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가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를 폭력과는 구별하였다고 한다(김승용, 2002: 41). 가정폭력에 대한정의는 다양하고 용어의 혼란도 있지만 가족원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폭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김미애, 2010: 589).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며,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의 넓은 유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 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미애(2010: 589)와 이연복(2001: 180-181)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폭력행위가 있음을 유의미하며, 대체적으로 파워(power)를 가진 자가 약한 사람에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타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즉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가족성원간의권위, 위계에 의해 폭력의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며, 반복적. 지속적으로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도기봉, 2008: 66). 특히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더더욱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폭력사회에서 탈출하여 또다시 제3국에서 폭력에 심하게 노출과 함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남한에 입국하여서도 브로커비용과 가족에대한 생활을 책임지다 보니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09호 공포일 2011.03.30 시행일 2011.03.30 일부개정)건을 말한다.

유가 없으므로 대처에 미흡하다. 이러한 예방교육이 집단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프로그램에 넣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가정폭력의 원인과 영향 및 실태

(1)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남한의 전통적 가족문화에 따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의 영향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이다(김재엽, 1995: 90).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증상은 신체적 고통, 심리·정서적 증상, 사회적 장애, 가족기능 장애로 나누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가정폭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가정적,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나누어 보았다(김재엽, 1996: 21). 다른 사람들에 대함 반감 또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도 종종 갈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물론, 적대감은 다른 원인으로부터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 및 적대감의 현상을 구분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traus, M. A. 1979: 77).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원인이 개인 내적인 것인지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상호작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고 가정폭력 현상 또한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김미애, 2011: 590). 가정폭력에 대한 요인 연구가시작된 초창기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연구의

초점은 가정폭력 행사자의 정신 병리에 기반한 개인적인 관점이었다. 즉 많은 연구가들이 개별적인 신념이나 개인의 기질적 관점에서 가정 내 폭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이다(Walker1977~1978: 9 김재엽, 1998: 89 재인용). 그들은 더 나아가 갈등으로 인해 초래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회적 단위-국가, 학문적 분과 또는 가족 붕괴의 위험으로 치닫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갈등을 억누르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어지고 실패하거나 또는 적대감의 누적으로 인한 집단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부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한다(Straus, M. A. 1979: 75-88).

남보영·김재엽(2013: 75-76)은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이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연구들에서는, 부족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자원, 스트레스 등 기존에 밝혀진 가정폭력 가해 요인이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양상이 가정폭력 영향 요인에 있어서 이주민과 원주민만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이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연구들에서는, 부족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자원, 스트레스 등 기존에 밝혀진 가정폭력 가해 요인이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결과는 가족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궁극적으로 가정 해체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김미애, 2010: 587-611).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은 어느 특정 대상에 국한하여 일시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 안에서, 다중적인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빈곤 여성이 학대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Torres et al., 2000: 305).

가정폭력의 경우 그 발생 원인이 타인에 대한 폭력에 비해 복잡하고 피해자와 행위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화되기 쉬우며 폭력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류도 희, 2013: 25). 가정폭력과 관련된 일반 이론들은 학자들마다 살아온 시대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이유와 함의를 설 명하고 있다. 폭력의 원인이 똑같은 상황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 니며,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성격이 다르며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과 같이 가정폭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은 개인의 성격과 과거 경험의 학습된 행동과 같은 개인별 차이에 의해서 일어 날수도 있고 당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에 의한 차이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다양한 영역에 서의 문제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폭력으로 본다. 아무리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 쪽이 행한 일에 대해 짜증을 낼 때가 있으며, 또는 부부가 좀 더 행복한 가정 을 유지하기위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옥신각신하거나 싸울 때도 있다. 왜냐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 또는 부부 모두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살 아가는데서 피곤하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폭력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다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란 말자체가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끼리 만나 가정을 이름으로 서로가 이해와 양보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야 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생 각에서부터 많이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남한 이민자들에게 보다 많은 스트레스 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증가되는 스트레스는 나아가 부부관계나 가족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재엽, 1997: 98).

장덕희(2001: 5)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실제적으로 만나 부부간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폭력원인을 면접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일반 가

정의 아내 입장에서 보는 폭력 원인들을 간접적으로 규명하거나 또 행위 자만을 대상으로 또는 신문기사나 보호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기록 내용을 정리하여 폭력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김미애(2008: 7)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제하는데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접근에 그쳐 실제적인 가정폭력의 원인을 찾는데 미약했으며 이는 가정폭력 상담현장에서 폭력의 원인 규명과 폭력 발생에 가담하는 각자의 기여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폭력 행동 근절에 제한을 주었다. 그러므로 특정 사회, 특정 계층에게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원인과 내재된 유의미를 설명할 때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되기는 어렵다.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구성원이 미움이나 반감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다면 갈등으로 표출된다(Straus, M.A. 1979: 75-88).

북한사회에서 폭력성향이 가장 강한 청년기에 성격과 심리변화가 가장심한 사춘기와 청년기로서 자신의 환경과 지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저항, 반발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여 일탈을 충동하게 되지만 북한사회 자체가 폭력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되기도 한다.

김재엽·류원정·오세헌·이현(2014: 84)은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한편 가정 내 중복적폭력 경험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일반 이론들은 학자들이 속했던 시대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이유와 함의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드러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드러나는 문제와 동일한 면이 많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폭력 발생 원인으로 탈북 남성의 남한사회부적응 문제와 부부간 적응 수준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가 정폭력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 탈북 남성의 가정폭력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남보영·김재엽, 2013: 73).

최근 들어 가정폭력을 가지고 사회가 문제를 삼고 있지만 줄어들기 힘들다. 그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원인과 증상에 따르는 예방적 차원이미비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만 보아도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 그들이 겪어온 것을 치유할 사이 없이 생계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들의 주호소를 보면 병원에서 진단이 없다는 것인데 본인들은 시름시름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받는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탈북을 하였지만 제 3국에서 기약 없는 생사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남한시도로 성공은 하였지만 그 모든 환경이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질환으로인하여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대 받은여성의 상처받은 후의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다른 연구들도 학대의 정도와 PTSD의 심각도 정후 간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더구나, 학대당한 여성 중에서 PTSD징후는 학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Straus, M. A. 1979: 182).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쁨도 잠깐이다. 그것은 북한과 제3국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고문피해, 인신매매, 우울증, 공항장애,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들이지만 생계는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또 다른문제의 하나는 건강상 문제와 가족 구성간의 갈등과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남한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문제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복합적인 가정문제가 가정폭력 발생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가정문제인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 영향 및 실태

북한사회는 국가권력 구도가 유일관리제의 구조화된 사회이며, 또한 강제력에 의한 완전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에 대하여 해당 조직에서 취급을 하며, 크게 법적제제도 없으므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사회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일정하게 용인되는 사회인데다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사회이다. 때문에 북한의 남성들은 가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이 남한에 와서도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부부간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 폭력은 심리적 불안과 분노와 좌절의 악순환을 불러 가정은 물론사회적응에서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양정훈, 2007: 16)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되었으며, 부부간 신체적 폭력 (16.7%), 정서적 폭력(42.8%), 경제적 폭력(10.1%), 성 학대(10.4%), 방임 (10.4%)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여성 가족부, 2010: 712-715). 또한 2011년 남한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류도희, 2013: 68).

북한이탈주민 결혼기간은 10년에서 20년 미만이 29.6%, 20년에서 30년 미만이 26.3%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피해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을 짐작케 한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이 51.2%, 대졸 이상이 24.7%로 나타나 피해여성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가 있는 경우는 60.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699). 배우자 폭력

(IPV)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신적 및 물리적 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보건의 문제이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거주하는 여성은 통상 극심한 물리적, 심리적 및/또는 성적인 폭력의 반복적인 사례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상처가 되는 사건이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인 위험과통제 불능의 특징을 가진다(Pico-Alfonso, M. A. 2005: 182).

김재엽(1996: 23)은 1992년 남한 갤럽 조사는 여성의 61%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1993년 보건복지부는 7,500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한여성의 60%가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2012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 대비 27.9%증가하였고 재범률도 '08년7.9%에서' 12년 32.3%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3).

조사대상자의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부부 폭력률은 88.5%로,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51.3%로, 두 가정 당 한 가정은 부부 사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50.3%, 중한 신체적 폭력은 22.7%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부부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0: 634). 또한 긴장은 화, 절망, 우울 등의 감정을 유발시키며 이것은 범죄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긴장해소 능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김재엽 외, 2014: 83).

남한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도 남한인 가정폭력조사에서 남한 인 가정 중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경제·직업에 연관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 중

38.5%가 1년 동안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였다.(김재엽, 1998: 106).

최근 일 년 간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 남성은 57.1%(56명)으로 남한 남성의 9.9%(85명)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이들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보영·김재엽, 2013: 71). 태국 남한대사관 여직원들이 현지수용소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현지 조사를 마친 뒤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행정원들이 고성과 강압적 언사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공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태국 주재 대사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진서연, 2012: 204-205).

경찰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08년 7.9%에서 12년 33.1%로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도 가정폭력 피해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니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율은 훨씬 높은 실정이다(인터넷, 2013.5.7.).

구례경찰서 (2013.5.6.)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해 보면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노인부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재엽(1998: 172)은 성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폭력적인 것으로 알려졌고,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경향과 이와 상반되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가정폭력의 특징은 가정 내무의식적 인권침해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Norton A. J.(1980: 63)은 핵가족의 생활 과정에 수반되는 진화 과정은 전통적인 결혼의 붕괴 빈도 증가가 수태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장래에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대상의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을 측정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PTSD를 겪고 있는 내담자 가DSM-IV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불편 감을 호소하 고 있는 증상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형적인 PTSD의 특성과는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지니고 있 다(윤여상·김현아·한선영, 2007: 694-695). 상처 받은 경험의 심리적 후유 증은 세 가지 분류에서 표현될 수 있다; (a) PTSD에서 참조되는 것을 포함 하여 심리적 징조 및 심리적 스트레스와 기능 부진의 다른 징후 (b) 귀책과 태도를 포함하는 인식 변경, 및 (c) 학대 관계 내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벗어 난 관계 기술에 지장, 물리적으로 학대당한 여성에서 다수의 정신적 장애가 표현된다. 상처 받은 후의 스트레스성 장애 (PTSD), 우울증 , 분노, 불면, 식사 장애, 사회적 기능장애, 자살 충동 및 시도 및 상당한 학대 행동 발전 가능성 증가된다(Pico-Alfonso, M. A. 2005: 182).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여성 90% 정신적·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로 하여 남한사회 정착하는데서 고통스런 경험과 뒤섞여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더욱 심하게 표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박정순(2008: 37).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제 3국을 걸쳐 입국하는 과정에 더욱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입국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보면 종군위안부 못지않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며, 사회적 차별문제들이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인권을 논의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주제로 이들의 동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문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에 두고남한주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국민이라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김광웅·이봉근, 2011: 5).

2. 가정폭력관련 현행 북한 법 및 남한 법 비교

먼저 북한이탈주민가정폭력을 보기 위해 가정폭력관련 법에 들어가 북한의 가족법과 남한의 가족법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북한의 가정폭력관련 법 현행

북한의 가족법25)은 1991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3년 9월 23일 개정이 되었다. 가족법은 총 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법은 제1장에서 가족법의 규제대상과 사명,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결혼연령, 근친결혼의 범위, 결혼형식, 결혼무효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식 관계를 비롯한 친척들 간의인격적, 재산적 관계를, 제4장에서는 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상속 제도를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벌칙에 규정에 대한 법적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기본법의 제1장 제4조26)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²⁵⁾ 북 한자료 세터

²⁶⁾ 가족기본법의 제 1장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 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가족기본법의 제 1장 제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가족기본법의 제 1장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북한의 가족법의 사명을 본다면 제1조27)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 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밝혀져 있다 (북한제정법 법률센터, 2007)고 하였지만 가정폭력을 법으로 만들어 진 것은 없으며 북한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본인이 속한 해당조직28)에서 먼저 해결방도가 나올 때까지 상담을 통해 다루며, 폭력의 경중에 따라 해당조직의 승인에 따라 법에서 재판으로 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낯설어 있으며, 북한에서는 '가정불화' 또는 '부부가 싸웠대'라고 표현을 한다. 이러한 생활패턴으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서도 북한사회에서 살아온 생활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절실히 중요하다.

2) 남한의 가정폭력관련 법

정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과 지원제도를 만들어 왔다. 가정폭력관련법 주요 변화는 <표-11>에 잘 보여주고 있다.

<표-11> 가정폭력관련법 주요 변화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6. 4. 28.	법의 목적 개정: 건전한 가정육성→피해자보호와 지원
2009. 5. 8.	전국위기전화설치신설: 여성의 긴급전화 설치 운영근거마련

다. 가족기본법의 제 1장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 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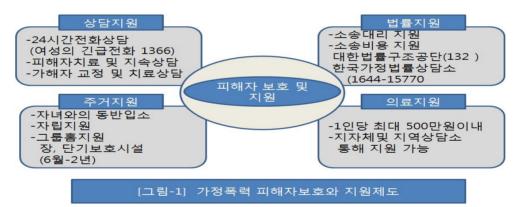
²⁷⁾ 북한제정법 정보센터에서 '북한 가족법'

²⁸⁾ 기관마다 당 비서(당원위주로 하는 상담원), 여맹조직(여성상담원)을 말한다.

2010. 2. 4.	피해자 지원강화: 아동관련 비용지원확대
2010. 5. 17.	피해자 지원 강화: 긴급구조 시 경찰 동행요청 가능
2012. 2. 1.	피해자 지원 강화: 사법경창의 신고 현장 출입 가능
2013. 7. 30.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직업 훈련비지원 추가, 상담소 종사자 동행요청,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조사, 현장조사 거부 시 행위자에게 5백 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출처 : 여성가족부 서울중앙회 2014년 7월 2일

남한의 가족법을 본다면 국민으로서 가정²⁹⁾을 행복하게 화목하게 꾸려가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사명이기도 한다. 가족을 이루는 원칙과 가족의 형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조직 체계로서의 가족기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한다(이선미·이은희·황진숙, 1988: 38). 현재 정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인해 제대로 충당을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그림-1]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서울중앙회 2014년 7월 2일

²⁹⁾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항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인부·양·양·유·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3항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 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예산부족으로 가정폭력 쉼터가 제대로 운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쉼 터 역시 50%지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종족유지를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 형태, 신분의 승계(承繼), 신분에 기인하는 재산의 승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의 전 체계를 가족법이라고 한다. 남북한이 서로가 가족법을 다루는 방법에도 차이를 보이듯이 가정폭력에서도 더더욱 다를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실태는 사람을 중요시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법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제3국을 걸쳐 들어오는 과정에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며, 더구나 복합적인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방지 관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큰 유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최근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와 여야 각 당의 가정폭 력방지법 입법 준비와 함께 가정 폭력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김재엽, 1996: 1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2013.6.27일자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이 통과되어 2014.1.31일 시행되었다.

가정폭력관련 법이 시행 된지 5년이 된 현재 가정폭력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후에 실시된 99년 조사와 비교하여 법인지도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가정폭력 법 인지도는 오히려 99년도 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은 아래<표-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표-12> 최근에 개정된 법률자료

번호	법 평 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 개정구분	소관부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1.21.	법 률	제12327호	2014.7.2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2014.1.28.	법 률	제12340호	2014.9.29.	일부개정	법무부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년 6월 20일

최근에 발표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0), 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궁 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들 간에 심각한 상처를 갖게 되고 급기야는 가정이 해체 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숙지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 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에 매우 유익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법인식과 가정폭력가해간의 관계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2007.10.17.]

³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김준호(2004: 15-16)는 법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며 시대에 따라서도 법을 인식하는 양태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법의식에 관한 연구의대부분은 법 준수 차원의 연구와 법 의식적 차원의 연구로서 법에 대해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법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하는 법에 대한관심도와 태도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인식정도와 법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법의식으로 정의하였고, 법의식은 민주시민이가져야 할 핵심 자질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특히 가정폭력의 영역 중 개인에게 입히는 심리·정서적 피해를 제외한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써, 사지와 몸통의 운동장애와 뇌의 기질적병변 등으로 인한 보행,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폭력의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해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개인의 가정폭력관련 법인식의 직접적 영향과 함께 개인의 법인식은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외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엽·이병화·윤여원, 2011: 203).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이다. 올바른 법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법 인식은 가정폭력관련 법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보았으며, 유만수(2000: 6)는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연구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식정도가 아내구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아내구타에 대한 폭력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노근성(2004: 58-62)은 폭력행위자와 법의식과의 관계 연구에서 가정 폭력행동과 대인폭력행동은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인폭 력행위자의 법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폭력행동이 낮다고 보 고 하였으나,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의식은 폭력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법의식이 기타 영향요인과 상호작용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정폭력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대응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김재민, 2013: 43).

이러한 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나오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하여서는 관심밖에 있다 보니 예방교육은 더 말할 수 없으며 가정폭력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실태는 외국인(다문화)들도 많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와는 달리 분리하여이들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률

2014년 1월 2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법무부에서 발표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³¹⁾을 만들어 적용하고

31)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 한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7).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강 유기와 학대의 최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 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최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최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최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최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 283조의 최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최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최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최
 - 사. 「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있지만 전체 국민이 다 이법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가정폭력을 방지 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기위한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가 벌써 12년 이 되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2012년에 비해 2013년 에 4배나 증가하였다.

국제적인 입법 활동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1994년부터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시작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등이 3년 여 년 동안 활동 끝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어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특례법'32)등 2개의 가정폭력관련법이 공포되고, 다음해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곽병선, 2003: 342).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도 최근에만도 여러 차례 수정 보안이 진행되고 있다.

장덕희(2001: 5)는 법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한 행위'로 규정하여 반드시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여 폭력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조차 모르며, 범죄절차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가정폭력이나 폭력을 경험할 때는 이미 때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원'을 퇴소하여 브로커 비용과 북한의 가족의생사를 위해 돈이 필요함으로 법을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quot;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quot;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quot;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quot;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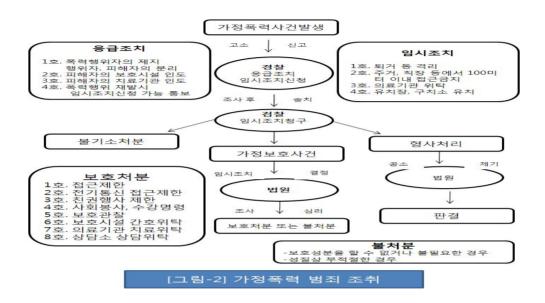
⁷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quot;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³²⁾법률 제5436호, 이하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함), 동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7호, 이하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지 못하면 받아 볼 수가 없다.

[그림-2]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절차에 대하여 잘 설명이 되어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인식과 경험

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인식

의식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폭력'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폭력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식조사와 실태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이춘화, 1995: 9).

1970년 이후 현재까지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부부간 학대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싸움이 아닌 두려움과 위협 또는 강제, 위압이 존재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각각에 대한 정의 및 학대 행 동을 설명하기위한 구체적인 용어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가들이 다양 한 견해를 보이는 실정이다.

폭력의 수단으로는 협의의 개념인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널리 타격을 입히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유기까지 포함한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직접 폭력행위를 실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공범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이란 한국국적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시에는 남한에 들어와 결혼한 사실이 있는 그 가족 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재산상 손해와 손괴 그리고 방임과 유기 등을 말한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한다.33) 따라서 폭력의범위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보인다. 북한사회에서 공적·사적인 경우를 가리지 않고 가장 언어폭력을많이 사용하는 것은 권력통제기관의 성원들이다. 북한사회는 국가권력제도가 수직적 구조로 단일화된 사회이고 또 강제력에 의한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아무런 제재도 없으며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양정훈, 2005: 615). 특히 의무적인 노동, 정기적인 조직생활과 자아비판, 부족한 생필품과 식량, 단순한 삶의 패턴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은 북한주민들의 삶에서 폭력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양정훈, 2007: 7).

우리사회는 조직 폭력이나 학교 폭력 등의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강은희·이현림, 2008: 86). 가정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출

³³⁾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들을 정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확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 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는다.

청소년층에서의 물리적 및 성적 학대의 범위와 그러한 학대행위와 행동, 정신 건강, 생애 사건 및 부모의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이 있다(Dibb & Straus, 1990: 71).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 내의 폭력이다. 북한사회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일정하게 용인되는 사회인데다가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사회이다. 때문에 북한의 남성들은 가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데 이러한 성향이 남한에 와서도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부부간 폭력으로 나타난다(양정훈, 2005: 625). 북한사회에서 남성우월주의가 지배되던 시기는 이제는 점차바뀌어 가고 있다. 그것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 따라서 가정의 주도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경험

(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직접경험

여성가족부(2005)가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기혼 6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부부사이에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신체폭력의 경우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가 높았으며, 흉기로 위협하는 가정도 3배 이상 높았다. 아동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하고 폭력을 당한 경우가 있는 자녀에 대한 폭력비율이 남성 53%, 여성 64%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당한 청소년과 그의 부모들이 정신적 건강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강조된다(Dibb & Straus, 1990: 71). 청소년이 목격하는 가정폭력은 주로 부모간의 폭력과 직접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주로 청소년 학대나 방임과 관련이 된다(김재엽·이효정·송아영(2007: 30).

Conger, Rueter와 Conger(2000), McLoyd(1994), Hanson과 Shreeve(1997) 은 일차 적으로 경제적 궁핍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귀숙, 2014: 263 재인용).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바로 이 땅의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아동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내에서의 보호자와의 애착형성을 저해하는 환경 즉, 가정폭력이나 보호자로부터의 직·간접적인 학대의 경험은 아동의 발달과 성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영희, 2014: 156).

특히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직접경험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서야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정폭력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경험(김경은, 2013: 5)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병도·조춘범(2013: 71)은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은 80.5%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경험이 남녀대학생 모두 데이터폭력을 허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나타났다(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79). 선행연구들(Kim, 2003; Lee, 2012: 122)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내재화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범죄 등의 외현화 문제,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해나 자살행동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란, 2014: 270).

아동기 부모 간 폭력 경험은 가벼운 폭력은 40%이상이 한 번 이상 경험했으며 아버지에 의한 폭력이 더 많았다. 심한 폭력은 약 5%의 학생이 경험했다.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은 정서적 방임이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이 많았다(김은주·조경미, 2011: 97).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아동이 이를 경험하는 내용과 정도는 광범위하다(박근혜, 2012: 11). 청소년에게 미치는 가정폭력의 영향은 청소년이 직접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뿐 아니라 간접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재엽·이효정·송아영, 2007: 33).

북한이탈주민 아동들의 피해영향은 가정폭력의 가정에서 정서기능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 시절에 반복적인 체벌, 구타, 위협, 방임 등의 학대를 받은 아동은 잘못이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부정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상처로 인해 적대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외향적인 표출이 어렵고, 분노를 자신에게 내면화시켜 우울, 위축, 정서적 불안정, 신체적 고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안형숙, 2014: 186).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탈북여성 아내를 수차 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정폭력)로 중국교포 이모씨(38)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2013.9.5).34) 이 사례는 여성쉼터에 입소하였다 퇴소한 A씨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또 중국에서도 비록 브로커에 의해 팔려 갔지만 역시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가 남한에 입국하여 역시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례의 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2010: 631)가 북한이탈주민 조사대상자의 성장기 학대 경험과 목격선행연구자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폭력적 통제구조 속에서 북한주민은 폭력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폭력행위를 주위의 현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으로써 학습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둔다(Bandura, 1973). 결국, 가정 폭력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의 비율도 높아지며 회상기억으로도 유의미하며, 폭력의 직접경험만을 고려한 것과 달리 간접경험의 실태와 영향도 포함되며, 폭력 직·간접경험 비율이 모두 상당히 높으면 간접경험이 직접경험보다 더 많이 나타날

³⁴⁾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 A씨(44)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며 A씨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고 2007년 남한에서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이씨는 만취한 채 "오늘은 또 어떤 놈이랑 놀아났느냐"며 잠자고 있는 A씨의 얼굴에 칼과 망치를 들이대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중국교포인 이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혼인비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A씨를 때리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범행은 관내 탈북자를 관리하던 보안계 직원이 안색이 안 좋은 A씨에게 가정형편을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전화해 A씨를 찾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것이다. 김재엽·류원정·오세헌·이현(2014: 82)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성장과정 상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서 극단적 회의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적절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또 다른 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학습과 폭력의 세대전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즉, 아동기의 가정폭력의 피해 또는 목격 경험이 성인기 가정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폭력적 통제구조 속에서 북한주민은 폭력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학습하게 된다. 특히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적 특성은 개별적인 가족내에서의 부부 간, 부모자녀 간에 폭력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다시 폭력행동이 학습됨으로써 세대를 넘어폭력의 전승(cycle of violence)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Gelles, 1993; Kaufman & Zigler, 1989; 여성가족부, 2010: 602 재인용).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자체가 폭력으로 억압(폭력)으로 유지하는 사회이므로 권력과 법을 다루는 보위원을 비롯한 보안원들이 장마당과 열차에서의 언어 및 물리적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성적 폭력까지 공공연히 자행된다. 이러한 폭행 또한 북한 헌법에 명시된 북한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폭행은 또다른 폭행을 잉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도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양정훈, 2005: 618). 가정폭력피해여성 집단에서 심각한 괴롭힘의 강도와 빈도의 경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상대에게 모욕을 주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폭력적이며,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한다(이혜선·이수정, 2010: 143).

북한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폭력적 통제구조 속에서 북한주민

은 폭력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2010: 602). 아동기와 성인기의 반복적 폭력 경험이 아동학 대로부터 발생한 심리·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발달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중 아동기 학대 경험이 가정폭력 피해의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된다(김재엽·류원정·오세헌·이현, 2014: 8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의 중요한 요인 하나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폭력적 사회이며, 완전 통제구조 속에서 폭력행동에 대해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가정폭력 경험에서 학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정폭력의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한 상황만으로도 여러 가지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의 가정폭력경험을 한 아이가 가해행위 나 학교폭력 행위가 더 높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자의 북한이탈주민의 상담경험을 보면 주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성장 후 부부간의 폭력가해자가 될 위험이 아버지의 폭력을 을 목격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은 것을 보게 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간접경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라 함은 부모의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부모에게 직접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던 것을 말한다(박근혜, 2012: 12). 많은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거나 혹은 정신적인 학대 혹은 성적인 학대의 형태에 의해 영향 받는 경우로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경우에도 행동평가척도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Fantuzzo etal., 1991; Hughes et al., 1989; O'Keefe, 1994; Wolfe etal., 1985)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한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을 나

타났는데, 그 대표적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김정란, 2014: 270 재인용). 10대 때의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이 많을수록폭력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의 경향성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김재엽·이지현·정윤경, 2008: 34).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공격적인 부모의 역할모델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학습시켜 정서적으로 충동적이 되거나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Bandura,1978; Kerley, Kent et al., 2010; 김재엽·이동은, 2014: 135 재인용). 신체적 폭력목격이 언어적 폭력목격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Kitzmann et al., 2003: 173).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사용을 목격한 경험이 51.4%로, 물건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경우 83.4% 등으로 나타났다(이연복,2001: 187-197).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간 가정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증가시켰으며,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아동기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로, 폭력에 대한 학습, 폭력 사용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학교폭력에서 비행이 실제가정폭력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가정폭력목격경험이 아동성장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어린 시절에 보육원 아이들은 '생활의 공유', '외부세계와의 단절', '능력의 미달', 등 차별화된 특성(김경은, 2013: 339)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 가족의 의사소통능력을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대처 행동하는 중요한 인식(장윤옥, 2013: 231)을사회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 행위를 유발하게 됨과 동시에 그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가정폭력의 심리적 불안과 분노와 좌절의 악 순환을 불러 세대를 넘어 폭력이 전승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서도 심 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정폭력을 경 험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3).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특히 아내의 이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폭력허용대도가 존재해왔다(이연복, 2001: 181). 가정 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았으며(김재엽·이효정·송아영, 2007: 27), 폭력이라고 할 때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진 주된 특성 중 하나이다. Dibble & Straus(1980: 72)의 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건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적 시스템과 관련하여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을 향해 작동한다. 그러나, 다수의경우, 일상생활의 우연한 사건들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의 실현과는반대로 작동한다. 배우자 폭력에 엄격한 남성이 실제로 아내에게 폭력을행사한 경우는 8%에 불과한 반면, 배우자 폭력에 허용적인 남성이 실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폭력 허용도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남한사회적응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북 남성의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보영·김재엽, 2013: 71).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북한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라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여기고, 폭력을 남자들이 가지는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남한사회에 와서도 간주한다. 그러나 폭력의 허용적인 태도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반적 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을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폭력을 허용태도가 아내폭력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고, 김재엽(1997: 49-57)은 남성들은 매우 가치 있게 평가되고 가

족과 여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종속적이고 순종적이기를 사회적으로 강요받는다. 남편에 의한 의사결정이 많아질수록 즉 남성우위 형 권력구조 일수록 남편은 더 폭력적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 자체가 폭력의 통제를 정당화 해 온 북한의 사회문화 속에서 60여년을 가정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에 익숙 되어 왔다.

남한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김재엽, 1998: 90)에서도 아내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아내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은 아내 폭력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아내 폭력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실제적인 구타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경신·김정란(2001: 39)은 아내 학대의 세대 간 전이 과정을 연구했는데, 가정폭력 세대전이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violence begets violence)"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성장기 원 가족에서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등의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성장 후 생식가족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세대전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즉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영향으로 인한 폭력 가해자로서의 가능성 측면과 폭력 피해자로서의 가능성 측면이다. 그리고 세대전이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험이 많은 청소년 일수록 폭력사용에 대해 덜 거부하고 있고 그 효용성은 더 인정하고 있어 폭력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취해 의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이춘화. 1995: 81).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민들의 일탈과 저항, 불만에 대한 폭력적 통제방 식을 정당화해 온 북한의 사회문화 속에서 가정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력 에 허용적인 태도를 학습해왔을 가능성이 크다(여성가족부. 2010: 602).

최근 일 년 간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탈북 남성은 57.1%(56명)으로 남한 남성의 9.9%(85명)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이들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목 받았던 폭력 허용도 역시 탈북 남성이 남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 허용도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남한사회적응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북 남성의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보영·김재엽, 2013: 71). 뿐만 아니라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기반 하지 않은 강압적 사회통제 체제가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부부폭력이나 자녀학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일부 연구들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강압적 사회통제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 분노 등이 폭력적 성향의 확대로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억압된 체제와 감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등을 통해 억눌러왔던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시기를 걸치며 생존의 법칙을 터득하는 대신인간의 피폐를 가져왔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과 스트레스, 분노, 갈등은 폭력적 성향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북한사회에서 오래 동안 학습되어 온 습관이므로 남한에 와서도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한사회적응에서 어려움으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력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동은 폭력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폭력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면(김동기, 2009: 138) 가정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한다.

여성가족부(2010: 676)자료에서 북한이탈주민 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보다 많았다.

가정폭력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는 있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덜 거부적이고 허용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폭력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폭력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준호, 1992: 82).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비율이 낮지 않았으며, 특히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폭력 수용성은 정확히 말하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대인 폭력허용도 (AIV)는 일반적인 관계 폭력 수용성이 아니라 자칫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 적대감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일 수 있다.35)따라서 일반적인 폭력수용성이라는 개념을 강간신화와 성차별 고정관념, 개인관계 폭력 통념

³⁵⁾ Lonsway, K. A., & Fitzgerald, L. F. Attitudinal antecedents of rape myth accepta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704-711, 1995.

을 모두 하나의 폭력 허용성 인식정도로 간주한다(조윤오, 2010: 161).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조사관들은 개인적인 믿음 또는 성격의 경향의 관점에서가정 내 폭력의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Walker 1977-1978 참조).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폭력행위는 폭력적인 태도의 결과이어야 한다(Dibble, 1980; Straus, 1980: 71)

남보영·김재엽(2013: 71)은 폭력 허용도는 탈북 남성의 가정폭력 가해를 증가시키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가정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북한사회에서 학습된 폭력인식을 버리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들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나원에서부터 하나센터에서까지 꾸준히 하여 줄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이 개인의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인식된 것은 서구에서도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더욱이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자연스런 관습으로 인식해온 남한이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일이다(허소영·허남순, 2003: 103).

폭력에 대한 태도가 폭력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 중에서 Dibble & Straus(1990: 71-80)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폭력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가 피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의 관계를 중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유형이나 폭력허용도와는 다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폭력 유형 및 폭력 허용도를 구체적 행위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폭력에 대한 태도는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폭력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지칭한다(김준호·김선애, 1992:

43).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용하는 것, 즉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김재엽, 1996: 20). 폭력에 대한 태도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 나이다. 그러나 태도는 행동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태도와 행 동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랫동안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어, 폭력에 대한 태도와 실제 폭력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폭력허용도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대표하는 번민으로,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있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때린다.'는 진술로 나타난다(이서원·조성상, 2005: 113). 폭력행동을 묵과하거나 속으로 참아 버리는 것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게 할 수 있다고(서경현·최수동·김 익현, 2007: 154), 폭력경험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육태도가 답습이 되어 세대전이가 되며(한인영·홍준성·문현주, 2013: 181-182),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자살은 물론 왕따나 따 돌림과 같은 학교문제를 예방(김가령·전영주, 2013: 49)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아내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김재엽·김희진·최장원, 2010: 39)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살 때 사람들의 심리에는 개인적인 의지 자체로 내재된 분노와 저항, 스트레스 해소할 수 없음으로 인해 폭력적인 수단을 갈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양정훈, 2005: 608). 가정폭력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동기 가정폭력경험과 관계를 살펴보면어린 시절 체벌경험은 성장 후 개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와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었다(김재엽, 1998: 88).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분노조절이환전매개 모형이 아동학대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이해하는데 더 적절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이지연·오경자, 2008: 587).

가정폭력행위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보복가능성이 높고 재범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 수용성 - 폭력에 대한 통념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폭력 수용 태도는 거시적 측면에서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고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직·간접적 폭력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조윤오, 2010: 164-165).

가정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에 있어서 아내를 구타한 폭력남편은 아내를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김재엽, 1998: 90). 북한사회에서의억압된 생활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정서가 불안정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가 과격해지고, 잠재된 불만과 분노, 복수심 등이 1차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난다(양정훈, 2005: 615).

곧-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을 망라하여-'나 혹은 우리와 대등한 자율적인 의사소통존재'가 아니라, '나 혹은 우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적존재'로서 규정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집단에대한 '배제적 폭력'이나 인권 유린 사태가 또한 초래된다(선우현, 2012: 8).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에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을 한 성인은 모방과 학습을 통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기에 부모 간 부부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부부폭력이나 자녀학대가 없었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여성에게도 폭력 통념이 있고 여성의 폭력 허용태도 역시 어린 시절에 경험한 과도한 훈육이나 학대 경험 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조유오, 2010: 165).

북한사회자체가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에서 굳어진 관습과 의식 속에 잠재된 분노와 갈등 그리고 열등감은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우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폭력성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의 사회복지 현장실천에서 경험해온 것을 본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복합적인 가정의 성격을띠고 있으므로 북한사람, 남한 사람, 조선족, 한족의 가정폭력 형태가 다양하게나타나고 있다. 북한남성들의 경우에는 언어가 폭압적으로 뱉는 경향이 있으며중국 조선족은 무조건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죽이는 것이다. 남한 남성의경우에는 주로 가정의 이혼과 빛으로 허덕이는 남성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북한여성들을 이용하여 접근함으로 가정폭력과 이혼이 초래되게 된다.36)

제3절 사회적 차별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1. 사회적 차별의 개념 및 정의

차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평등인가 차별인 가의 문제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적지 않게 개입되기 때문이다. 차이와 차별의 구분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국가의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장인섭, 2004: 1-2)37).

차별에 관한법률조항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일차적인 헌법해석자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가 기존의 차별상황

³⁶⁾ 광주에서 남한남성과 살다가 토막살인, 천안에서 중국조선족 살인미수사건, 송파에서 남한남성이 갈라지자고 하였다고 두 눈을 칼로 찍은 사례들이 있다.

³⁷⁾ 평등권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함께 기본권 보장에서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 평등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상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차별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직접차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남녀차별을 일차적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인섭, 2004: 11).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간접차별보다 직접적인 차별을 심하게 받으므로 사회정착에서 부적응을 나타냄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못 한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2) 가접차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남녀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고 하여 이른바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장인섭, 2004: 1).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38)이 부당하다는

³⁸⁾ ILO 제111호 협약에 의하면,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배경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차별이라는 개념은 우리 문화의 가치지향성 내에 뿌리 깊게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지극히 당한 생활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불투명한 거래와 부정부패, 돈을 받고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 제도화 된 유명한 종교집단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미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차별의 정당화라는 공리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지향성에 차별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차별은 이미 유리 렌즈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의식할 수가없게 된 것이다(한세희, 2003: 243-244).

이론에서 사회적 차별이라고 할 때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생활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을 말한다. 우리에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은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이들의 지위는 애매모호하다. 그러므로 실제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7,000명이 입국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차별 장벽에 제거 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의 경험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암묵 (暗默)적으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부단히 인식된다.39) 출신성분의

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는 구분(distinction), 배제(exclusion), 선호(preference)라고 정의하였다.

³⁹⁾ 북한 사람들은 인민학교 시절부터 학기말이면 가계표(家系表)를 쓰며 대학 및 사회에서는 필 요에 따라 이력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가족 및 친척관계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출 신성분, 사회성분, 정당별(노동당만 표기)을 기입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분에 대한인지가

좋고 나쁨에 따라 주민들은 교육의 기회, 직업 선택, 출세의 기회, 사회적 지위의 제공에서 확실한 차별을 당한다. 북한의 평등론은 선전적인 것일 뿐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북한 내에서도 출신성분에 의한 공개적 혜택과 비공개적 혜택이 부여되어 철저히 차등화 되고 있다 (양정훈, 2005: 612).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적 차별의 정의적 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적합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소수자 담론과의 연력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소수자 집단의 범주에서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들이 먼저 북한 혹은 이북이라는 한반도내 출신지역과' 탈북자'로서의 제3국 체류경험의 소유로 말미암아 남한 내에서 기존사회 구성원과 문화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경향을 갖는다(이기영, 2006: 5). 북한 주민들은 출신성분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에 상관없는 교육과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양정훈, 2005: 622).

북한이탈주민들은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에 왔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즉, 사회적 차별이 심함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대체로 남한출신주민들의 북한출신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분단 상황에서 남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이들에게 투사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이수정·양계민, 2013: 398). 북한 사람들은 출신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멸시 등으로 인해 계층간 갈등을 겪게 되며 잠재적인 분노와 열등감, 복수심의 근원이 되고있다. 출신성분의 격차가 클수록 서로에 대한 반목(反目)과 질시(嫉視)가 심해진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북한사람들의 여러 형태의 집단의식 중에서도 출신성분에 의한 '계층 간 소속감'40)도 아주 강하다(양정훈, 2005: 612).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 출신성분에 따라 승진과 좌천, 처벌의 모습들은 간접적인 인식의 계기가 된다

⁴⁰⁾ 계층간 소속감은 자신의 출신성분에 대한인지와 주변의 동의와 이해, 소속감 등을 통한 사회 적 인지도를 통해 형성된다.

또한 2003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남한사람의 편견과 차별'(12%)과 '외로움'(12%)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에는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경직된 사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예민성 등을 들고 있다(Jeon, 2004; 김정규 외, 2014; 90; 재인용).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면서 직업경험이 없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열악한 직업 환경에 처하게 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생활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전영평·장임숙, 2008: 240). 최근에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충돌하기도 하였다(정은미, 2012: 312).

북한이탈주민이 설사 결혼을 한다하여도 남한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거지', '빨갱이', '간첩' 등의 단어로 언어폭력을 함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출을 선택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이 탈주민 집단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비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와 함께 국내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석' 인식과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선우현, 2012: 7-8).

우리 사회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세대 간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념적 편차가 크다. 특히 북핵문제, 대 북지원문제, 북한의 장래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처럼 북한과 관련 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장과 시각 차이는 극과 극을 달린다. 보통 탈북자로 통하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그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장이나 태도도 이념적성향만큼이나 다양하다.

정은미(2012: 313)는 그들이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시켰다면, 그들은 남한에서 새롭게 부여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또 다른 낙인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시키고 있는 점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분단체제에 의한 비평화의 구조는 복합적이라 할수 있다. 정부는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척 하지만, 정작 국내에 정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냉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격히 늘고, 그래서 남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짐짝 취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정원에서부터 국정원조사관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도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원 자체에서도 역시 무시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하여야 하지만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참가하지 않는 그들한테 벌점을 주어 정착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사회의 내부문제가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을자기네 동네에다 짓지 말라는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고, 자기네 아파트단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심

지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자기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이 일어난 셈이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법적으로는 엄연한 남한 인이며 남한에서 남한 주민들과 동등한 기본권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한 인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한 채 소수자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부당한 무시와 배제를당하고 있다(선우현, 2012: 1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는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26,483명에 이르며 해마다 2천~3천 명씩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여성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2004년부터는 입국자 중 59% 이상이 가족 입국이다. 이런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역대 정권들은 지원금 액수를 대폭 줄이고 정착금지원 기간이나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일용직 일자리와 잘해야 단기 계약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못 구하는 게현실이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두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남한의문화와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개인마다 원하는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장밋빛 희망'을 안고 남한으로 들어온 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개방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단 남북의 체제가 많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부터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궁핍과 어디 한 곳기댈 곳이 없는 외로움과 소외, 차별 속에서 또다시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성분은 북한사회에서 출생과 동시에 부여되는 사회의 직위와 물질적, 의식적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의미

를 가진다. 과장하여 이야기한다면 '인종적 편견'⁴¹⁾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인식된다.

윤인진(2004: 404-405)은 출신지역에 의해 남한사회에서 차별받는다는 집단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소수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조선족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선택한 북한인도 아닌, 남한인도 아닌 무국적의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도 출신성분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만 출신성분이 좋지 않으면 철저히 차별화가 된 사회를 거부한 사람들이다42).

정은미(2012: 321)는 북한은 해방이후 여러 번의 기회를 걸쳐 성분조 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을 하 여 철저히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였다⁴³⁾.

여성폭력을 인권문제로 인식할 때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행위자를 처벌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 해야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은 임의적 혜택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담지자로 위치지어진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기 존의 인권담론과 실천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김정란, 2006: 3).

또한 사회적 차별이 우리나라는 특수주의적 성향이 강한나라이다. 이 성향에 따르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의 친소관계와 상황적 필요에 따라 매번 다른 잣대를

⁴¹⁾ 김승철(2004).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서울: 자료원. p.239

⁴²⁾ 출신성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교육의 기회, 직업 선택, 출세의 기회, 사회적 지위의 제공에서 확실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

⁴³⁾ 출신성분 구분작업은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외국귀하인 및 월남자에 대한 요해사업',1981년 1월~1981년4월에 걸친'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개신사업, 1989년 10월~1990년 12월 주민재등록사업 등이 실시된바있다.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곧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난다(한세희, 2003: 246).

그 어느 사회에서나 차별적인 것은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못사는 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 후진나라 외국이라는 이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등이유로 차별하여 왕따를 주는 문화적 현상들을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에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하여 못살아서 남한으로 탈북 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주민들을 후진국에서, 무능력하다는 편견이 남한사회에서 보편화되어 남한 주민들의 편견으로 많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취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여외국인 노동자 기준의 임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개인주의에 비해 남한을 집단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 문화는 평등의 개념보다는 서열성을 강조하는 위계적인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게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의 서열성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가족주의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남순현, 2008: 59).

그럼에도 남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북한이탈주민집단은 북한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을 결행한 민족 구성원의 일부라는 점에서, 남한의 사회구성원들과 일정 정도 구별되는 이질적 정체성을 지닌 남한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국내의 북한 이탈주민집단은 한편으로 소수자 집단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의미의 소수자 유형과는 '거리가 있는', 남한 주민들과 동일한 민족 구성원이자 또한 동일한 국적을 지닌, 그러한 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남한인, 즉 북한이탈 남한인'으로 규정된다(선우현, 2012: 16).

북한이탈주민을 제일먼저 접하고 있는 해외 공관원들의 북한이탈주민 경시자세는 국익을 해하는 행동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해 외 공관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공복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진서연, 2012: 204-205).

북한이탈주민은 수 십 년 동안에 받아온 차별과 통제를 통해 내재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시간이 흐 를수록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해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양정훈, 2007: 1).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의 위계나 평등에 따른 수직적 교류와 수평적 교류를 통한 북한문화를 우리 문화의 틀에 맞추려고만하지 말고 북한문화도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음<표-13>에 보여주듯이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영국 581명, 독일 146명으로 제일 많이 난민으로 신청하여 이주를 갔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주하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

<표-13> 난민 신분 탈북자 국가별 거주현황

(단위: 명)

													(17: 11:	0/
구분	영국	독일	네덜 란드	호주	미국	캐나 다	노르 웨이	러시 아	덴마 크	스웨 덴	아일 랜드	스위 스	키르 기스 스탄	이스 라엘
누계 (명)	581	146	32	25	25	23	14	14	9	8	6	4	3	2

출처 : 난민 신청한 대상 통일부 내부자료(2014.3.)

주하였지만 이중에는 자녀들의 영어교육 때문에 또 일부는 남한사회적응에서 사회적 차별과 이방인으로서의 취급, 심지어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간첩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사회에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어제 오늘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 견디기 어려워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하 는 데서도 사회적 차별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직장에서 당 사자에게 항의하거나 남보다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도 착하거나 공부를 잘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차별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 탈선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죄를 짓고 수용소로 들어가 있 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역시 남한 죄인들에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고 한다. 생활총화는 북한의 수직형 의식통제구조의 말단 단위의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주민들의 모든 행동과 학습, 업무, 조직생활 등은 생활총 화를 통해 당과 수령, 조직에 충성하도록 강요당하게 된다. 또한 모든 주 민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교육의 기회, 직업 선택, 출세의 기회,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 확실한 차별을 받게 된다.(김영일, 2000; 여성가족부, 2010: 601 재인용). 북한은 몇 차례의 분류작업을 거친 후 1960년과 70년 에 이르러서는 북한주민 전체를 핵심, 동요, 복잡의 3개 계층, 51개 성분 으로 나누게 되고 그 골간을 유지하며 주민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서재 진, 1995; 여성가족부, 2010: 602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 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국가가 개개인의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충성을 다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서열을 인정하는 수직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의욕이나 자신감이 크게 좌절당하 거나 남한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극단 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개연성이 높다(독고순, 2000; 여성가족부, 602 재인용). 이렇게 남한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윤인진·최정민, 2010: 8-10).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규명하는 것이 이외의 '이등국민',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취급', '조선족 다음의 노동자', '북한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

람'등 남한사회내의 사회적 위치 매김의 흔적들을 보아도 주류사회에 대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사회 내 다른 소수자집단과의 비교적 차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이기영, 2006: 5).

사실은 나이가 좀 있는 50대 분들은 참고 견디고 있지만 20대-40대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지는 사회적 차별이너무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참기를 힘들어 하고 있다. 한 번씩 뉴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터지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는 눈물을 삼키며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아직까지 이방인의 취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차별 법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에 대한 법 자료는 한곳도없다는 것이다.

선행된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는 주로 이들의 삶의 일정부분을 조면하는 연구로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차원의 연구, 심리적 차원의 연구, 사회문화적 차원의 연구들이 분리되어 소수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통합적으로 분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기영, 2006: 8). 위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조선족 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한다.

본 연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 민의 인권문제가 많이 제기된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 자료가 없 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환경에 따라 그들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기준으로 강점 관점 접근 및 약점 관점 접근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볼수 있다. 먼저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에서는 (Sorensen & Telles, 1991; Torres, 1991; Jasinski, 1998; Caetano et al., 2000; Torres et al., 2000; 남보영·김재엽, 2013: 75 재인용) 적응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수민족 및 최근의 이민상태 등 수 많은 히스패닉계에 대한 2가지의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부가적인 또는 배가되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높은 비율의 배우자 폭력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Sorensen & Telles, 1991: 3). 이러한 분류 과정을 통해 통제변수인 심리·사회적 개념과 자아존중감, 심리적응, 사회적응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성을 띤 가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1. 심리ㆍ사회 적응의 개념

심리·사회적응이란 이주자 개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가짐으로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광신·김형태. 2011: 52). Lazarus(1977; 이수천·김형태, 2012: 39 재인용)는 적응은 두 종류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는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개체와 환경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현질적인 목표를 시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

다고 하였다(이수천·김형태, 2012: 93 재인용). 심리학적 자원이 이스트레스 성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발견된다. 생명 상황은 우울증에 상당한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신 병력과 인생에 폭넓은 사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에 더 취약하다(La Gory, Ritchey, & Mullis, 1990: 87).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입국하는 과정에 많은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을 안게 됨으로 심리·사회적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 '경제적 공황상태를 겪으며역할 변화와 인생 목표, 동기, 경제적 불안정, 육아 교육과 성장 과정에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Shuchter and Zisook, 1993; 이윤수, 2014: 90 재인용). 따라서 심리적응이나 사회적응 등 적응이라는 개념에는 문화적 맥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김형태, 2008: 52).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이해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이주난민연구 (Tyhurst, 1951; 1980; 1982; Rangaraj, 1988: 강숙정, 2009: 3 재인용)는 기아, 고문, 치욕, 박탈, 폭력 등을 경험한 난민은 새로운 사회에 빠른 적응이 어렵고 통제감과 자기 확신감의 상실로 인한 지나친 의존성,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및 수동성을 갖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남한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심리적특성과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5000년 동안의 역사를 함께 공유한 한민족이라는 이름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60년 이상의 물리적 분단과 체제단절에 의한 정치, 사회, 문화의 이질화체제 속에서 마치 서로를 낯선 이민족,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심리적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강숙정, 2009: 8).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이라는 것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로 취급하려는 현상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는 현실적으로 다르며,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인 특성도 다문화 대상하고도 달리 보아야 한다.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

심리안정 및 인성수련 프로그램'(강숙정, 2000)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은신, 도피, 수감 등의 위기 상황과 가족 생이별한 아픔, 재북 동포들에 대한 죄책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등으로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강숙정, 2009: 10). 그리고 이에 따른 죄책감과 심리적 긴장감이부모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oyd, 1992; 이귀숙, 2014: 265 재인용).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을 걸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tiffman, 1989; La Gory, Ritchey, & Mullis, 1990; De Man, Dolan, Pelletier, & Reid, 1993)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상의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수천·김형태. 2012: 87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심리적응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심리적응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적응과 관련한 Kelman의 태도변용 이론Kelman, 1961; 강숙정,2009: 12 재인용). 가족은 인간의 정서적 지지의 가장 기본적인사회적 지지체계로 가족과 동반 탈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적응의 차이는 크다(조하나·최연실, 2013: 1329).

특히 사회정책이나 경제적인 지원, 직업교육이나 남한의 문화를 배우는 일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심리적 적응일 것이다. 그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에 문화적 적응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응을 성공적으로 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한 사회에 적응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리적 적응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하나·최연실, 2013: 1328).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이나 북한 내 잔여가족과 관련

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조영아, 전우택, 2005: 19). 북한이탈주민 한 인간의 정신, 신체,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체적 시각으로 조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조영아·전우택, 2005: 20).

2.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

북한이탈주민도 자아존중감에서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자분들의 이론을 본다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광범위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온 자아존중감은 보편적으로 자신 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즉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 과 평가적 측면을 강조한다(김경신·김정란, 2001: 83).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은 반면, 학력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 높은 것으로(설진배·송은희·이은미, 2014: 167), 한편으 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낮아지는 자아존중감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의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증, 대인기피증, 불안 등의 정신적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것을 본 연구 자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이 것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개념이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 신념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정의적 반응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 이 두 용어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아내 학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것으로 가정이 수립되었다. 부가하여 자존감이 낮은 개인이 자존감을 위협받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이 특

별히 폭력 유발적이라고 제시되었다(Goldstein & Rosenbaum, 1985: 426).

자아존중감(self-esteen)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한 개인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임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해석을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욱 확대 해석하여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것은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이종렬·김혜진·고효진, 2014: 40).

북한이탈주민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0.1점으로 척도의 중간 값인 2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결국 남한사회에 들어와 살게 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진미정·이순형,2006: 147).

정신분석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동기를 자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자각한다(송혜정,2013: 15).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로젠버그(Rosenberg, 1979; 송혜정, 2013: 5 재인용)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및 불안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문남숙·남기만, 2008: 1230).

자아 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

한 자아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그들의 배우자가 자율적인 것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다(Murphy, Meyer, & O'Leary, 1994; 강은희·이현림, 2008: 89 재인용).

우선 Akin 외(1990)는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내리는 계속적인 평가라고 정의했으며, Watkin(1978)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 면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라고 정의했으며, Rosenberg(1979)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보았다. 감정적인 요소에 강조점을 둔 정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한다(김영옥·김성희, 2013: 46 재인용).

자아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적, 판단적, 감정적 요소라고 정의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여성을 폭행하는 남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그들의 배우자가 자율적인 것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느끼므로 나중에 자살로까지 가게 한다(김영옥·김성희, 2013: 46).

자아존중감은 가족폭행의 성격적 변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왔으며,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 부모의 언어폭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가운데사회적 수용, 학업성취, 행동, 자기가치를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한 체벌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화옥, 2011: 1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각 개인마다 생활사건에 직면하게 될

때 그 결정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Rosenberg, 1979, Brown 1993; 박현숙, 2014: 107 재인용).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써 자신이 능력 있고, 유의미 있으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도기봉, 오주 2010: 40).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남한사회에 잘 적응을 하게 되고,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속에 빠져 심리상태의 불안함과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는경우 자살로 가게 된다.

이처럼 선행연구자들의 이론에서 제기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의 저하, 대인관계 갈등, 충동적인 문제해결방식과 같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억압된 사회에서 학습되어 왔으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제3국에서와남한에 입국하여서 2중 3중의 폭력에 시달리다보니 자아존중감을 잃게 됨으로 나중에는 무능력하여 남한사회적응이 힘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개념이다(Saffer, 1983: 엄경남, 2001: 11, 재인용)는 적응을 개체의 욕구와 사회, 환경적 상황간의 조화라고 정의 하였다. 적응의 과정과 적응 양식에 대한 분석틀로 Berry의이론은 유용한 안목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이민자나 난민자들의 연구에 많

이 쓰여지고 있다(엄경남, 2001: 1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도 역시 이민자나 난민자들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 영토에서 이주한 남한 주민이다. 이들이 남한사회에 입국하기까지, 또한 정착이후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복합적 가 정문제, 신체적, 심리적 적응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대상이 규모가 작고 이질적이고, 포괄적이고 통합 적이지 못하였으며, 시간적으로나 어느 한 시점에서의 현상만을 측정하여 시 간적 변화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없었다(전우택·윤덕용·엄진섭, 2001: 158).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은 난민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증상은 신체적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체 적 질환이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Hermansson et, 2002; Hinton et al., 1998)때로는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간의 차이를 구 분하기 어우며, 또한 신체적 질환은 경제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쳐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가져 오곤 하였다(Bruce, 2003; 조영아·전우택 2005: 20 재인용).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는 하나원에서의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입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지원이 어려운데도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초반에는 남한에 입국한 기쁨으로 흥분되어 있으며, '하나원'을 빨리 나아가서 북한과 제3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하나원을 퇴소하고야 알게 된다. 또한 필요성을 자각하더라도 긴밀한 정보의 부족으로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시급한 법률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지원은 아직 미비한실정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

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김정규외, 2014: 91).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확 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사회적응이란 어느 경우든 인간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단지 자연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집단·사회 시스템·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환경, 나아가서는 그 산물(産物)로서의 문화적 환경에도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러한 면을 가리킬 때에는 '사회적적응'이라 한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학대와 폭력이 정신장애와 성격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부적응상태를 초래한다는 연구들도 있다(Radloff, 1975; Walker, 1978; 유광욱·원유병, 2007: 107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개인의 결함에서 찾는 선행연구는 '약점 관점'(weakness perspective)을 취한다고 볼수 있다. 이런 관점은 북한이탈주민을 무기력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낙인찍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계속 취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자아의식을 고취하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잠재력을 찾아내서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식의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윤인진·최민정, 2010: 1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유형과 관련하여 생활조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종합하여 극복형, 발전형, 좌절형, 과소 성취형으로 구분한 결과 발전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극복형, 좌절형, 과소성취형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윤인진·최정민, 2010: 3).

이주과정의 스트레스원인은 가족역할과 가족 역동에 변화를 불러일으

킨다. 이러한 가족역할의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더 많았다. 2003년도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5%가 잘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적응의 원인으로는'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큼'(37.7%),'삶의 목표 불확실'(22.5%),'생활적응교육 부족'(15.1%) 등의순으로 나타났다(김정규외, 2014: 9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은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거주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문화 적응 수준을 패널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윤인진·최정민, 2010: 12).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중심은 이들의 생활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로 획득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부가자료들은 이들의 현재 삶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게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병호외, 2006; 엄태완, 2009: 216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남한의 영세민과 외국인하고도 다르므로 이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남한 적응의 차이에 오는 혼란감과 부모와 자녀, 부모와 조부모, 손자와 조부모의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정병호 외, 2006; 엄태완 2009: 221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빨리 적응하며,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남한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므로 서로간의 차이와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하여 적응하는데서 적지 않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에 있어서도 문제시 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남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불안정으로인해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대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와 귀순자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기는 약 6-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양정훈, 2007: 19).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제5절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과 심리 · 사회 적응 관련 선행연구

90년대부터 북한사회는 경제난으로 북한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에 관한 대표적인 표현은 "전쟁이라도 콱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죽일 놈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놓고볼 때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개인적인 의지 자체로는 내재된 분노와 저항,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폭력적인 수단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양정훈, 2005: 608). 이러한 폭력구조에서 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 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개념상으로는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많은 부분이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아내 폭력인 경우가 많다(김재엽, 1997: 40). 캔디(1993)는 배우자 폭력의 높은 비율은 특정한 인종 집단 내에서 발견되어 왔다고, 스트라우스 외(1980)는 1975년 전국 가정 폭력 연구의분석에 의하면 흑인 남편의 아내 폭력 비율이 다른 소수민족보다 두 배였고, 백인보다 4배였다고 보고하였다(Caetano et al., 2000: 125).

김재엽·류원정·오세헌·이현(2014: 82)은 가정폭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쟁점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라고, 아동기와 성인기의 반복적 폭력경 혐이 아동학대로부터 심리·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발달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아내구타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 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증대시키는 요인 이 된다(김재엽·이효정·송아영, 2007: 30).

서구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였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많은 가정 폭력을 심각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김재엽, 1995: 86). 김재엽·이서원 (1997: 71)은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구타를 아내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여왔다.

또한 가정의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아내구타는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표출되거나 문제시 되지 않았다. 부부간 신체적 폭력율만 보더라도 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합쳐 51.3%로 나타나 남한전체 가정의 부부 신체적 폭력율의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폭력의 모든 유형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력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2005)에서 실시한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보면,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8.4%로 보고되었고, 남편주도의 아내 폭력율은 12.1%, 아내주도의 남편 폭력율은 3.7%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최선희·김희수, 2007: 78).

남한여성의전화연합회(2008)는 우리사회의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실태가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 가정폭력 사건을 일선에서 다루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가정폭력 사건의 80%는 아내학대, 가부장제 가치관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폭력의 행사 주체는 대부분 남성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무시하고 조사를 한다면, 가정폭력의 주요한 원인인 불평등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내용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의 비율이 크게

차별성이 없다(33.1%, 27.1%).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며,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처럼 사회가 공식적인 권력에 비중을 많이 두면, 남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일상적인 권력, 즉 자신보다 약하고 이용하기 쉬운 상대에게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82).

조사내용에서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어깨나 목을 꽉 움켜잡는 행위, 목을 조른 행위,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로 정의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여 통계화 하는 것은 복잡한 폭력양상을 설명할 수 없고, 피해자 관점에서 느끼는 폭력의 두려움과 심각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에 한 번씩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44)에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정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2010년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여 발표하였다. 개인은 주위의 폭력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공격행위 기술을 습득하고 공격적 행위를 자행하게 되며 그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적응수준이 높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기존의 가치나 생활양식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어 부부 갈등 및 가정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남보영·김재엽, 2013: 75-76).

^{44) 2009.7.3.} 김영희·박정순·송정화"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북한이탈주민여성 1만 명 시대 삶의 현장" 국회 소강당에서 발표.

폭력적인 가정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폭력에 대한 태도를 가장 친근한 부모로부터 그 피해와 사용방법을 익힘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쉽게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폭력이 세대를 통하여 전승되는 통로이며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 되어지는 가정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과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은 구타당하는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장기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알 수 있다(이연복, 2001: 182-183).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에서 굳어진 관습과 의식 속에 잠재(분노와 갈등 그리고 열등감)되어있는 폭력성은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렵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폭력성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양정훈, 2005: 34).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평생(결혼기간 내)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90.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포함하는 신체적 폭력이 61.5%로 나타났으며 경한 폭력은 61.2%, 중한 폭력은 30.9%을 나타 냈다. 결혼기간 전체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부부 중 3가정 당 1가정에서 심각 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폭력은 83.9%, 경제적 폭력은 56.9%, 성 학대는 41.1%였다(여성가족부, 2010: 635).

우리사회에서는 이중 부부폭력의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대부분으로 그 정도도 심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데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약 70~80% 정도는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폭력의 하위유형별 경험 유무 분석에서는 심리적 폭력은 전체 대상자의 70.2%, 신체적 폭력은 44.8%, 성적 폭력은 13.2%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희경, 2007: 21). 가정폭력은 고정되고 한정된 상대에

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교육. 훈계의 도구, 혹은 가장의 지휘권이나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소위 합법과 묵인을 가장하여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김희숙, 2011: 7).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의 인식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주는 영향관계를 양적인 연구로 진행하며, 가정폭력인식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제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북한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 단일성과 행동의 맹목적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그에 따른 저항과 반발이 생겨나지만 해소되지 못하고 축적되고 있으며 기회가 조성되면 강하게 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양정훈, 2005: 610).

가정폭력 학대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 심리적 학대, 의처증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이혜선·이수정, 2010: 150). 가정 내에서 폭력은 심리적 불안과 분노와 좌절의 악순환을 불러가정은 물론 사회적응에서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가정폭력 여성을 위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이다. 의료적 지원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피해가족은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치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각 국립의료원에 제출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 서비스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되므로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강은희·이현림, 2008: 86).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선행되었던 일부 질적 연구들을 통해 이들 가정의 폭력 발생과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갈등 상황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이기영 (1999: 389-404)은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적응의어려움과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

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의 배우자 폭력이 심각한 상태라고(김재엽, 1996: 24),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성이 북한주민들은 수 십 년 동안 억압된 체제와 감시,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 등을 통해 억눌려 왔던 감정이 차곡차곡쌓아온데(양정훈, 2005: 608)있는 반면 이기영과 성향숙의 2001년 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갈등 및 폭력이 입국을 전후한시점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입국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응답자들의 가족관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Pico-Alfonso(2005: 181-185)는 폭력의 유형 중 심리적 폭력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의 폭력 중 심리적 폭력만이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예측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지금까지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를가족 갈등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0: 691)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신체적폭력율 만을 보더라도 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합쳐 51.3%로 나타나 남한전체 가정의 부부 신체적 폭력율의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의 모든 유형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력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 체류 시와 비교해 향상되기는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족관계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과 제약, 사회적 고립 등 적응에서 오는 어려움이 그들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형성한 경우에도 가치관이나 소비수준,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아·전우택, 2005: 24). 하지만 수 십

년 동안에 받아온 차별과 통재를 통해 내재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들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해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양정훈, 2007: 1). 북한의 교육방식은 강력한 사회적 통제력과 함께 북한주민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 불만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정신적 불만과 고통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북한이다(양정훈, 2005: 610)

조인섭(2012: 12)은 오늘날 가정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본다면 2010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가정폭력 발생률은 증가하여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6.7%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고정되고 한정된 상대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교육. 훈계의 도구, 혹은 가장의 지휘권 이나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소위 합법과 묵인을 가장하여 사용되는 특 징을 가진다(김희숙, 2011: 2).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탈북 전과 비교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문제, 가부장 적, 폭력 허용적 태도 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나 변화가 없다면 이들 가정의 폭력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0: 690)자료에 의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적응이어려웠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북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라고 답한경우가 1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16.6%'취업의 어려움'이 16.1%,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이 15.9%,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이 13.6%, '정부와 지역사회 지원수준 부족'이 8.5%의 순위으로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학대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나, 탈북아

동과 부모들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동기, 탈북과정, 그 기간에 겪은 경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쉽게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강란혜, 2008: 175).

보도(국민일보, 2013)에 따르면 전남 함평경찰서는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를 구속했는데,이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된첫 사례이다. 강칠원 함평경찰서장은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로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향후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뒤흔드는 가정폭력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말했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폭력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진입해 수사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10월 28일 뉴스에서지난해보다 현재 가정폭력이 6배로 늘어나 가정폭력을 뿌리를 뽑겠다고정부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낯선 현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진행한다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제 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 겪은 심리적불안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 순환에 대하여 하나원 교육에서두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안정과 개인상담은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실제 교육생의 이런 점을 감안하였을 때 좀 더 심리·정서적 안정과 불

안을 해소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서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등의 거시적인 차원을 다루었으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가족 동반입국, 남한에서의 가족 형성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남보영, 2012: 104).

북한이탈주민들의 복합적인 가족구성은 탈북과 제 3국 체류 과정 및 남한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신도 북한, 조선족, 남한, 외국인 등으로 달라지고, 배우자를 만난 시기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도 가족의 기능이나 적응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남한 사회 정착이후 복합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지위 변화나 적응의 스트레스, 건 강악화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히 외지인이나 이주노동자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외지인'이라는 입장을 부여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 현재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45)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하다(김경준외, 2008: 33-34). 그러나 북한이탈 중년여성들이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경험한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삭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일과 배움을 병행하고 있어 학습이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이로 인한 타의적 경력 단절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이덕정, 2012: 1).

아직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문제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조차 조사가 미흡하며, 그들이 가정폭력 및 사회적차별경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북

⁴⁵⁾ 우리헌법 제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북한이탈주 민은 한국인이라는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이주의 목적이 노동이라기보다 정착 혹은 전향이라는 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인 '귀향권'의 결여로 말미암아 남한사회의 입국은 북한사회에서 의 경험을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을 두고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문제와 사회적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예방과 사회적 차별 예방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의 본질과 사회적 차별의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가정환경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장애를 받음으로 가정폭력에서 자아존중감, 심리·사회적응, 사회적 차별, 가정폭력 법 인식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보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종속변수로 나누어 기술통계분석과 t-검증을 끝으로 회귀분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양적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북한이탈주민과의 인 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을 탐색하였 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 그리고 심리·사회적응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을 <표-14>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표-14> 연구방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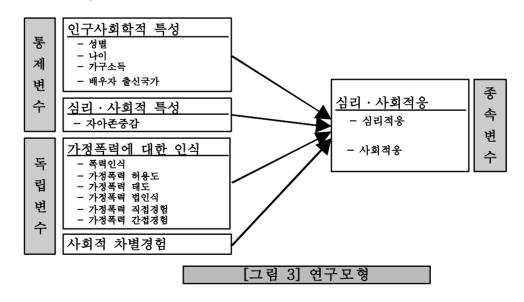
구	분	방 법				
문헌연	구	● 선행연구, 관계법령, 정책자료 검토				
전문가의 의	견수렴	• 사회복지실천현장, 상담기관자,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수렴				
양적연구 (설문지)	북한 이탈 주민	조사대상: 서울시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400명 표집방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면접내용: 북한이탈주민 현황 여부 및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경험, 정책지원, 욕구 등 조사기관: 2014년 2월 11일-2월 28일				
질적연구 (심충면접)	북한 이탈 주민	●면접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기관을 찾은 북한이탈주민 및 여성쉼터 입소자 7명 ●면접내용: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인 지원방안 등 ●조사기관: 2014년 2월 5일-5월 13일				

제1절 양적연구 방법

1. 양적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만들어 변수간의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경험 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모형은 연구에 따라 독립변수의 모형과 통제변수의 모형 그리고 종속변수의 모형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영향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적용될 수있다. 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가정폭력에 대한 간접경험, 폭력에 대한 허용도,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관련 법 이해와의 관계가 심리·사회적응 간의 구조모형이 밝혀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의가정폭력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가정폭력인식 및 폭력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그림-3]와 같은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양적조사대상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90년 이후에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배합하여진행하였다. 연구. 조사기간은 2014년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였고,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400명에 대해 설문이 이루어졌다.이 중에 390부가 수거되었으며, 오류 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총 37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집 단 배부수 회 수 부 사용부 응답 수 여자 250부 245부 235부 235명(63.5%) 남자 150부 145부 135부 135명(36.5%) 전체 400부 390부 370부 370명(100%)

<표-15> 설문지 배부, 회수 및 분석 상황

3. 양적연구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일반대상들을 가정폭력인식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폭력에 대한 인식 27문항, 가정폭력 직·간접경험 각각 13문항, 폭력에 대한 태도 14문항, 폭력에 대한 허용도 1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사회적 차별 9문항, 심리·사회적응 30문항, 가정폭력 법에 관한 인식에인식 6문항, 법 인식 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이측정도구들은 이미 기존연구들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들이다.

1)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은 남한청소년 개발원(1995)이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이춘화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폭력에 대한 의식'라고 한 단어를 인식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척도 총 28개 문항 중에서 27문항을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폭력 허용도 문항은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아주 동의한다.' 4점의 1-4점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표 -16》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하위척도와 27개문항중 역 문항 8개 문항으로 표시하였다. Cronbach's aloha는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 .676,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 .606, 폭력에 대한 구체적거부 .674, 폭력의 범위 .764,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559, 폭력의 효용성 .696, 폭력의 필요성 .402로 나타났다.

<표 -16> 가정폭력인식 하위척도와 역문항

		하 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①전혀동의하지않다 ②동의하지않는편이다. ③그저그렇다 ④동의하는편이다. ⑤이주동의한다	폭력에 대한 보편적인 거부	1,2,3,6,8,10,	1,	.676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	11,14,16,24	11,16,24,	.606
표의시기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거부	15,17,18,19,21	_	.674
폭력인식		폭력의 범위	23,26,27	_	.764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13,20,22,25	13,20,22,25,	.559
		폭력의 효용성	4,5,12	4,5,12,	.696
		폭력의 필요성	7,9,	7,	.402

2)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가정폭력 경험에서 부모로부터 폭력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여 보기 위한도구를 장덕희(2001)에 도구Steaus(1990)의 갈등관리행동 척도 CTS(Conflict Tactics Scale)와 CTS2(Steaus et al., 1996)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 원척도가 14개 문항으로되어 있었지만 한 문항은 <총을 사용한 적이 있다>로 되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아 빼고 13문항을 사용한 것을 사용은 하였지만 하위척도에서 장덕희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항이 애매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었다. 정서적폭력에는 1~7까지, 신체적 폭력에는 8~13번으로 하위척도를 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① 전혀 없다(1점), ② 1년에 한두 번(2점), ③ 한 달에 한두번(3점), ④ 일주일에 1회 이상(4점), ⑤ 거의 매일(5점)으로 하되 각문항의 부모폭력 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유의미한다. 장덕희 연구에서Cronbach's aloha는 정서적 폭력 .8172로, 신체적폭력 .7468로 나타났다. 본 연구<표-17>에서Cronbach's aloha는 정서적폭력 .992로, 신체적폭력 .992로, 신체적폭력 .992로, 신체적폭력 .901로 나타났다.

<표 -17> 가정폭력 직접경험 하위척도와 역문항

	①전혀없었다. ②1년에 한두번 ③한달에 한두번 ④일주일 1회이상	직접경험					
		하위	문항	역문항	신뢰도		
가정폭력 직접경험		정서적 폭력	1,2,3,4,5,6,7,	-	.922		
	⑤거의 매일	신체적 폭력 8,9,10,11,12,13, -	_	.901			

3) 가정폭력에 대한 간접경험

부모로부터 폭력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여 보기 위한 도구를 장덕희 (2001)에 도구Steaus(1990)의 갈등관리행동 척도인 CTS(Conflict Tactics Scale)와 CTS2(Steaus et al., 1996)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 하위척도에서 장덕희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항이 애매모한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었다. 정서적 폭력에는 1~7까지, 신체적 폭력에는 8~13번으로 하위척도를 정하였으며, 역문항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① 전혀 없다(1점), ② 1년에 한두 번(2점), ③ 한 달에 한두 번(3점), ④ 일주일에 1회 이상(4점), ⑤ 거의 매일(5점)으로 하되 각문항의 부모폭력 목격 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유의미하다. 장덕희 연구에서Cronbach's aloha는 정서적폭력 .7504로, 신체적 폭력 .891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표-18>에서 Cronbach's aloha는, 정서적 폭력 .894로, 신체적 폭력 .895로 나타났다.

<표 -18> 가정폭력 간접경험 하위척도와 역문항

	①전혀 없었다.	직접경험			
	②1년에 한두번 ③한달에 한두번 ④일주일 1회이상 ⑤거의 매일	하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가정폭력 간접경험		정서적 폭력	1,2,3,4,5,6,7,	-	.894
		신체적 폭력	8,9,10,11,12,13,	-	.895

4)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이 「남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사용한 "폭력에 대한 태도"척도 총 15개 문항에서 1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1-4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5개 문항을 선택하여 해석한다. 하위척도에서 필요성 6, 7, 9, 10개 문항, 역문항은 6,7,9,10개 문항, 훈윤적 폭력 5, 12, 13개 문항, 역문항은 5, 12, 13개 문항, 폭력에 대한 거부 1, 2, 8, 14, 15개 문항, 폭력의 효율성 3, 4, 11개 문항. 역문항은 3, 4, 11개 문항으로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표-19>에서 Cronbach's aloha는, 필요성 .731로, 훈육적 폭력 .609로, 폭력에 대한 거부 .696로, 폭력의 효율성 .641로 나타났다.

<표 -19> 폭력태도 하위척도와 역문항

		하 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①전혀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③그렇다 ④매우그렇다	필 요 성	6,7,9,10	6,7,9,10	.731	
	훈윤적폭력	5,12,13,	5,12,13	.609	
		폭력에 대한 거부	1,2,8,14,15,	-	.696
		폭력의 효율성	3,4,11.	3,4,11.	.641

5)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폭력의 의미가 언어, 정서적인 학대 및 무시, 신체적인 경미한 폭력에서 심한 폭력까지 구분하여 이것이 당신에게 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 자신이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여기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연복(2001: 193)의 논문에서 사용한 Straus(1971)가 고안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를 이용하여 정서적인 폭력에서부터 신체적 폭력에서 경미한 수준과 심한 폭력까지를 포함하여 사용한 "폭력에 대한 허용도"척도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용도가 적은 것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연복의 연구에서 사용된 CTS의

Cronbach's aloha는 .723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20>에서는 Cronbach's aloha는 .929로 나타났다.

<표-20> 폭력허용도 하위척도와 역문항

포리 치요ㄷ	①전혀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하 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폭력허용도	③그렇다 ④매우그렇다	허용도	12,3,45,6,7,8,9,10	-	.929

6)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는 로젠버그(1979)가 개발한 척도를 오승환(2001)박사논문 "결손가정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에 이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랫동안 광범위한 집단에 사용된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채점방법이나 해적은 기존의 척도와 동일하며하위 척도 문항은 1,2,4,6,7개 문항, 역 문항은 3,5,8,9,10번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자아존중감을 평가할 수 있으며 총점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유의미하다.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a값은 .73이었으며, 기본 신뢰도는 .79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표-21>에서는 Cronbach's a값은 .794로 높게 나타났다.

<표-21> 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역문항

기이,주즈가	①전혀그렇지않다 ②그렇지않다	하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자아존중감	③그렇다 ④매우그렇다	자아존중감	1, 2, 3, 4, 5, 6, 7, 8, 9, 10	3, 5, 8, 9,1 0	.794

7)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생활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을 말한다. 고광신(2010)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척도는 1994년 Harrtell, S. P가 개발한 The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s를 응용한 Daily Life Experience(DLE)척도를 사용하였다. DLE척도는 단위기간 안에 차별빈도와 그리고 각 차별에 대한 괴롭힘이 얼마큼인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차별 빈도 측정은 6-point Likert 척도로 '전혀없다'(0),에서 '한번'(1), '2~3번'(2), '한 달에 한번'(3), '한달에 2~3번'(4) '한주에 한번 또는 그 이상'(5)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차별에 대한괴롭힘을 묻는 측정 5-point Likert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 '조금 그렇다'(2), '그렇다'(3), '자주 그렇다'(4), '항상 그렇다'(5)등으로 구성이 되었다. 하위 척도는 개인비전 및 성취욕구로 구성하여 개인비전은 1,2,3,4개문항, 성취 욕구는 5678.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총 문항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광신 (2010)은 고려인 차별에 관한 기술적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고광신(2010: 57)은 사적차별의 신뢰도가 .87로 나타났다. 그중 개인비전의 신뢰도는 .73, 성취 욕구는 .79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22>에서 Cronbach's aloha는 개인비전은 .807, 성취 욕구는 .825로 높게 나타났다.

<표-22> 사회적 차별의 하위척도와 역문항

사회적 차별	①전혀그렇지않다 (2가끔그렇다	③그렇다	4x≥	주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하위		문	항	역둔	- 항	신뢰도
	레이네리 미 워크이크	개인비전	1,2,3,4		-	-	807
	개인비전 및 성취욕구	성취욕구	5,6,7,8,9)	-	-	825

8)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 정도는 고광신(2010: 52-53)이 「국내거주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3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사용된 사회·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1-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에 적응을 잘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심리적 적응 9개 문항(2, 3, 14, 19, 22, 24, 25, 28, 30), 사회적 적응 21개문항(1, 4, 5, 6, 7, 8, 9,1 0, 11, 12,1 3, 15, 16, 17, 18, 20, 21, 23, 26,2 7,2 9,)으로 구성하였다. 고광신(2010: 57)은 심리·사회적응의 신뢰도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23〉에서는 하위 척도별 Cronbach's aloha는 심리적응 .885, 사회적 적용 .868로 나타났다.

<표-23> 심리·사회적응 하위척도와 역문항

	①전혀그렇지않다 ②가끔그렇다 ③지주그렇다 z ④항상그렇다						
	하 위	무 항	역 문 항	신뢰도			
심리 •사회적응	심리적 적응(9)	2, 3, 14, 19, 22, 24, 25, 28, 30	2, 3, 14, 19, 22. 25, 30	.885			
D 1 1 1 1 1 0	사회적 적응(21)	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20, 21, 23, 26, 27, 29	5, 15, 18, 21, 23, 24, 25	868			
	총문항수: 3(

9) 가정폭력에 관한 법 인식

가정폭력인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법 관련 질문은 모른다, 안다로, 6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정폭력이라고 생각되는 질문구성을 가정폭 력이다, 가정폭력이 아니다, 모른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2개 문항으로 답변을 조사대상의 가정폭력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식 및 가정폭력세부 내용에 대한 인식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가정폭력관련법 인식여부에 법의 내용 인지여부와 가정폭력행위 인지여부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김희숙(2011:155)은 가정폭력경험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법 인식 및 내용인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x^2=1.238$, p=.266)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표-24> 가정폭력관련법 인식 하위척도와 역문항

가정폭력관련법 인식 여부		① 알았다 ② 몰랐다	가정폭력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의 여부			의 여부
	법의 내용 인지 여부	① 모르고 있다	하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가정폭력	법에 네싱 먼지 역가	② 알고있다	없음	1, 2, 3, 4, 5, 6	-	
관련법	가정폭력 행위 인지	① 가정폭력이다	하위	문 항	역문항	신뢰도
이해	여부	② 가정폭력아니다 ③ 모른다	없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_	

4. 양적연구 자료 분석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의 인식과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정폭력이 척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가정폭력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요인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차적으로 기술통계분석에서 빈도와 편차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고, 2차적으로 추리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인식, 가정폭력목격과 간접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주는 영향, 폭력 허용도와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사회적 차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응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한 t-검증을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인식과 가정폭력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심리·사회적응도를 검증하기 위해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변인의설명력을 비교하며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질적 연구방법

1.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방법

1) 질적 연구 참여자의 선정

질적 연구에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 선택을 하여 질적 연구에 참여 하였다. 본 연구를 하는데서 북한이탈주 민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함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반하여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대상을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 했다. 연구 참여를 위해 본 연구자는 NK정 착지원상담센터(10년)와 가정행복상담센터(9년), 그리고 부설기관 평안의 집(8년 가정폭력보호시설)이용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인터뷰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참가자들은 북한에서부터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중국에서도 또한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또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사는 대상이며,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기에 먼저 연령을 30에서 50세까지로, 35세 1명, 43세 2명, 45세 2명 47세 1명, 50세 1명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였다. 그것은 한국생활과 연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여 오랜 체험경험과 갓 입국하여 체험하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체류한 기간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을 토대로 총 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질적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제3 국에서 본의 아니게 팔려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경험한 대상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차별 현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에 따른 기준이다. 가정폭력 직·간접경험을 한 대상과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남한에서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당한 30-50대 대상을여성 3명과 남성 4명으로 총 7명을 선정하였다. 셋째, 남한입국 2000년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체험과 경험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표-25〉과 같다.

<표-25>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014년6월기준)

<u> </u>				(2014	선0월기군)		
연구	나이	·이 북한 가정폭력을		경험남한가	가정폭력 을	사회적	압국년도
참여자	(세)	학력	국가	체류기간	경험한 기간	차별경험	변기 인소.
			북한	18년	12년	-	
Α	35세	고졸	중국	9년	9년	-	2006년
			남한	8년	8년	8년	
			북한	29년	22년	-	
В	43세	고졸	중국	10년	10년	-	2010년
			남한	3년6개월	3년6개월	3년6개월	
			북한	41년	10년	-	
С	45세	대졸	중국	3년	-	-	2012년
			남한	1년	1년	-	
			북한	38년	-	5년	
D	43세	고졸	중국	3일	-	-	5년
			남한	5년	-	5년	
			북한	46년6개월	-	10년	
${f E}$	50세	고졸	중국	5일	-	-	2010년
			남한	3년6개월	-	3년	
			북한	27년	-	-	
\mathbf{F}	45세	전졸	중국	4년	-	-	2000년
			남한	14년	-	12년	
			북한	30년	-	-	
G	47세	고졸	중국	6년	-	6	2001년
			남한	13년	-	11년	

연구참여자 A

< 연구참여자A>는 함경북도에서 할머니하고 삼촌과 삼촌 어머니 그리고 사촌동생들과 살다가 엄마한테로 왔는데 새 아빠와 새 아빠 자식들과함께 살았다. 엄마한테로 간 나이가 13살이 되었다. 엄마와 아빠가 가정불화 속에 6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여 새엄마가 들어와 눈칫밥을 먹다가 할머니한테로 갔다. 엄마한테 와서 함께 사는 과정에 저 때문에 새아빠와 엄마가 또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목격하면 자라왔다. 그러다가 1997년 11월에 혼자서 중국친척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중국에 넘는 순간 친척집대신 인신매매에 걸려 조선족 남자에게 팔려가게 되어 지금까지 살다 이혼한 남편이다.

중국에서는 호적을 올릴 수가 없어 동거로 사는 동안 남편은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과 함께 위협을 주기에 말한 마디 못하고 숨죽이고 살다가 2006년에 남한에 입국하였지만 첫아이를 임신하고 남한에서 출생하고 보니 아이도 나처럼 아빠 없이 살게 할 수 없어 남편을 초청하여 데려왔지만 역시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취득하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가하는 말에 마음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그냥 저도 막 예전에는 막 참다가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가지고 그다음에는 저도 같이 화를 내고 그랬다. 그때에는 그냥 혼자 울고, 때려도 혼자 울고 하여도 옆에 부모도,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디 가서 해볼 데가 없었다. 혼자 울고. 바닷가에 나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통곡 치면서 울었던 것 같았다.

가정적으로 싸움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폭력이 가해질 때마다 저도 그때는 솔직한 말로 악은 났거든요...시 아빠한테까지 물리적 폭력을 할때는 진짜로 내가 악이 났었으며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다. 둘째까지 놓아도 본성은 버리지 못하기에 이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

리 엄마도 나처럼 이래서 이혼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우울증으로 병원치료 중에 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남한에 입국하고 남편이 남한 국적을 가졌는데 조그마한 고마움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한 것이다. 저는 중국에서도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살았지만 자식때문에 데려왔는데 가책은 전혀 없고 더 큰소리치는 것이 분했다. 지금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고 할 때마다 외국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물론은 우리 사람들도 뭐 여기 법하고 여기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인간이니까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다 알려준다고 시간이 가면은 우리 사람들도 여기서 뭐 배우고 느끼는 거 많으니까 우리를 좀 이 쁜 눈길로 봐 주면은 우리 사람들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싶다. 2006년에 ○○○파트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도 따갑고 밖을 나가지 못 하였다. 마트에 가느라고 길에 나서는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치기도 하고 귀속 말로 속삭이기도 하기에 돌아보니 다시 돌아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또한 하나원에서 우리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여 주었더만 중국에서 남편을 데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B

<연구참여자B>는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에서 엄마하고 아버지 이혼했으니까 돌 지나서부터 엄마 등에 업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살 때속상할 때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잘못하여도 나를 때렸다. 나는 새 아빠때문에 근거 없이 멋모르고 매를 맞으며 이렇게 집안에서 맞고 자라니밖에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무시를 당하며 살다가 어느덧 엄마 곁은 떠나시집을 갔지만 역시 고생하며 살다가 장사할 돈을 사기당해 남편 곁에

못가고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때 당시 내 나이가 29살이 되었다. 1998년 7월 14일 야밤에 중국으로 넘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넘어섰는데 그날 밤으로 한족한데 팔아 넘겼다. 저는 그때부터 낮모를 사람 손에 끌려가 10년을 가정폭력 속에 시달리며 살았다. 제가팔려간 것이 남한에 와서야 인신매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한족한테서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은 16살 정도 되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그때에야 느꼈다. 중국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중국공안이 들이 닥칠까봐 마음을 조이며, 신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으로 위협을 주어 그래도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한에서 남편과 엄마를 선택하라면 엄마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얻어맞으며 살았지만 내가자식을 낳아 보니 엄마의 심정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

2010년에 입국하여 처음에 외롭고 하니까 지인의소개로 혼인신고 할때까지는 정말로 좋은 사람같이 대하였는데 진짜 나한테 잘해주고 그랬는데 딱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기 아이들 초청하고 조카에 누나 아들, 자기 아들까지 데려오니까 180도 완전 달라졌다. 사람이 내가 힘들고 특히명절 때 내가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명절이 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보면 왕따를 줄 줄을 몰랐어요. 말로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하였지 실제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활비를 손에 쥐어 주지 않아 악세 사리를만들어 유지하였다.

저도 한계에 도달하자 가정폭력이란 말을 한국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였다. 북한에서는 가정불화로 쓰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이 가정폭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술 먹고 술병을 쥐고 내리치겠다고 하면 저도 맞받아 병 사리를 쥐고 달려들기 시작하자 조금을 수그러들었다가는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것이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데려올 때 돈을 150만원 꾸

어다 주고 데려왔는데 뚝 떼어먹었다. 겨우 돈을 다 물었는데 참 기막히 게도 남편의 형제들이 돈관계가 트러블이 너무 심했다.

혼인신고는 2013년 10월 달에 하였는데 첫째는 생활비, 둘째는 자녀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모 형제간의 트러블 서로가 다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제가 이미전에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 자랐다. 그런데 시집와서도 가정폭력을 받으며 살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죽어도 못해준다. 나를 국적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절대 이혼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가정폭력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증거라도 남겼을 것인데 전혀 모르다보니법에서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다. 하나원에서 우리한테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듣게 한다면 예방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는 국적이 없어서 조선족 또는 한족하고 사는 경우 가정 안에서부터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살았지만 남한에 와서까지 무시와 차별, 특히 가정폭력까지 당하며 살자니 너무도 억울하다.

연구참여자C

< 연구참여자C>은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았다. 우리는 북한에서 가정불화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다. 저의 집 경우 보편적으로 놓고 볼 때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처럼 폭력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달에 10번 정도가정불화가 일어나 발로 차고 때리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돈을 벌기가정말 힘들었다. 남편의 성격에 따라 많이 관계되는데 남편의 성격이 좀다른 사람들 보다 특별하고 과격하다 보니까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할 때, 시장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돈을 적게 벌어왔다

거나 손님이 와서 오는 손님마다 술상을 차리니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처럼 폭력을 사용하는데 뭐 서로 말다툼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형태로서 폭력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 흉기를 쥔 적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흉기(식칼)를 쥐고 찌르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는 크게 본적은 없는데 아버지가 뭐 외도를 한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말다툼해서 싸움을 한 적은 있어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 저의 남편가정환경을 놓고 볼 때 아버지가 젊었을 때 계속 다른 여자를보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계속 행패를 부리고 아내를 때리고 물건을던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 숨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저렇게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말로는 계속 하던데 그것이 목격한 사실이 실제 가정생활에서 아버지 행동그대로 하고 있다.

저는 남한에 와서야 저의 가정처럼 사는 것이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하며,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그저 폭력이 일어나면 슬그머니 피했다가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들어 오군 하였습니다. 가정적으로 싸우다 보니 딸하나만 낳았는데 지금 15살이다.

지금 한국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 실제 가정불화하고 같은 것인데 실제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런 정신적 대책이 있잖지만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남한에 와서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가정폭력을 놓고 볼 때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그걸 실제로 대처하는 방법이 아직은 미약하다.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대처하지 구체적인 대처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

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은 왜서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교육을 받기가 제일 좋은 것인데이런 교육을 하나원에서 하여 주었으면 한다.

연구참여자D

< 연구참여자D>는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살다가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남한을 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보편적으로 말다툼은 하지만 손이 나갈 정도로 싸우면 그 가정은 다 된 것 같은 데요. 북한에서 가정생활 1년하고 와이프가 출산한 것을 보고 3년 징역을 가게되었는데 1년 살고 병에 걸려 병보석으로 나오자 바로 두만강을 넘어 남한으로 내가 먼저 입국하여 그다음 와이프를 탈출 시켜 데려 왔는데 우리와이프는 북한에서 함경북도 새별군 군 사로청 지도원(청소년 담당기관)으로 일하다가 출가하여 직업을 놓은 상태였다. 남한에 와서 와이프가 북한에 살 때 누구 네는 남편한테서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고, 누구 네는 아주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TV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하여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는데 와이프가 가정폭력이라고 설명하여 알게 되었다. 여기오니까 싸이코들이 많으며, 사람죽이는 것을 볼 때 북한보다 더 험한 것 같다.

북한에서 돌격대에 나가 돌격대장만 했기 때문에 사회일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남한에서는 별 난거 가지고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거는 사람 살면서 가정이나 개별적으로도 다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돌격대장을 하면서 물자를 좀 빼돌려서 교화를 갔는데 힘 있는 놈은 차 판46)을 해먹고도 안 가는 것

⁴⁶⁾ 기차 60톤 차량을 말한다.

을 보면서 힘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탈북 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지만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흑인보다 좀 낫고, 조 선족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한다.

북한 사회에서 힘없어 교화를 같다왔지만 한국에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볼 때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도 기분이 나빠 너무 힘들 때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온 선배들한테서 한국에 와서 죽었다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최고고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바란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한에 온 날부터 운전면회 증을 취득하여 1t트럭을 사서 죽었다 하고 물건을 회사에서 생산한 것을 납품하는 운전병을 하고 있다, 때로는 사람차별을 느낄 때도 있어 정말 참기 힘들어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들지만 북한사회에서 그들한테 교화를 같다 왔는데 남한까지 와서 교화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참기 힘든 것을 참을 때도 간 혹 있다.

연구참여자E

< 연구참여자E>는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당 비서와 다투고 하루 밤중에 가정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입국하였다. 새별군에서 행정위원회(구역공무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집 앞 마당가지고 다투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탈북을 5년 전부터 계획은 하였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 넘지못했다. 온가족이 4명이 넘자고 하니 정말 잘 하지 않으면 가족이 멸살인데 심사숙고를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아들만 2명이고 와이프하고 가족이 4명인데 아이들이 착하고 와이프는 말이 없으니 다 툴 일이 없는데주변에서는 가족 간의 싸움이 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일이아니니 무심히 듣고 보고 하였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정말 골 때린다고한다. 조그마한 언쟁도 가정폭력이라고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볼 때 저 집에서 또 가정불화가 일어나 싸웠구나 하고 마는데 여기는 법

적 고소를 하는 것을 볼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여자가 잘못했던, 남자가 잘못했던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참 기막히다고 한다. 남자를 완전히 머저리로 만드는 나라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알고 있던 남한이 아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 흑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때 너무도 후회스러워 외국에 망명갈 생각까지 가져보기도 한다고 호소한다. 그러다가도 얼굴색이 같은데서 적응 못 하면서 남의 땅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자고 한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자면 단체들이 자기역할을 잘 하면 우리 이미지도 개선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다. 말만 한민족이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연구참여자F

< 연구참여자F>는 황해도에서 이름 있는 큰 기업소 즉, 한국 말로 대기업이라고 할 정도의 기업소이다. 한국에 온지도 14년이 넘었는데 남한사회에 적응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다. 북한에서는 나라만 바라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중국친척을 찾아 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남한에 입국하였다. 중국에서는 국적이 없으니 숨어 살아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무시를 당해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한국에 2000년에 입국하여 여러 가지 사연들을 겪었지만 '거지', '후진 국'이라고 하는데 대하여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전 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00북도 00시에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소에서 전 공을 하다가 탈북을 하여 한국에서 전기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전기전문직 업학교 선생님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개하여 전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술은 높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조건으로 무시할 때마다 그만 둘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소개하여 준 학원 선생님을 생각하여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지만 누구보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다가 우울증에 걸려 병원을 다니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며 참기 힘들다고 한다. 갖고 있는 좋은 실력을 가지고 남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콱 자살할 생각도 여러번 하였다고 한다. 기술적인 일은 혼자 지하에 들어가 해오지만 멸시와 무시를 당할 때는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으며 해외로 나간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된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도 이기적이라고 호소하였다. 해외로 나갈 생각을 갖는 자체가 잘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순간을 넘기가 정말 힘들다. 같은 민족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다.

연구참여자G

< 연구참여자G>는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다보니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보고 '거지', '빨갱이', '후진국'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참기가 힘들어 하였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죄를 지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고 한국죄수들도 '빨갱이', '거지', '간첩' 등으로 차별시 한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였다. 북한에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출신성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살다가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한국처럼 돈과 권력이 살판을 치게 되어 사기를 칠 줄 모르는 놈은 거지가되게 되어 중국으로 친척을 찾아 왔지만 결국 우리 신세는 숨어사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 남한에 입국하여 13년 동안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정착이 힘들다. 용접기술을 배워서 중소기업을 걸쳐 대기업 삼성에까지 입사하였지만 결국은 사회적 차별에 의해 도중에 나와 이민

을 가고 싶다고 호소를 한다.

한국에 200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아왔다. 처음에 한국에 입국하여 여자를 잘 못 만나정착금을 사기당하고 방황을 2개월 하다가 정신 차리고 용접기술을 배워자격증을 이수하여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조금씩 내 자신의 기술을 한 단계씩 발전시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남한 사람보다 잘하면안 되고 급여도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것 같다. 급여를 많이 받는 다고 왕따주고 나중에는 '간첩'이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그때는 죽고 싶은심정이었다고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며 천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혼자서 술로 울분을 터뜨리며 한탄을 할 때도 많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 영토에서 한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왜서 우리가 외국 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3.8선47'의 원인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가지며,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호소한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양적연구를 보안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가정폭력 여성쉼터 입소자와 상담센터의 내담자 중에서 2013년 11월 인터뷰 2건과 2014년 2월 5일-7일까지 1차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5월 12일과 13일 2차 인터뷰를 진하여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소요시간은 1회당 01:00-01:30분 소요되었으며, 기본 인터뷰횟수는 2회로 하였으나 수정보안을 위해 1회를 더 진행되었다. 면접 장소는 1차는 NK정착지원상담센터 면접상담실에 연구참여자와

⁴⁷⁾ 휴전선을 말한다.

만나 진행하였으며, 2차-3차는 가정행복상담센터 면접상담실에서 연구 참여자와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용된 면접의 유형은 연구대상자가 북 한이탈주민임을 감안하여 비 구조화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하였다.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주제를 개방 적인 질문을 하면 참여자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연구자가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관리 를 통해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도 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연구참여자 자신의 생애와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관련된 경험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구자를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라포(rappirt)가 형성되도록 노력했다.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뷰를 점검하고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경험에 대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변화, 한국에서의 생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3차 인터뷰는 1차와 2차 인터뷰의 내용을 필사하여 검토와 더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3차로 인터뷰 요청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과 지속적인관리와 교류를 통해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도 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하며 2014년 6월까지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여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 있어서 심층 면접조사에서 실시한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주소, 이름, 성별, 나이, 학교, 탈북년도, 중국거주기간, 하나원 기수, 가족사항, 종교)
- 2. 북한에서 삶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어린시절, 부모관계, 형제관계, 지역상특성, 가족과의 삶)

3. 중국에 탈북하게 된 경위와 삶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탈북동기, 브로커에 의해, 본이 아닌 동거생활, 한국시도 결정)
4. 제3국에 대한 내용과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심정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타국감옥생활, 하나원 생활과 교육, 한국에 대한 기대, 북한의 가족에 대한 생각)
5. 한국인으로서의 적응과정과 가정폭력, 사회적 차별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하나원 기수, 한국에서의 삶, 가정폭력, 사회적 차별, 앞으로 정착문제, 희망)

2.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

넬슨, 트라이츨러 및 그로스버그(Nelson, Treichler and Grossberg, 1992: 2)에 의하면 Bricoleur는 모든 일을 필요한 방법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는 전 문가이다.(Jack of all trades or a kind of professional do-it-yourself person)라고 정의 하는데 질적 연구는 복합 방법적이라는 의미이다. 질적 연 구의 목적은 사람들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현실(reality)은 역동성을 가지는데 사람들의 지각의 변화에 따라 현실 (reality)은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해석은 영구불변하지 않는다. 즉 연구자의 견해가 아니라 타인의 내부의 견해를 의미한다(이종규, 2007: 100-101). 그러나 현실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사 람들의 내부견해이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실 재를 말한다. 이연구가 지향하는 질적 조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사대상자의 경험과 인식체계를 여과 없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ubin and Babbie, 1979; Padgett, 1998; 김활수, 2006: 75 재 인용). 그러므로 심층면접의 기록과 같은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의 개념에 의지해서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Padgett, 1998: 87; 김활수, 2006: 75 재인용).

'전체인식'의 진술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 전체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자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자료를 질적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분석방법에서는 양적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학문 적 관점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미 확 립되고 함의된 학문적 용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하였다.

의미의 단위들을 경험의 구조라고 하는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 행동의 구조'를 찾는 것을 목적이며, 범주는 여러 개의 의미가 모여진 것으로 그 안에 여러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구성요소간의 관계와 공통된 속성들을 비교하여 재배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사회적 차별경험, 심리·사회적응에미치는 요인들을 3개의 주제 구성요소와 9개의 범주 구성요소, 그리고 22개의 하위구성요소들로 이루어졌다.

3.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자의 선 이해

질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일반 양적연구와 구별되며 또한 다른 질적 연구와도 구별된다(이희연·박태정, 2010: 171).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로서 '확고한'이론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신경림, 2003: 20). 질적 연구에서연구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연구자의 관점과 시각은 연구의 진행과정 중에 무엇을 볼 것인지를 영향을주며, 면접과정의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자료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Glene, 2006: 211).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어떤 편행을 보일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된 자료와 녹음을 반복해서 읽었으며, 연구자들과 함께 개인

적인 경험은 '괄호 치기(bracketing)'로 연구자의 편견과 선 이해를 해소하기위해 노력하였다(김유경, 2012: 45). 연구자들의 선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의 자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임상실천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상담기관을 개설하여 10년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으로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무리가 없었으며, 연구자는 국제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로 5년을 강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학업을 도와주었다. 현재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객원교수로서 강의와 북한이탈주민의 학업과 상담을 병행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사회에서 문화의 이질성을 경험하면서 적응해야 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 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내용을 녹음하게 될 것이며, 개인의 신상과 인터뷰내용은 본 연구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신분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기로 하고 또 복사할 때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제자들로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면접상담실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인터뷰가이루어 졌지만 연구참여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상담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IV. 연구결과

제1절 양적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기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 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결과는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 사대상자는 총 370명이다. 인구구성비는 남성이 135(36.5), 여성이235(63.5) 로, 전체 응답자의 2/3가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을 보면 19-30대 79(22.4%), 31-40대 86(23.2), 41-50대 142(38.4%). 51-60대 60(16.2), 61-65대 3(.8%)로 30대~50대 사이에 많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탈북동기를 조사한 결과 생활고가 48%, 체제불만 14.9%, 중 국친척도움 11.4%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활고가 48%로 많이 탈북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자녀 44.9%, 배우자33.8%, 혼자31.6%로 나타났으며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형제끼리 넘어온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없다37.6%, 있다62.4%로, 자녀 유형을 본다면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50.2%, 전배우자와의 자녀43.7%로 조사대상의 50%넘게 현 배우자 자녀가 많지만 자녀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상태를 본다면 미혼, 기혼, 이혼, 동거, 별거, 사 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에 응답자는 모두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유형 을 살펴보면, 합법적 결혼 상태인 경우 기혼이 39.2%, 미혼이 22.2%, 이

혼 15.1%, 동거 12.2%의 순위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배우자 출신을 보면, 북한 출신인 경우가 가장 많아 62.9%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조선족으로 16.5%였다. 남한 출신의 배우자를 가진 경우는 14.5%이었고 조선족 외 중국민족이 2.7%였다.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배우자출신을 보면, 북한 출신인 경우가 가장 많아 66.2%를 차지하였고 다음이중국본토(한족)14.3%, 남한 출신의 배우자와의 결혼한 경우는 9.1%의 이외 기타 .7%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보여 지는 것같이 30대~50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자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북한이탈주민들끼리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나 가정폭력태도가 적지 않게 나타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 직접목격과 간접경험에도 많이 노출 될 위험성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복합적인 가족환경이 심리·사회적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2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비고
 성 별	여 자	235(63.5)	
	남 자	135(36.5)	
(n=370)	계	370(100.0)	
	19-30	79(22.4)	
	31-40	86(23.2)	
나이(n=370)	41-50	142(38.4)	
9 9(11-570)	51-60	60(16.2)	
	61-65	3(.8)	
	계		
	생활고 때문에	181(48.9)	
	동반탈북을 위해서	14(3.8)	
	가정불화 때문에	12(3.2)	
	체제불만 때문에	55(14.9)	
탈북동기	중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11(3.0)	
(n=370)	중국친척의 도움을 받으려고	42(11.4)	
(11 010)	처벌우려 때문에	8(2.2)	
	남한 사회를 동경하여	34(9.2)	
	기 타	13(3.5)	
	계	370(100.0)	

	부(또는 배우자의 부)	33(8.9)	
	모(또는 배우자의 모)	63(17.0)	
	배우자	125(33.8)	
	자 녀	166(44.9)	
-1 11 11 -	(나의또는배우자의)친형제자매	20(5.4)	
함께 살고	(나의또는배우자의)이복형제자매	2(.5)	2 H A -1
있는 가족	친손자 손녀	2(.5)	중복응답
었는 가득	외손자 손녀	3(.8)	
	친조카 또는 외조카	4(1.1)	
	혼자살고 있음	117(31.6)	
	기타	4(1.1)	
	계(결측1개)	370(100.0)	
	없 다	139(37.6)	
자녀	있 다	231(62.4)	
• •	·	370(100.0)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116(50.2)	
	전 배우자와의 자녀	101(43.7)	
자녀유형	배우자의 전 배우자의 자녀	7(3.0)	
1 1 11 0	기 타	7(3.0)	
	계(결측139개)	370(100.0)	
		82(22.2)	
	미 혼 기 혼	145(39.2)	
	이 혼	56(15.1)	
혼인상태	이 혼 동 거	45(12.2)	
	별 거	11(3.0)	
	사 별	31(8.4)	
	계	370(100.0)	
	북한 출신	190(66.2)	
20.0	남한 출신	26(9.1)	
배우자	중국 조선족	41(14.3)	
출신지역	중국 본토출신(한족)	28(9.8)	
출신 시 뒤	기 타	2(.7)	
	계(결측83개)	370(100.0)	

2)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 학력

우선 북한의 학력은 11년제 의무교육 속에 유치원 높은 반 1년 과정과 인민학교 4년제로, 고등중학교 학제는 6년제로 8월 30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 4월 1일부터 소학교(초등학교)로 명칭은 개편되었고, 고등중학교로 불리던 명칭도 중학교로 바뀌었던 것을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소학교 5년, 초등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을 골간으로, '11년 의무교육제'를 개편하였다. 대학은 '100만대군 인테리 양성과정'이 끝나면서 교육의 균형을 맞추어 3년제 고등전문학교를 80년대 말

에 들어와서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여왔다. 북한의 이러한 학력과정을 걸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학력을 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이 5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은 14.5%였고, '전문졸업'이 12.8%순위로 조사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2/3 이상이 고등졸업이고,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남한에서의 학력을 본다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33.9%, 대학재학생 17.3%, 대학졸업생 12.5%, 석사 재학생 4.2%, 박사 졸업은 각각 1.2%로 아래 <표 -27>에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학력에서 고등졸업이 많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태인 것과 동시에 북한에서 가정폭력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도 가정폭력의 인식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27> 조사대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구 분	빈도(%)	비고
	인민학교 중퇴	2(.5)	
	인민학교 졸업	2(.5)	
	중학교 중퇴	11(3.0)	
	중학교 졸업	40(10.0)	
	고등학교 중퇴	14(3.8)	
북한에서 학력	고등학교 졸업	190(51.9)	
, 2 , , , , ,	전문학교 중퇴	3(.8)	
	전문학교 졸업	47(12.8)	
	대학교 중퇴	3(.8)	
	대학교 졸업	53(14.5)	
	기 타	1(.3)	
	계(결측4개)	370(100.0)	

3)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경제형태

다음 표는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취업유무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64.3%인 238명이 취업중인 상태였고, 35.7%인 132명이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태인 조사대상자의 직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2.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23.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종사자의 전문 직업을 가진 대상은 8.8% 21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경제형편으로는 어려운 편이 48.9%수준이고, 중간은 31.6%, 매우 어렵다가 18.1%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1.463.500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68.6%, 예가 31.1%로 나타났다. 주 수입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66.4%가 되고 수급자는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31.4%가 된다. 정착보조금이라 답한 경우는 1.1%였다.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예상외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수급권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제3국을 체류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인신매매, 고문피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다양한 형태로 검진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전문직보다단순직이 많은 이유도 건강과 교육수준에서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표-28>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한사회를 적응해 가려고 노력하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심리·사회적응에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28> 조사대상자의 취업과 경제형태

	구 분	빈도(%)	비고
직업학교 다닌	그렇다	157(42.5)	
	그렇지 않다.	212(57.5)	
경험	계(결측1개)	370(100.0)	
	취업 중	238(64.3)	
취업상태	미 취업	132(35.7)	
	계	370(100.0)	
	관리 자	16(6.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 (8.8)	
	사무종사자 	16(6.7)	
	서비스종사자	56(23.4)	
직업의 형태	판매종사자	10(4.2)	
7 H-1 0 4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2(5.0)	
	단순노동	78(32.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5.9)	
	기 타	16(6.7)	
	계(결측131개)	370(100.0)	
	매우 부유함	2(.5)	
	부유한편	3(.8)	
거게처터	중 간	117(31.6)	
경제형편	어려운편	181 (48.9)	
	매우어려움	67(18.1)	
	계	370(100.0)	
		Mean=146.35	
월 평균가구소득	만워	S.D.=101.02	
2 02 11 - 1	_ 3	Min.=.00 Max.=600.00	
	 ୁ	115(31.1)	
기초생활	아니오	254(68.6)	
수급자	기타	1(.3)	
	계	370(100.0)	
	근로소득	245 (66.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16(31.4)	
주 수입원 중	정착보조금	4(1.1)	
	기 타	4(1.1)	
	계(결측1개)	370(100.0)	

4)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형태와 가족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거형태를 본다면 자기 집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8(2.2%)명이다. 영구임대 47.4%, 국민임대 29.2%, 공공임대 12.3%순위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집은 6.5%,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살고 있는 형태는 96%이므로 국가가 하나원을 퇴소할 때 배정하여 준 집에서 기본적으로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형태를 본다면 개신교가 44.9%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44.1%가 된다. 개신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남한에 입국할 때 주로 교회의 도움으로 온데도 원인이 있지만 일부교회에서 그들을 돈으로 유도 하는데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줄 돈 때문에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여러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제3국에 있는 가족이 친형제 또는 친자매가 61.4%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친척이 46.8%, 친아버지 25.7.%순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70%가 친형제 또는 친자매가 제일 많은 것으로 <표-29>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과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29>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와 가족실태

	구 분	빈도(%)	비고
	자 기 집	8(2.2)	
	전월세 집	24(6.5)	
	영구임대	174(47.4)	
주거 형태	국민임대	107(29.2)	
	공공임대	45(12.3)	
	기 타	9(2.5)	
	계(결측3개)	370(100.0)	

	내 집	358(96.)	
	친 구 집	4(1.1)	
	쉼터(시설)	2(.5)	
현재 살고 있는 형태	그룹홈(고동생활가정)	2(.5)	
	학교기숙사	2(.5)	
	회사기숙사	2(.5)	
	계	370(100.0)	
	개신교(교회)	166(44.9)	
	천주교(성당)	21(5.7)	
종교형태	불교(절)	18(4.9)	
8 JE 3 91	없 음	163(44.1)	
	기 타	2(.5)	
	계	370(100.0)	
	친아버지	95(25.7)	
	친형제 또는 친자매	227(61.4)	
	친 자 녀	78(21.1)	
북한이나 제 3국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30(8.1)	중복응답
살고 있는 가족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13(3.5)	9 4 9 H
	친 척	173(46.8)	
	기 타	11(3.0)	
	계	370(100.0)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려고 자신상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기 전에는 모든 문제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제3국에 가족을 두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거의 없으며, 또한 이런 아픈 상처를 가족을 이룬다고 하여도 북한이탈주민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근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한다. 그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아픈 가슴을 안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남한사회에서 성공하려고 모든 힘을 다하여 가고 있다.

2.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

1) 주요변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통계분석 한 결과 잘 나타내고 있다. 전체 평균은 3.63(S.D.=.50), 최저값과 최대값은 2.56과 4.84로 범위는 1-5로 정하고 폭력에 대

한 보편적 거부,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 폭력의 범위,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폭력의 효율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직접경험 에서도 평균은 1.41(S.D=.47), 최저값과 최대값은 1.00과 3.85로 범위는 1-5로 정 하고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였으며, 간접경험에서는 평균은 1.52(S.D.=.58), 최저값과 최대값은 1.00과 4.00으로, 범위는 1-5로 정하여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다음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서도 평균은 1.59(S.D.=.51), 최저값과 최대값은 1.00과 3.10으로 범위는 1-4로 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폭력태도도 평균은 2.86(S.D.=.38), 최저값과 최대값은 1.930 과 3.80으로 범위는 1-4로 정하여 폭력태도의 필요성, 훈육적, 폭력에 대한 거 부, 폭력의 효율성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 법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평균은 .69(S.D.=.26), 최저값과 최대값은 .00과 1.00으로 범위는 1-2로 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심리·사회적응에서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으로 나누어 본 결과심리적응에서 평균은 3.06(S.D.=.64), 최저값과 최대 값은 1.00과 4.00으로 범위는 1-4로 정하여 분석하였고 사회적응에서도 평균은 2.75(S.D.=.49), 최저값과 최대값은 1.52과 3.90으로 범위는 1-4로 정하여 분석하 였으며, 사회적 차별에서 평균은 1.45(S.D.=.49), 최저값과 최대값은 1.00과 3.56으 로 범위는 1-4로 정하여 분석하였고 자아존중감에서도 평균은 2.94(S.D.=.46). 최저값과 최대값은 2.00과 4.00으로 범위는 1-4로 정하여 분석한 자료는 아래 <표-30>에 서 보여주고 있다.

<표-30> 주요변인의 일반적 특성

	Mean	S.D.	Min./Max.	Range
폭력인식	3.63	.50	2.56/4.84	
폭력에 대한 보편적거부	3.72	.72	1.67/5.00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	3.36	.82	1.00/5.00	
폭력에 대한 구체적거부	3.83	.79	1.00/5.00	1-5
폭력의 범위	3.57	.96	1.00/5.00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3.64	.75	1.50/5.00	
폭력효용성	3.50	.89	1.00/5.00	

직접경험	1.41	.47	1.00/3.85	
정서적폭력	1.56	.58	1.00/4.71	1-5
신체적폭력	1.23	.43	1.00/3.33	
간접경험	1.52	.58	1.00/4.00	
정서적폭력	1.71	.72	1.00/4.43	1-5
신체적폭력	1.30	.52	1.00/3.50	
폭력허용도	1.59	.51	1.00/3.10	1-4
폭력태도	2.85	.38	1.93/3.80	
필요성	2.90	.60	1.00/4.00	
훈육적	2.57	.58	1.00/4.00	1-4
폭력에 대한 거부	2.92	.56	1.00/4.00	
폭력의 효율성	2.95	.60	1.00/4.00	
관련 법인식	.6932	.26	.00/1.00	1-2
심리적응	3.06	.64	1.00/4.00	1-4
사회적응	2.75	.49	1.52/3.90	1-4
사회적차별	1.45	.49	1.00/3.56	1-4
자아존중감	2.94	.46	2.00/4.00	1-4

2) 법 인식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 여자 남자로 갈라서 12개 문항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표-31>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에서 폭력이다가 여자는 66.7%, 남자는 81%, X^2 =3.126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에서 여자는 65.5%, 남자는 34.5%, X^2 =7.549, p<.05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서 여자는 67.1%, 남자는 32.9%, X^2 =8.321, p<.05으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에서 여자는 64.4%, 남자는 35.6%, X^2 =841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에서 여자는 65.5%, 남자는 34.5%, X^2 =10.190, p<.01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목을 조르는 행위에서 여자는 64.7%, 남자는 35.3%, X^2 =7.124, p<.05

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에서 여자는 65.2%, 남자는 34.8%, X²=4.682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서 여자는 66.3%. 남자는 33.7%. $X^2=1.512$ 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에 서 여자는 67.2%, 남자는 32.8%, X²=1.426으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 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에서 여자는 67.5%, 남자는 32.5%, X²=3.020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원치 않음에 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서 여자는 65.7%, 남자는 34.3%, X²=1.101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서 여자는 66.5%, 남자는 33.5%, X²=2.084로 여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북 한이탈주민의 인식정도에서 1~7번까지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는 편이 높지 만 8~12번까지에서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폭력수준이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북 한사회자체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데도 있지만 가정폭력 에 대한 법조차 모르고 살아왔으며, 사회자체가 폭력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정폭력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본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에 대한 교 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31>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

N <u>o</u>	가정폭력 인식 내용	성별	폭력이다	아니다	모른다	χ^{2}
		여자	162(66.7)	51(56.7)	22(59.5)	
1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남자	81(33.3)	39(43.3)	15((40.5)	3.126
	아기다 곡을 하는 행위	계(%)	243(100.0)	90(100.0)	37(100.0)	
	2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여자	194(65.5)	34(63.0)	7(35.0)	
2		남자	102(34.5)	20(37.0)	13(65.0)	7.549*
		계(%)	296(100.0)	54(100.0)	20(100.0)	
		여자	196(67.1)	26(53.1)	13(44.8)	
3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남자	96(32.9)	23(46.9)	16(55.2)	8.321*	
	계(%)	292(100.0)	49(100.0)	29(100.0)		

		여자	201(64.4)	20(60.6)	14(56.0)	
4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남자	111(35.6)	13(39.4)	11(44.0)	841
		계(%)	312(100.0)	33(100.0)	25(100.0)	
		여자	224(65.5)	10(47.6)	1(14.3)	
5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남자	118(34.5)	11(52.4)	6(85.7)	10.190**
		계(%)	342(100.0)	21(100.0)	7(100.0)	
		여자	229(64.7)	6(46.2)	0(0.0)	
6	목을 조르는 행위	남자	125(35.3)	7(53.8)	3(100.0)	7.124*
		계(%)	354(100.0)	13(100.0)	3(100.0)	
		여자	217(65.2)	12(44.4)	6(60.0)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남자	116(34.8)	15(55.6)	4(40.0)	4.682
		계(%)	333(100.0)	27(100.0)	10(100.0)	
		여자	128(66.3)	55(61.8)	52(59.1)	
8	8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을 임으로 처리하는 행위	남자	65(33.7)	34(38.2)	36(40.9)	1.512
	시네이는 3개	계(%)	193(100.0)	89(100.0)	88(100.0)	
	ㅁ귀 기막귀리 세면 막게 제막1.	여자	92(67.2)	96(62.3)	47(59.5)	
9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남자	45(32.8)	58(37.7)	32(40.5)	1.426
	\$5 7 7	계(%)	137(100.0)	154(100.0)	79(100.0)	
		여자	104(67.5)	85(63.4)	46(56.1)	
10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남자	50(32.5)	49(36.6)	36(43.9)	3.020
তিট্যা পাদা//গে জিটে ভাগা	계(%)	154(100.0)	134(100.0)	82(100.0)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여자	138(65.7)	50(61.7)	47(59.5)	
11		남자	72(34.3)	31(38.3)	32(40.5)	1.101
0.35012 811	계(%)	210(100.0)	81(100.0)	79(100.0)		
12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여자	141(66.5)	44(57.9)	50(61.0)	
		남자	71(33.5)	32(42.1)	32(39.0)	2.084
	계(%)	212(100.0)	76(100.0)	82(100.0)	1	

*p<.05 **p<.01 ***p<.001

3. 주요변인의 집단 간 차이

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32>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t=-6.424, p<.001). 이때 자아존중감의 상위집단의 폭력인식은 평균 3.80(S.D=.50)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가정폭력인식은 평균 3,48(S.D=.46) 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인식을 예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024, p<.05). 이때 사회적 차별의 상위집단의 평균 3.56(S.D=.50)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폭력인식은 평균 3.67(S.D=.50) 로 나타나 사회적 차별이 높을수록 폭력인식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집단변인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1.991, p<.05). 이때 직접경험의 상위집 단은 평균 3.56(S.D=.51)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3.67(S.D=.50)으 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접적 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간접경험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210, p<.05). 이때 간접경험의 상위 집단은 평균 3.55(S.D=.52)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3.67(S.D=.49)으 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간접적 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017, p<.01). 이때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은 가정폭력 인식에 평균이 3.71(S.D=.50)로 나타 났고 낮은 가정폭력 인식에 대한 평균이 3.55(S.D=.50)로 나타나 상위집 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인식 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하여서도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폭력 허용도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914, p<.001). 이때 폭력허용도가 높은 집단은 가정폭력인식의 평균이 3.48(S.D=.44)로 나타났고 낮은 폭력인식에 대한 평균이 3.78(S.D=.52)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11.570, p<.001). 이때 폭력태도가 높은 집단은 폭력인식의평균이 3.88(S.D=.45)로 나타났고 낮은 폭력인식에 대한평균이 3.36(S.D=.41)로나타나 상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태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북한학력,배우자 출신,수급여부에 따른 가정폭력 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32> 폭력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Mean	S.D.	t/F	사후검정
성별	여 자	3.66	.48	1 619	
	남 자	3.57	.54	1.613	
- 자아존중감	상 위	3.80	.50	-6.424***	
시작도 8 전	하 위	3.48	.46	0.424	
사회적 차별	상 위	3.56	.50	2.02.4*	
사외식 사별	하 위	3.67	.50	-2.024*	
	중학교이하	3.64	.50		
북한학력	고등학교이하	3.61	.50	.579	
7 2 4 4	전문학교이하	3.72	.51	.313	
	대학교이하	3.64	.53		
	북 한	3.66	.52		
배우자출신	남 한	3.68	.51	01.1	
배구작물신	조선족	3.48	.44	.211	
	한 족	3.62	.48		
수급여부	수급자	3.66	.48	71.0	
	비수급자	3.62	.52	.710	
직접경험	상 위	3.56	.51	-1.991*	
	하 위	3.67	.50	1.551	

간접경험 상 위 3.55 .52 -2.210* 하 위 3.67 .49 법에 상 위 3.71 .50 3.017** 대한 인식 하 위 3.55 .50 3.017** 폭력허용도 상 위 3.48 .44 -5.914*** 하 위 3.78 .52 폭력태도 상 위 3.88 .45 11.570*** 하 위 3.36 .41						
하 위 3.67 .49 법에 상 위 3.71 .50 대한 인식 하 위 3.55 .50 목력허용도 상 위 3.48 .44 하 위 3.78 .52 목력태도 상 위 3.88 .45 하 위 3.36 .41	기기거치	상 위	3.55	.52	2.21.0*	
대한 인식 하 위 3.55 .50 3.017** 작력허용도 상 위 3.48 .44 -5.914*** 하 위 3.78 .52 작력태도 상 위 3.88 .45 11.570*** 하 위 3.36 .41	신설경험	하 위	3.67	.49	-2.210	
대한 인식 하 위 3.55 .50	법에	상 위	3.71	.50	2.01.7**	
폭력허용도 하 위 3.78 .52 상 위 3.88 .45 하 위 3.36 .41	대한 인식	하 위	3.55	.50	3.017	
하 위 3.78 .52 상 위 3.88 .45 하 위 3.36 .41	포러치요ㄷ	상 위	3.48	.44	_5 Q1 //***	
폭력태도 하 위 3.36 .41 11.570***		하 위	3.78	.52	5.314	
하위 3.36 .41		상 위	3.88	.45	11 570***	
*		1 .1		.41	11.570	

* p<.05, ** p<.01, *** p<.001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는 평균으로 집단구분 함.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33>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6.016, p<.001). 이때 자아존중감의 상위집단의 사회적 차별은 평균 1.30(S.D=.36)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심리적응은 평균 1.59(S.D=.55)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차별을 예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인식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805, p<.05). 이때 가정폭력 인식의 상위집단의 평균 1.43(S.D=.50)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사회적 차별은 평균 1.48(S.D=.49)로 나타나 가정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집단변인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846, p<.001). 이때 직접경험의 상위집단은 평

균 1.61(S.D=.48)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1.36(S.D=.46)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접적으로 가정폭력 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회적 차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 한 간접경험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757, p<.001). 이때 간접경험의 상위집단은 평균 1.57(S.D=.50) 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1.38(S.D=.46)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회적 차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1.622, p<.05). 이때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의 상위집단은 사회적 차별의 평균이 1.41(S.D=.50)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평균이 1.50(S.D=.50)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서도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허용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690, p<.001). 이때 폭력허용도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차별의 평균이 1.55(S.D=.50)로 나타났고 심리적응에 대한 평 균이 1.36(S.D=.47)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3.049, p<.01). 이때 가정폭력태도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 차별의 평균이 1.38(S.D=.45)로 나타났고 낮은 사회적 차별에 대한 평균이 1.54(S.D=.52)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태도 가 낮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33>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Mean	S.D.	t/F	사후검정
성별	여 자	1.44	.47	1.613	
~ 6 원	남 자	1.47	.52	1.015	
자아존중감	상 위	1.30	.36	-6.016***	
시시도 9 년	하 위	1.59	.55	0.010	
폭력인식	상 위	1.43	.50	805	
ㅋㅋ 신ㅋ	하 위	1.48	.49	.803	
	중학교이하	1.46	.43		
북한학력	고등학교이하	1.45	.48	.134	
각 인 즉 즉	전문학교이하	1.44	.52	.104	
	대학교이하	1.49	.57]	
	북 한	1.42	.46		
배우자출신	남 한	1.44	.50	1.528	
메구작물전	조선족	1.50	.52	1.526	
	한 족	1.63	.61		
수급여부	수급자	1.48	.50	700	
구답역주	비수급자	1.44	.48	723	
직접경험	상 위	1.61	.48	4.846***	
有省份日	하 위	1.36	.46	4.040	
간접경험	상 위	1.57	.50	3.757***	
신경경험	하 위	1.38	.46	3.737	
법에	상 위	1.41	.50	1 (00	
대한 인식	하 위	1.50	.50	-1.622	
폭력허용도	상 위	1.55	.50	3.690***	
- 무디에 등도	하 위	1.36	.47	3.090	
폭력태도	상 위	1.38	.45	-3.049**	
독덕네고	하 위	1.54	.52	-3.049	

^{*} p<.05, ** p<.01, *** p<.001

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심리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34>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7.233, p<.001). 이때 자아존중감의 상위집단의 심리적응은 평균 3.30(S.D=.54)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심리적응은 평균 2.85(S.D=.66)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는 평균으로 집단구분 함.

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예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601, p<.001). 이때 사회적 차별의 상위집단의 평균 2.73(S.D=.66)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심리적응은 평균 3.23(S.D=.57) 로 나타나 사회적 차별이 낮을수록 심리적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태도는 집단변인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t=-.752 p<.05). 이때 직접경험의 상위집단은 평균 3.04(S.D=.52)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3.09(S.D=.69)으로 나타나 하위집단 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 을 경우 심리적응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간접경험에 따 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71, p<.05). 이때 간접경험의 상위집단은 평균 3.03(S.D=.55)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3.08(S.D=.68)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적응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심리적응이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724, p<.05). 이때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은 심리적응 에 평균이 3.08(S.D=.67)로 나타났고 낮은 심리적응에 대한 평균이 3.04(S.D=.62) 로 나타나 상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에 대 한 법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에 대하여서도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허용도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5,076, p<.001). 이때 폭력허용도가 높은 집단은 심리적응의 평균이 2.89(S.D=.63)로 나타났고 심리적응에 대한 평균이 3.22(S.D=.62)로 나타나 하위 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심리 적응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218, p<.001). 이때 가정폭력태도가 높은 집단은 심리적응의 평균이 3.19(S.D=.59)로 나타났고 낮은 심리적응에 대한 평균이 2.91(S.D=.67)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태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34> 심리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

		Mean	S.D.	t/F	사후검정		
 성 별	여 자	3.01	.70	-2.008*			
	남 자	3.14	.54	-2.006			
자아존중감	상 위	3.30	.54	7.233***			
사약근궁검	하 위	2.85	.66	1.233			
사회적차별	상 위	2.73	.66	-7.601***			
사외식사별	하 위	3.23	.57	-7.601			
	중학교이하	.61	.08				
북한학력	고등학교이하	.62	.04	.748			
4 2 4 4	전문학교이하	.65	.09	. 740			
	대학교이하	.71	.10				
	북 한	3.11	.61454				
배우자출신	남 한	2.77	.82	2.416			
배구작물선	조선족	2.97	.59	2.410			
	한 족	3.09	.64				
수급여부	수급자	2.99	.66	-1.429			
——————————————————————————————————————	비수급자	3.09	.64	1.429			
직접경험	상 위	3.04	.52	752			
年省78 智	하 위	3.09	.69	.132			
간접경험	상 위	3.03	.55	371			
신접경험	하 위	3.08	.68	571			
법에	상 위	3.08	.67	70.4			
대한 인식	하 위	3.04	.62	.724			
 폭력허용도	상 위	2.89	.63	-5.076***			
	하 위	3.22	.62	3.070			
폭력태도	상 위	3.19	.59	4.218***			
두덕네스	하 위	2.91	.67	4.210			

^{*} p<.05, *** p<.001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는 평균으로 집단구분 함.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5>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12.816, p<.001). 이때 자아존중감의 상위집단의 심리적응은 평균 3.04(S.D=.40)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가정폭력인식은 평균 2.50(S.D=.41)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예민하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7.445, p<.001). 이때 사회적 차별의 상위집단의 평균 2.51(S.D=.42)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의 가정폭력인식은 평균 2.88(S.D=.47)로 나타나 사회적 차별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태도는 집단변인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487, p<.05). 이때 직접경험의 상위집단은 평균 2.66(S.D=.45)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2.80(S.D=.50)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을 알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간접경험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142, p<.01). 이때 간접경험의 상위집단은 평균 2.65(S.D=.46)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은 평균 2.81(S.D=.49)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사회적응이 더 낮은 것을 알수

있다.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정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955, p<.01). 이때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응에 평균이 2.82(S.D=.49)로 나타났고 낮은 사회 적응에 대한 평균이 2.68(S.D=.48)로 나타나 상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에 대하여서도 적응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허용도에 따른 사 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642, p<.001). 이 때 폭력허용도가 높은 집단은 사회적응의 평균이 2.63(S.D=.48)로 나타났 고 낮은 가정폭력인식에 대한 평균이 2.86(S.D=.47)로 나타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 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957, p<.001). 이때 폭력태도가 높은 집 단은 사회적응의 평균이 2.89(S.D=.48)로 나타났고 낮은 사회적응에 대한 평 균이 2.60(S.D=.45)로 나타나 상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탈주민은 폭력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북 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에 따른 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35> 사회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

		Mean	S.D.	t/F	Scheffe
성별	여 자	2.74	.51	າາາ	
~성 별	남 자	2.76	.45	332	
자아존중감	상 위	3.04	.40	12.816***	_
사야근공심	하 위	2.50	.41	12.010	
사회적 차별	상 위	2.51	.42	-7.445***	
사회의 시설	하 위	2.88	.47	7.445	
	중학교이하	2.74	.47		
북한학력	고등학교이하	2.73	.48	.899	
국안역역	전문학교이하	2.77	.53	.099	
	대학교이하	2.85	.48		

	북한(A)	2.78	.50		
배우자출신	남한(B)	2.71	.45	2.907*	$\Lambda \rightarrow C$
매구사물신	조선족(C)	2.50	.46	3.807*	A≠C
	한족(D)	2.78	.48		
스크시티	수급자	2.77	.48	405	
수급여부	비수급자	2.74	.49	.495	
직접경험	상 위	2.66	.45	-2.487*	
역심경험	하 위	2.80	.50	-2.401	
 간접경험	상 위	2.65	.46	-3.142**	
石田76日	하 위	2.81	.49	3.142	
법에 대한	상 위	2.82	.49	0.055**	
인식	하 위	2.68	.48	2.955**	
프러워이트	상 위	2.63	.48	4.0.40***	
폭력허용도	하 위	2.86	.47	-4.642***	
폭력태도	상 위	2.89	.48	5.957***	
	하 위	2.60	.45	5.557	
* : 05 **	< 0.1 *** < 0.01				

^{*} p<.05, ** p<.01, *** p<.001

5) 주요변인의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주요변인의 남녀 간 집단 간 차이를 본 것은 <표-36>와 같다. 폭력 인식의 남녀 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1.613, p<.05). 폭력 허용도는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2.442, p<.05). 이때 여자의 폭력허용도는 평균 1.54(S.D.=.48), 남자의 폭력허용도는 평균 1.67(S.D.=.55)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는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2.133, p<.05). 이때 여자의 폭력 태도는 평균2.88(S.D.=.36), 남자의 폭력태도는 평균 2.80(S.D.=.40)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법 인식은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2.516, p<.05). 이때 여자의 가정폭력 법 인식은 평균 .72(S.D.=.25), 남자의 가정폭력 법 인식은 평균 .65(S.D.=.27)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직접경험은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1.729, p<.05). 이때 여자의 가정폭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는 평균으로 집단구분 함.

력 직접경험은 평균 1.38(S.D.=.46), 남자의 가정폭력 직접경험은 평균 1.46(S.D.=.50)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간접 경험은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507, p<.05). 이때 여자의 가정폭력 간접경험은 평균 1.51(S.D.=.60), 남자의 가정폭력 직접경험은 평균 1.54(S.D.=.55)로 나타나 여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은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409, p<.05). 이때 여자의 사회적 차별은 평균 1.47(S.D.=.52)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응은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2.008, p<.05). 이때 여자의 심리적응은 평균 3.01(S.D.=.70), 남자의 심리적응은 평균 3.14(S.D.=.54)로 나타나 여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응은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332, p<.05). 이때 여자의 사회적응은 평균 2.74(S.D.=.51), 남자의 사회적응은 평균 1.47(S.D.=.52)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332, p<.05). 이때 여자의 사회적응은 평균 2.74(S.D.=.51), 남자의 사회적응은 평균 1.47(S.D.=.52)로 나타나 남자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36> 주요변인의 남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		•	• •
		Mean	S.D.	t
 폭력인식	여 자	3.66	.48	1 610
국적인적	남 자	3.57	.54	1.613
폭력허용도	여 자	1.54	.48	-2.442*
	남 자	1.67	.55	2. 41 2
폭력태도	여 자	2.88	.36	2.133*
목탁네도	남 자	2.80	.40	2.133
가정폭력 법	여 자	.72	.25	2.516*
인식	남 자	.65	.27	2.516
직접경험	여 자	1.38	.46	-1.729
직접경임 	남 자	1.46	.50	-1.729
기 기 거 치	여 자	1.51	.60	F.07
간접경험	남 자	1.54	.55	507
사회적 차별	여 자	1.44	.47	409
사회석 자멸	남 자	1.47	.52	.409

심리적응	여 자	3.01	.70	-2.008*
	남 자	3.14	.54	-2.008
사회적응	여 자	2.74	.51	220
	남 자	2.76	.45	332

* p<.05, ** p<.01, *** p<.001

폭력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 가정폭력 법 인식, 직접경험, 간접경험, 사회적차별, 심리적응, 사회적응의 주요 변인의 남녀에 따른 차이를 평균으로 집단구분 함.

4.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회귀식에 투입되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 변인들이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37>과 같다. 각 변인의 상관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상관관계수가 .730으로 나타나 높은 편이며, 폭력인식과 폭력태도의 상관관계수가 .57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통상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관관계수가 .8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이윤로, 유시순, 2013). 또한 다중공선성은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상관관계수, VIF계수, Durbin-Watson계수를 종합하여 판단한 때 회귀식에 투입되는 각 변인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48)

심리적응과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r=.453, p<.01), 사회적차별(r=-.449, p<.01), 폭력인식(r=.220, p<.01), 폭력허용도(r=-.270, p<.01), 폭력태도(r=.217, p<.01)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아존중감, 폭력인식, 폭력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차별, 폭력허용도와는 부적 상관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⁴⁸⁾ 통상적으로 VIF계수는 10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Durbin-Watson계수는 절대 값이 2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는 회귀분석을 보여주는 표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응과 상관계에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r=.655 p<.01), 사회적 차별 (r=-.345, p<.01), 폭력인식(r=.356, p<.01), 직접경험(r=-.180 p<.01), 간접경험 (r=-.173 p<.01), 폭력허용도(r=-.248, p<.01), 폭력태도(r=.314, p<.01), 가정 폭력에 대한 법인(r=.192 p<.01)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아존중감, 폭력인식, 폭력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폭력허용도와는 부적 상관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의 경우 심리적응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응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상관관계수가 모두 20이하로 나타나상관의 정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상관관계가 변인들은 회귀식에서도 영향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37>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성별	40]	觸잔득	습帷	남한	조선족	한족	기타	자존감	폭력인식	폭력하용도	料証	법인식	직접경험	간접경험	시회작차별	심리적응	시회적응
성별	1																	
뱌	037	1																
월평균소득	.161**	.197**	1															
수급여부	198**	068	-558**	1														
남한	044	120*	.142*	-029	1													
조선족	184**	-221**	041	070	129*	1												
<u>한</u> 족	109	053	034	.037	104	134*	1											
기타	059	030	039	.043	026	084	028	1										
자이존중감	003	054	.018	.068	035	164***	.018	037	1									
폭력인식	084	.054	.079	.041	.027	121*	007	052	361**	1								
폭력허용도	.126*	.149**	012	075	085	.009	.041	.046	310**	329**	1							
폭력태도	111*	.074	.026	.034	.091	091	008	073	348**	.574**	413**	1						
기폭법인식	130*	025	.004	.006	.127	081	085	008	.119*	.200**	370***	.223***	1					
직접경험	.090	112*	.044	056	.116*	.006	055	.294**	210**	104*	.202**	224**	070	1				
간접경험	.027	099	.026	071	.096	.070	043	.248***	177**	114*	.160**	198**	068	.730**	1			
사회적차별	.026	011	120*	.038	014	.031	.112	.101	362**	074	.238**	231**	049	.307**	214**	1		
심리적응	.097	.084	215**	075	140*	054	.014	.009	.453**	.220**	270**	.217**	.035	074	030	449**	1	
사회적응	.017	.030	.141**	.020	013	-192**	.032	027	.655**	.356**	248***	.314**	.192**	180**	-173**	-345**	576**	1

5.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특성, 경제특성, 배우자특성, 심리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구성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여 모델1을 설정하였고, 통제변인과 더불어 독립변수 중 하나인 가정폭력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모델2를 설정하였고, 여기에 독립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차별을 투입하여 모델3을 구성하였다. 각 모델의 VIF 팽창계수는 모두 10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Durbin-Watson d임계치는 1.945로 나타나 2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회귀식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제변인으로만 구성된 모델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3.689, p<.001). R²값은 .288로 나와 통제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8.8%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특성의 월평균소득(t=4.870, p<.001), 배우자 특성 중 남한사람과 결혼한 경우(t=-2.660, p<.01),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t=8.217, p<.001)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잘하며, 남한 사람과 결혼한 경우보다는 북한이탈주민끼리 결혼했을 때 심리적응을 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중 가정폭력변인으로 구성된 모델2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384, p<.001). 이때 F변화량의 유의도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92, p<.05). 가정폭력변인 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R²의 변화량은 .044로 나타나 새로 추가된 변인의 설명력이 4.4%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는 앞서 나타난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더하여 가정폭력변인 중 폭력허용도(t=-3.525, p<.001)가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과 가정폭력변인 및 사회적 차별변인 모두로 구성된 모델3의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0.937, p<.001). 이때 F변화량의유의도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129, p<.001). 사회적 차별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R²의 변화량은 .052로 나타나 새로 추가된변인의 설명력이 5.2%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제시된 요인들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이영향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t=-4.704, p<.001). 즉,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차별을 인식할수록 심리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특성의 월평균 소득, 배우자 특성의 남한배우자, 심리적 특성의 자아존중 감, 가정폭력변인의 폭력허용도, 사회적 차별 변인의 사회적 차별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남한배우 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일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차별이 낮을수록 심리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채택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38>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	.델1	5	<u> </u> 델2	5	<u> </u> 델3
			β	t	β	t	β	t
		(상수)		3.008**		2.706**		4140***
	개인특성	성별	001	016	.029	533	.055	1.054
통		나이	.054	.998	.077	1.446	.056	1.091
	경세특성	월평균소득	.261	4.870***	.235	4.420***	.200	3.861***
제		남한	143	-2.660**	158	-2.964**	161	-3.132**
변	배우자특	조선족	.014	.240	.016	292	.018	.335
인	성	한족	004	073	.012	235	.040	.791
		기타	.034	.649	.031	578	.037	.718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431	8.217***	.366	6.303***	.298	5.155***
		폭력인식			.027	.422	.059	.949
독		폭력허용도			216	-3.525***	178	-2.992**
립		폭력태도			.004	.062	029	-438
	가정폭력 변인	가폭법인식			001	010	.007	.124
변		직접경험			.011	.136	.075	.992
인		간접경험			.048	.630	.037	.505
	사회적차 벽	사회적차별					266	-4.704***
	F	`	13.	689***	9.	384***	10	.937***
	Δ			-	2	2.892*	22	.129***
	\mathbb{R}^2			288		.332		.383
	$\triangle R^2$			-		.044	.052	
	VIF		1.019-1.206		1.084-2.371		1.099-2.451	
	Durl Wat					1.945		

^{*} p<.05, ** p<.01, *** p<.001

2)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특성, 경제특성, 배우자특성, 심리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구성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여 모델1을 설정하였고, 통제변인과 더불어 독립변수 중 하나인 가정폭력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모델2를 설정하였고, 여기에 독립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차별을 투입하여 모델3을 구성하였다. 각 모델의 VIF 팽창계

성별은 남자 0, 여자1, 수급자는 비수급자 0, 수급자 1, 배우자는 북한사람이 기준,

수는 모두 10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Durbin-Watson d임계치는 2.064로 나타나 2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회귀식의 다중공 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제변인으로만 구성된 모델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1.826, p<.001). R²값은 .484로 나와 통제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8.4%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특성의 나이(t=2.194, p<.05), 경제적 특성의 월평균소득(t=2.783, p<.001),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t=14.446, p<.001)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나이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며, 원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중 가정폭력변인으로 구성된 모델2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9.700, p<.001). 이때 F변화량의 유의도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06, p<.05). 가정폭력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R²의 변화량은 .026으로 나타나 새로 추가된 변인의 설명력이 2.6%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앞서 나타난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더하여 가정폭력변인 중 폭력인식(t=2.380, p<.05)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과 가정폭력변인 및 사회적 차별변인 모두로 구성된 모델3의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8.523, p<.001). 이때 F변화량의유의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때R²의 변화량은 .003으로 나타나 새로 추가된 변인의 설명력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제시된 요인들과 가정폭력변인 중 가정폭력법인식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t=1.991, p<.05). 즉,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또한 가정폭력 법을 인식할 경우에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9>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2	모델1	j	모델2	5	고델3	
			β	t	β	t	β	t	
		(상수)		1.553		.092		.471	
	개인특성	성별	.002	.033	.020	.420	.026	.549	
통		나이	.100	2.194*	.102	2.221*	.097	2.109*	
1Ì	경제특성	월평균소득	.127	2.783**	.113	2.487*	.105	2.284*	
제		남한	001	014	007	155	008	169	
변	배우자	조선족	058	-1.209	035	730	034	722	
인	특성	한족	.028	.630	.043	.951	.049	1.089	
Ľ.		기타	.006	.132	.016	.351	.017	.382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644	14.446***	.592	11.910***	.576	11.229***	
	가정폭력	폭력인식			.131	2.380*	.139	2.502*	
독		폭력허용도			013	252	004	083	
립		폭력태도			029	506	037	634	
Н	변인	가폭법인식			.092	1.955	.094	1.991*	
변		직접경험			.056	.849	.071	1.058	
인		간접경험			084	-1.286	086	-1.326	
	사회적차 별	사회적차별					062	-1.229	
	F		31	.826***	19	.700***	18.523***		
	\triangle	त		-	2	.306*	1	.510	
	R^2			.484		.510		513	
	$\triangle R^2$			-		.026		.003	
	VIF		1.045-1.206		1.084-2.371		1.099-2.451		
	Durbin-V	Watson			·	2.064			

^{*} p<.05, ** p<.01, *** p<.001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경제적 특성의 월평균 소득, 심리적 특성의 자아존중감, 가정폭력변인의 가정폭력인식과 가정폭력법인식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성별은 남자 (), 여자1, 수급자는 비수급자 (), 수급자 1, 배우자는 북한사람이 기준,

가정폭력법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폭력 법 인식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3) 남녀에 따라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 영향요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40>와 같다. 개인특성변인, 경제특성변인, 배우 자특성변인, 심리적특성 변인 등 통제변수와 가정폭력변인과 사회적차별 을 회귀식에 투입할 결과 남자의 회귀식(F=4.285, p<.001), 여자의 회귀 식(F=8.881,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남자 회귀식의 설명력은 40.5%로 나타났고, 여자 회귀식의 설명력은 65.1%로 나타났다. VIF 팽창계수는 모두 10 이하이었고, Durbin-Watson d임계치 역시 모 두 2에 근접하고 있어 회귀식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 이때 각 회귀식에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 심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t=2.449, p<.05). 폭력인식 (t=2.449, p<.05), 사회적 차별(t=-3.438, p<.01)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 우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배우자(t=-2.965, p<.01), 자아 존중감(t=4.046, p<.001), 폭력허용도(t=-3.678, p<.001), 사회적 차별 (t=-3.743, p<.001)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차별은 남녀 모두 에게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폭력인식은 남자에게서만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고, 남한배우자, 폭력 법 인식은 여자에게서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검증 측면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 험은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여자의 경우 '북한이탈 주민의 폭력허용도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북한이탈주민의 사 회적 차별 경험은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40> 남녀에 따라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3	E 40/ 13 17	भ भिन विनिवृत्ति निर्मा विश्व वि					
				남자			여자	
			В	β	t	В	β	t
	개인특성	(상수)	2.428		3.230**	2.135		3.456**
	/11년 7 6	나이	001	020	224	.005	.065	1.004
통	경제특성	월평균소득	.001	.164	1.766	.001	.195	3.202**
제		남한	164	076	830	427	190	-2.965**
변	배우자특성	조선족	229	091	995	.086	.051	.783
인	메구사득~8	한족	014	005	061	.179	.085	1367
		기타	-	-	-	.375	.058	916
	심리적특성	자아존중감	.334	.262	2.449*	.429	.286	4.046***
		폭력인식	.236	.230	2.067*	.016	.012	.153
독		폭력허용도	028	028	270	380	269	-3.678***
립	가정폭력	폭력태도	284	202	-1.836	.042	.023	276
	변인	가폭법인식	.076	.035	.382	021	008	120
변		직접경험	.108	.089	.677	.058	.041	.419
인		간접경험	011	010	082	.094	.080	.857
	사회적차별	사회적차별	365	361	-3.438**	381	257	-3.743***
F			4.285***			8.881***		
	\mathbb{R}^2	.405			.651			
	VIF	1.098-2.391			1.086-2.580			
	Durbin-W	atson		2.022			1.909	

^{*} p<.05, ** p<.01, *** p<.001

4) 남녀에 따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영향요인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41>와 같다. 개인특성변인, 경제특성변인, 배우 자특성변인, 심리적 특성 변인 등 통제변수와 가정폭력변인과 사회적 차별을 회귀식에 투입할 결과 남자의 회귀식(F=6.745, p<.001), 여자의 회귀식(F=15.543,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남자 회귀식의 설명력은 51.7%로 나타났고, 여자 회귀식의 설명력은 56.3%로 나타났다. VIF 팽창계수는 모두 10 이하이었고, Durbin-Watson d임계치 역시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회귀식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각 회귀식에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소득(t=2.651, p<.05), 자아존중감(t=5.011, p<.001), 폭력인식(t=2.505, p<.05)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t=9.904, p<.001), 가정폭력 법인식(t=2.849, p<.01)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녀 모두에게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 소득과 가정폭력 인식은 남자에게서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법 인식은 여자에게서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검증 측면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여자의 경우 '북한이탈주 민의 가정폭력 법 인식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표-41> 남녀에 따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남자			여자	
			В	β	t	В	β	t
	개인특성	(상수)	.781		1.457	.055		.131
봉	/1127 6	바	.004	.081	1.005	.005	.086	1.518
	경세특성	월평균소득	.001	.222	2.651*	.000	.050	.938
제		남한	.168	.098	1.189	067	038	686
변	배우자	조선족	144	072	876	033	025	448
인	특성	한족	.278	.140	1.745	.077	.048	.876
L		기타	-	-	-	.040	.008	.147
	심리적특성	자이존중감	.488	.483	5.011***	.710	.610	9.904***
	가정폭력	폭력인식	.204	.251	2.505*	.100	.093	1.406
독		폭력허용도	.068	.086	.908	050	046	719
		폭력태도	119	107	-1.079	038	027	369
립	변인	가폭법인식	075	044	528	.333	.161	2.849**
변		직접경험	080	083	698	.127	.114	1.354
인		간접경험	073	086	784	069	077	940
	사회적차별 사회적차별		053	066	701	098	085	-1.424
F				6.745***			15.543**	*
R^2			.517			.563		
	VIF	1.098-2.391			1.086-2.580			
	Durbin-W	atson		2.121			2.104	

^{*} p<.05, ** p<.01, *** p<.001

제2절. 질적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구성요소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구성요소인'북한이탈주 민 가정폭력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이 도출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경험 구성요 서는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범주가 '어린 시절 폭 력경험', '폭력과의 결혼', '이용당함', '가정폭력 인식부재'로 나타났다. 범 주에 따른 각 하위범주는 '어린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됨', '이혼/새 가정', '인신매매를 당함', '말하는 짐승 같았음', '시아버지에게서 구타당함', '자 식을 낳고 엄마를 이해 함', '180도 달라짐', '남한에 와서 가정폭력을 알 게 됨', '가정폭력이해가 부족했음'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의 사회적 차별 경험 구성요소는 연구참여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것을 분 석한 결과,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4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 분되었다. 각 범주는 '중국에서 차별', '또 다른 차별(1)', '또 다른 차별 (2)', '남한에서의 차별'로 나타났으며, 각각 하위범주는 '국적없음', '도움 을 받고도 차별함', '한국인데도 이방인으로 차별함', '따가운 시선을 받 음', '너무 빠른 적응을 요구함', '인종차별 받음'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 구성요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인 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2개의 범주와 5개의 하 위범주가 구분되었다. 범주는 '우울증'과 '분노'이며, 각각 하위범주는 '우 울증', '울다', '분하다', '자살하고 싶음', '화가 났음'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3개의 구성요서에 따른 11개 범주와 22개 하위범주 및 내용을 제시 하면 <표-42>과 같다.

<표-42>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경험 구성요소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경험 구성요소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됨	매 맞고 자람 남편의 어린 시절 폭력가정에서 자람 반복되는 폭행
어린시절폭 력경험	이혼/새가정	엄마의 스트레스 해소대상 동생 잘못도 내가 새 아빠에게 근거 없이 맞음 눈칫밥 나 때문에 말다툼
포런케이	인신매매를 당함	팔려간 것이 인신매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며 공안에게 고발하겠다고 마음 졸임 손찌검 북한에 있으면 거지였을 거라고 자기가 거둬줘서
폭력과의 결혼	시아버지에게도 구타당함	시 아빠한테도 맞고 악만 남고
	말하는 짐승 같았음	그냥 혼자 울고 바닷가 가서 소리 지르고
	자식을 낳고 엄마를 이해 함	남편보다는 엄마 선택 얻어맞고 산 엄마를 꼭 닮은 나
이용당함	180도 달라짐	혼인신고 마치자
	남한에 와서 가정폭력을 알게 됨	남한에 와서야 상담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TV에서 할 일없는 사람들
가정폭력 인식부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	하나원에서 교육을 했더라면 중국남편 데리고 오지 않을 거고 이런 사례를 알았더라면 교육받을 가장 좋은 기회
C 1 / 11	기막힌 나라로 봄	여자들이 잘못해도 조그마한 언쟁도 여자들이 좋은 나라
	가정폭력을 알게 됨	사회적으론 중요한데 실제 방법은 미약 상담 받고 신고해도 형식적 대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구성요소

범주	하위범주	내용
중국에서 차별	국적 없음	국적이 없다고 무시 공안에게 신고할까
또 다른 차 별	도움 받고도 차별 함	남한에 와서까지 명절이 없었으며 자기들끼리 나 때문에 국적 받고도
	한국인인데도 이방인으로 차별 함	거지 간첩 아니야 후진국 말만 한국 사람이지
남한사회에 속하지 못 함	따가운 시선 받음	따가운 시선 수근거림 북한이탈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	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도 인간이니까 시간이 가면
	인종차별 받음	흑인보다는 조금 낫고, 조선족보다는 북한에서 알던 남한이 아니다 또 다시 망명갈까 흑인보다도 못하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 구성요소

범주	하위범주	내 용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울다	통곡을 하며
분노	분하다	조그마한 고마움도 없다는 게 분하다
	억울하다	참기 힘들다 업신여길 때 자살하고 싶다
	화가나다	예전에는 참았지만 같이 화를 내고

2. 질적연구의 주요범주들에 대한 기술 분석

1) 연구참여자의 가정폭력 경험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할 결과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 주로 정리되었다. 범주가 '어린 시절 폭력경험', '폭력과의 결혼', '이용당 함', '가정폭력 인식부재'로 나타났다. 범주에 따른 각 하위범주는 '어린시 절부터 폭력에 노출 됨', '이혼/새 가정', '인신매매를 당함', '말하는 짐승 같았음', '시아버지에게서도 구타당함', '자식을 낳고 엄마를 이해 함', '180도 달라짐', '남한에 와서 가정폭력을 알게 됨', '가정폭력이해가 부족 했음', '기막힌 나라라고 함', '가정폭력을 알게 됨', 등으로 나타났다. 범 주와 하위범주 및 내용은 <표-43>과 같다.

<표-43>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경험

범 주	하위범주	내 용
어린시절폭 력경험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됨	매 맞고 자람 남편의 어린 시절 폭력가정에서 자람 반복되는 폭행
	이혼/새가정	엄마의 스트레스 해소대상 동생 잘못도 내가 새 아빠에게 근거 없이 맞음 눈칫밥 나 때문에 말다툼
폭력과의 결혼	인신매매를 당함	팔려간 것이 인신매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며 공안에게 고발하겠다고 마음 졸임 손찌검 북한에 있으면 거지였을 거라고 자기가 거둬줘서
	시아버지에게도 구타당함	시 아빠한테도 맞고 악만 남고
	말하는 짐승과도 같았음	그냥 혼자 울고 바닷가 가서 소리 지르고
	자식을 낳고 엄마를 이해 함	남편보다는 엄마 선택 얻어맞고 산 엄마를 꼭 닮은 나

이용당함	180도 달라짐	혼인신고 마치자
가정폭력 인식부재	한국에 와서 가정폭력을 알게 됨	남한에 와서야 상담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TV에서 할 일없는 사람들
	가정폭력 이해가 부족했 음	하나원에서 교육을 했더라면 중국남편 데리고 오지 않을 거고 이런 사례를 알았더라면 교육받을 가장 좋은 기회
	기막힌 나라라고 함	여자들이 잘못해도 조그마한 언쟁도 여자들이 좋은 나라
	가정폭력을 알게 됨	사회적으론 중요한데 실제 방법은 미약 상담 받고 신고해도 형식적 대처

(1) 어린 시절 폭력경험

① 어린 시절부터 폭력 됨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 모두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가정불화인 것 을 알 수 있다. 가정이 불화한 경우 대부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화풀이 대상이 되는 등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결합을 하여 사는 과정에 그래서 폭력을 더 많이 당하였지 않을까 해요. 제가 볼 때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제가 이미 전에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남편한테 맞으며 살았는데 중국에서 역시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한국에 와서까지 가정폭력을 받으면 살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B]

"저의 남편 가정환경을 놓고 볼 때 아버지가 젊었을 때 계속 다른 여자를 보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계속 행패를 부리고 아내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 숨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저렇게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말로는 계속 하던 데 그것이 목격한 사실이 실제 가정생활에서 아버지 행동 그대로 하고 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C]

"저의 여동생이 한국에 와서 한국남성과 살고 있는데 말다툼을 자주하고 있어요. 한 번씩 동생 집에 가면 싸우는 모습만 보고 오게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네요 한번은 동생 집에 갔는데 울로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ooo아빠가 손 지검을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문을 차고 나가 찾아보니 공원에서 술을 퍼 마시고 있는 것을 단숨에 목을 움켜쥐고 집으로 끌고 들어 왔어요. 잘 못했다고 하는데 폭력하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현재 나는 장가를 가지 못하였으니모르기는 하지만 왜 폭력을 할까 좀 재미있게 살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F]

② 이혼/새가정

또한 이런 가정은 대부분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후 새 가정을 꾸린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새 가정에서 새엄마 또는 새 아빠로부터 이유없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 가정을 꾸리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이 이루어졌을 경우 어린 자녀들은 이혼한 부모의생활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 아빠가 가정불화 속에 6년을 살다가 이혼을 하여 새엄마가 들어와 눈칫밥을 먹다가 할머니에게로 가서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할머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내심정은 모르고 그저 손녀라는 생각만 하는데 나는 참 답답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와서 함께 사는 과정에서 제 때문에 새 아빠와 엄마가 또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목격하며 자

라왔습니다. 저는 새 엄마와 새 아빠하고 살면서 내 자식만은 부모없이 살게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생각 되로 생활이 되지 않네요."[연구인터뷰 참여자A]

"저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엄마하고 아버지 이혼했으니까 돌 지나서부터 엄마 등에 업혀 함경도 회령시에 와서 새아버지와 살 때 속상할 때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잘못하여도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말이 너는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한테 가라고...동생들이 잘못해도 나만때리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어려서 고생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애요. 어쩌면 나는 언제 한번 번한 생활이 없이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 ...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고 싶은 때가 더 많아요. 나는새 아빠 때문에 근거 없이 멋모르고 매를 맞으며 자라 어느덧 엄마 곁은떠나 시집을 갔지만 역시 고생하며 살다가 장사할 돈이 없어서 사기를당해 남편 곁에 못가고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연구인터뷰참여자B]

(2) 폭력과의 결혼

① 인신매매를 당함

어린 시절 폭력 가정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생활 역시 폭력가 정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보면서 자신들 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른 모습을 갖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결혼하여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대로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을 거쳐서 온 경우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하여 한족이나 조선족에게 가게 되고, 강제로 동거생활을 하게 된다. 자의적 결혼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국적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차별이나 폭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찌검을 당해도, 언어적인 폭력을 당해도 '공안에게

고발 할까봐서' 참고 지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야 자신들이 인신매매에 당했음을 알게 된다.

"저는 엄마가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여 엄마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은 브 로커에 의해 팔려서 조선족과의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활이 순 탄치만은 아니었어요.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저거 불쌍해서 데리고 산 다. 공안에 고발해 잡혀가게 하겠다. 잡혀가 감옥생활 죽도록 해보고 싶 냐? 중국에서 내가 너를 거둬주었기 때문에 남한에 네가 올 수 있었다. 북한에 있었으며 거지 되어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구박과 멸시 를 받으며 9년이란 생활을 함께 동거하여왔어요. 참 우습네요? 저는 그 래도 그 사람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중국에서 가슴을 조이기는 하였지만 고마워서 한국에 초청하여 국적까지 취득을 하였어요. 국적을 취득하자 이 사람이 점점 말씨도 그렇고 행동도 더 거칠어지는 것이 예요. 그래서 참다못해 한마디 나도 하자 한국에 오니 큰소리를 친다고 도리어 저를 손찌검을 하는 것이 예요. 중국에서부터 남편 때문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왔지만 한국에 와서 더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 해서 곁에 두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저 내 운 명이 이런 가부다 하고 살았지만 한국에 와보니 브로커에 의해 내가 인 신매매를 당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연구인터뷰참여자A]

"제가 중국에 넘어서니 낯선 남자가 저를 맞이하여 택시에 태워 온밤가더니 어느 한 마을에 내려서 다른 사람과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저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기에 또 따라가니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되어 중국에서 꼼짝 못하고 본의 아니게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사는 동안 저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선 가족이 저를 사람취급을 하지 않으며, 또한 북한사람은 다거지고, 굶어 죽는 줄 알고 있다보니 쩍하면 굶어 죽게 된 것을 데려왔다느니, 그렇지 않으면 중국공안에 고발하여 북한에 가서 감옥귀신이 되게 하겠다고 위협까지 당하며 10

년을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게 되어 이제는 16살 남자 아이예요. 제가 브로커에 의해 팔려간 것이 남한에 와서야 인신매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연구인터뷰참여자B]

"북한에서 남편이 먼저 중국에 건너갔기에 남편을 찾으려고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들어서자마자 브로커에 의해 팔려서 한쪽소굴로 갔어요. 가고 보니 억이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예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불구자예요. 그러다보니 제구실도 못하는 바보 같은 그런 인간한테 팔려가 남편하고 연락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3년 만에 연락이 되어 한국에 오게되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입국은 하였지만 중국에 팔려가 살던 문제가저의 생활의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말끝마다 한족하고 살아보니 어떤 가고 비양조로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열이 머리끝까지 올라 싸우군 하였어요. 얼마나 똑똑하지 못하면 인신매매에 걸려 팔려가는 가고 비양조로 이야기할 때 괜히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였어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한번씩 내뱉는 말에서 인신매매에 걸려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싸움이 잣다보니 더는 함께 살수가 없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연구인터뷰참여자C]

② 시아버지에게도 구타당함

이들의 폭력의 정도는 심각했는데 조선족 또는 한족 남편에게서만 폭력을 당한 게 아니라. 심지어 시아버지에게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한 가정의 아내나 며느리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종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결혼은 결혼을 의식하기도 전에 타인에 의해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결혼이라 할 수 없으며 '폭력과의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에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한국에 왔지만 괜히 중국에 있는

시집 쪽을 한국에 초청하여 놓고 시 아빠한테까지 구타를 당하고 보니 정말로 내가 악이 났거든요 시 아빠가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말리지는 못하고 도리어 저한테 매질하는 것이 예요. 적반하장을 하여도 정도가 있지 나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집안의 물건을 다 내 동댕이치며이집에서 모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울다가 기절하여 119가 와서 실어간적도 몇 번 있었어요. 아직 나는 시 아빠가 아들며느리 다투는데 뛰어들어 며느리를 때렸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어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그러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혼을 신청하여 합의 이혼을 하여 주지 않아 소송으로 갔어요. 지금도 이혼중입니다. 나한심하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내가 한심한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리다보니 사람이 멍해지는 것 같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A]

③ 말하는 짐승과도 같았음

이런 차별 및 폭력상황에 있는 결혼생활이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 울거나 소리 내어 통곡하는 경우가 있으며, '말 하는 짐승과도 같았음'(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없음)며 차별을 당하던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낯선 땅에 브로커에 의해 팔려 원치 않는 동거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였어요. 중국에서 겪은 우리들의 생활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힘들 거예요. 하도 천한 인간이니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그냥 혼자 울고, 때려도 울고 그랬죠. 옆에 뭐 부모 있거나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디 가서 해 볼 데가 없으니까. 목숨이 길긴 길어요. 그러 천대받으면서 그 속에서 짐승취급을 당하면서도 산 것을 보면 희한해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서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라 힘들었으면 혼자 울고, 바닷가나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통곡 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A]

"우리는 중국에 넘어서는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이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신분도 없다보니 사람이라고 하니 사람이지 말하는 짐승과도 같았어요." [연구인터뷰참여자B]

"우리는 중국에 넘어서는 순간부터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특히 여자는 그래도 시집이래도 가지만 남자들은 정말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산골로 깊이 들어가서 광산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소처럼 일해주고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일전 한 푼 못 받고 목숨만 겨우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을 한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것예요."[연구인터뷰참여자G]

④ 자식을 낳고 엄마를 이해 함

이들은 폭력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역시 결혼한 후 자식을 낳은 후에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보다는 엄마를 선택하겠다는 표현은 엄마가 당했던 가정폭력을 직접 당해보니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심정의 표현이었다. 결국 이들은 폭력가정에서 자랐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타인에 의한 결혼생활을 경험하게 되며, 남한에 와서도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남성들도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남한에서 남편과 엄마를 선택하라면 엄마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얻어맞으면 살았지만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엄마의 심정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연구인터뷰참여자B]

"나는 북한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내 가슴에 아프게 자리를 잡을 줄은 몰랐답니다. 함께 살 때는 욕하고 때리고 하니까 집을 뛰쳐나와 한국으로 왔는데 정작 타양에서 고생을 하여보니 집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워 보니 부모님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은 나지만 지금은 곁에 없어요. 부모님들을 보고 싶어요. 점점 어린 애가 되어 간다고 와이프가 놀려요."[연구인터뷰참여자F]

3) 이용당함

이들은 대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게 되는데, 중국으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하여 조선족이나 한족과 강제 결혼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들이 남한에 와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생활을 인정받으면 바로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에 있을 때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남편이나 자식을 초청해서 오게 했을 경우, 이들 역시 남한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중국에 있을 때 차별과 폭력을 행하던 조선족/한족 남편들은 결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보지만 고마운 마음을 갖기 보다는 여전히중국에서 보이던 차별과 폭력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이들의 태도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잘해주겠다'고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태도가 '180도로'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북한이탈주민 여성 (아내)은 '왕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는 중국에서 내가 너를 걷어 주었기 때문에 남한에 네가 올수 있었다. 북한에 있으면 거지 돼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언어폭력을 한다."[연구인터뷰참여자A]

"처음 혼인신고를 할 때는 세상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나겠구 나 이럴 정도로 진짜 나한테 잘해주고 그랬는데 딱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기 아이들 초청하고 조카에 누나 아들, 자기 아들까지 데려오니까 180

도 완전 달라졌다."[연구인터뷰참여자B]

"사람이 내가 힘들고 특히 명절 때 내가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명절이 되면 남편은 자기중심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여 가고 있다. 말로는 세상에서 제일사랑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하여 주겠다고, 너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나를 이용하고 머릿속에는 다른 여자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불화가 명절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는 남편이 패백 하니까 참고 견디었지만 한국까지 와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한국에 좀 먼저 왔다고 완으루 큰소리쳐도 정보를 아는 데는 여자보다 못하더라구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재단에서 병원비를 몇 퍼센트 지원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내가 알아서 병원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만 사랑해요. 결국은 유리할 때는 사랑하고 불리할 때는 나를 동네북처럼 발로차고 때려요. 1년을 함께 살면서 이용당한 생각을 하면 분하여 죽겠어요."[연구인 터뷰참여자C]

(4) 가정폭력 인식부재

① 남한에 와서 가정폭력을 알게 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서 상당한 기간 적응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술을 먹고아내나 자식을 때리는 것을 '가정불화'라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정당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불화'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남자의 경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상이라고 여기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가정불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남한에 와서야 북

한에서 있었던 일들이 폭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남한사회가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상담 등 여러 대처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정폭력을 이해한 후에는 북한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을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보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

"저는 북한에서는 몰라서 얻어맞고 살아왔지만 남한에 와서야 나처럼 가정에서 때리고 패고하면서 사는 것이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요."[연구인터 뷰참여자C]

"저도 한 게에 도달하자 가정폭력이란 말을 남한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정불화로 쓰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이 가정폭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연구인터뷰참여자B]

"북한에 살 때 우리가정도 조금씩은 싸우면서 살지만 험하게 남편한테서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누구 네는 아주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TV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하여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는데 와이프가 가정폭력이라고 설명하여 알게 되었구먼..."[연구인터뷰참여자D]

"내일이 아니니 무심히 듣고 보고 하였지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골 때리네요. '조그마한 언쟁도 가정폭력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볼 때 '저 집에서 또 가정불화가 일어나 싸웠대.'하고 마는데 여기는 법적 고소를 하는 것을 볼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할 짓이지, 참 여자들이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가정에서 와이프를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어요. "[연구인터뷰참여자E]

"도대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잘살자고 하니 싸우는 것이지...우리북한에서는 여자들은 어디 하늘같은 남편한테 대답질을 하게 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었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잘못 된 거요. 와이프가 남자들이 저렇게 하면 여기서는 가정폭력이라고 신고한다고 할 때 어이없어서 그럼 너 나를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욱질렀더니 하라면 못할 것 같은 가구하면서 달려 드는 것요. 참 귀가 막혀서 못 살 같 구만...여자들 세상이요."[연구인터뷰참여자E]

② 가정폭력 이해가 부족했음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만약 이들이 가정폭력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한족 남편을 남한으로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좋은 교육기회인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깊게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만약 하나원 교육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것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권침해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약기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우리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여 주었더라면 중국에서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정보를 모르다 보니 그저 그 사람 때문에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말 못하는 소처럼 견디었다는 동정심으로 데려오지요."[연구인터뷰참여자A]

"하나원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듣게 한다면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B]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은 왜서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교육을 받기가 제일 좋은 것인데 이런 교육을 하나원에서 하여 주었으면 가정폭력을 미연에 대처할 수있지 않았을까요? 잔득 알아듣기 힘든 말만 들어와 강의하니 모두가 지루하고 힘들어서 잠을 자지 않으면 강의를 빠지는 현상들이 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C]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해주었더라면 여자들이 남성을 선택하는데서 좀 신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남자들도 멋모르고 덤비지 않게 말입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E]

"저는 하나원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 해주면 여자들이 기고만장한 것을 어떻게 봐줘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여자들은 좋을 것 같지만 남자들은 아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들에게 잘못 선전이 되면 약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13년 살아보니 한국이 여자들에게만 좋은 나라예요. 남자의 편의는 보지 않고 여자의 편의만 들어주는 나라 여자는 정말 좋을 것입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G]

③ 기가 막힌49) 나라라고 함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한다. 가정폭력으로 '여성들이 잘못해도 남성들이 문제가 되 고', '조그마한 언쟁을 해도 법에 고소하고', '참여성들이 살기 좋은

⁴⁹⁾ 답답하다는 말이다. 즉,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볼 때 하는 말이다.

기막힌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북한남성들은 가정에서 언어적으로 다툼을 하여도 크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잘 인식이 안 되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북한사회자체가 폭력성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나는 한국에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나라가 참 한심하네요. 북한에서는 가정싸움을 해도 누구의 불찰(원인제공)로 싸웠는가를 먼저 따지고 시시비를 가르는데 여기는 무조건 여자의 편에서 문제를 보니 참 기가 막힌 나라요. 기가 딱 막혀있어요. 남자들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도 안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해도 원인제공자는 문제가 안 되고 맞은 자 편에 서서 문제를 다루니 이게 말이 되어요. "[연구인터뷰참여자D]

"한국에 와보니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말이 우선 없고 가정불화라고하는데 가정싸움이니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설사 싸운다고해도 제기되면 원인제공부터 찾아 문제를 판 가리를 하는데 남한은 무조건 맞은 사람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을 보려하면 누구나 다 조건을 만들어 맞고 치료비를 뜯어내려고 할 것이요. 남의 가정 일을 법이 개입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서 개입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자들은 살판이 나고남자들은 머저리가 되는 거요. 이런 것을 보고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하지요."[연구인터뷰참여자 E]

"내가 와이프와 살다가 와이프한테 정착금을 다 사기당해 법에 고소하였는데 와이프가 남편이 때렸기 때문에 자기는 정착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여. 그래서 내가 와이프를 믿고 정착금을 맡기고 때린 적이 없다고하여도 내말을 믿지 않는 거여.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절로 자기를 흠집을 내어 내가 때려 멍이 졌다고 하였는데 그날은 내가 며칠 지방에서 일하고 올라왔는데 때렸다는 날자하고 맞지 않는 거요. 그래도 우기니까

그편에 서는 것을 보고 이 나라는 기가 딱 막혀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와서 14년을 사느라니 볼 것 못 볼 것 다 본 것 같아요. 한국은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는 나라요. 죄를 지은 범죄인은 인권이 있는 나라 그래서 기가 막힌 나라라고 해요. 참한심한 나라예요. [연구인터뷰참여자F]

(4) 가정폭력을 알게 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와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폭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의 삶도 가정폭력이었고, 중국에서의 삶도 가정폭력이었고, 현재 남한에서도 역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는 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남한사회의 법적 조치가 현실과는 맞지 않게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대처할 경우에는 '폭력'에 대응하는 대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정사에 대처하는 형식적인 대처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북한에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중국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모르며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아온 것이 분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까지 가정폭력을 당하면 너무도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었다면 무방비상태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B]

"가정폭력을 놓고 볼 때 가정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그걸 실제로 대처하는 방법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봐요.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대처하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C]

"우리는 북한에서 가정불화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니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나라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고 하니 괜찮은 면도 있는데 잘못 개입되면 살 것도 이혼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법에서 신중하게 처리되어 주어야 할 것 같구만. 한국에 와서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배웠네요. 시간이 가면 갈 수록재미있는 것 같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E]

3)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연구참여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것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3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는 '중국에서차별', '또 다른 차별', '남한에서의 차별'로 나타났으며, 각각 하위범주는 '국적 없음', '도움 받고도 차별 함', '한국인이면서도 이방인으로 차별함', '따가운 시선 받음',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 '인종차별을 받음'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이주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이에 따라 남한사회 내부에서도 다른 형식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작용되는 것이 아래<표-44>에서 나타난다.

<표-4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

범주	하위범주	내용
중국에서 차 별받음	국적없음	국적이 없다고 무시 공안에게 신고할까
또 다른 차 별함	도움 받고도 차별 함	남한에 와서까지 명절이 없었으며 자기들끼리 나 때문에 국적 받고도
	한국인데도 이방인으로 차별 함	거지 간첩 아니야 후진국 말만 한국 사람이지
남한사회에 속하지 못함	따가운 시선 받음	따가운 시선 수근거림 북한이탈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	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도 인간이니까 시간이 가면

인종차별을 받음

흑인보다는 조금 낫고, 조선족보다는 북한에서 알던 남한이 아니다 또 다시 망명갈까 흑인보다도 못하게

(1) 중국에서 차별-국적 없음

중국에서의 차별은 북한은 이탈한 직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갈 때 인신매매에 의하여 조선족이나 한족과 강제결혼(동거)하게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조선족/한족은 돈 주고 사왔다는 인식이 강해서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국국적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등 위협을 가하고, 뿐만 아니라 국적이 없는 불쌍한 것을 데리고 산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는 국적이 없어서 조선족 또는 한족하고 사는 경우 가정 안에서부터 공안에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에 잡혀가 감옥생활을 죽도록 해보고 시피냐는 식으로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살았지만 남한에 와서까지 무시와 차별, 특히 가정 폭력까지 당하며 살자니 너무도 억울하여 반항을 하게 된다."[연구인터뷰참여자A]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는 국적이 없어서 조선족 또는 한족하고 강제로 팔려가 동거 사는 경우 가정 안에서부터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살았지만 남한에 와서까지 무시와 차별, 특히 가정폭력까지 당하며 살자니너무도 억울해요."[연구인터뷰참여자B]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한테 무시 받고 중 국에 왔지만 역시 북한에서보다 더한 짐승취급을 당하여 왔어요. 중국에 서 국적이 없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달려들 어 봐야 공안에 찔러 북한에 북송되어 감옥가지 않으면 처형당하기 때문 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연구인

(2) 또 다른 차별

① 도움 받고도 차별함

북한이탈주민은 지나온 과정을 거쳐 남한사회에 왔을 경우 중국에 있는 남편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은 그들로부터 폭력과 차별을 받은 것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계로 오히려 '고마움을 표해주어야 할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초기에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있었던 차별과 폭력의 모습이 다시금 남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결론적으로 볼 때 자신들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는 도리어 차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폭력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들이 '가정폭력'을 제대로 인식했을 경우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결 같이이야기하고 있다.

"남한에 와서까지 무시와 차별, 특히 가정폭력까지 당하며 살지나 너무도 억울해요. 그래도 한국에 오니 인권침해도 알고, 인신매매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나온 과거를 뼈에 사무치게 한을 가지게 되요. ... 멋모르고 넘어 섰지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줄을 정말 몰랐어요. 지금생각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는다면...콱 죽어 버릴 거예요."[연구인터뷰참여자A]

"사람이 내가 힘들고 특히 명절 때 내가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명절이 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보면 왕따를 줄 줄을 몰랐어요. ... 저는 명절이되면 고향의 부모 형제가 생각나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해요." [연구인터뷰참여자B]

"북한에서 전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황해남도 송림시 황해제철소 대기업에서 전공을 하다가 왔는데 다시 전공기술을 배워 취득하여 학원선생님의 소개로 관리사무소 전공으로 들어갔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급여를 적게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것은 여기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다하는데도 돈을 적게 준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말을 하면 압이 가해질 것 같아 말도 못하고 ... 그러나 최선을 다여 일은 합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F]

"저희들을 보고 '거지','빨갱이', '간첩', '후진국'등의 이유로 힘들게 하는 문제를 참기 힘들어요. ... '간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것을 북한 애들이 '간첩'이라하면 콧방귀를 웃을 것이지요."[연구인터뷰참 여자G]

"저는 남한에서 용접기술을 배워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에서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모 대기업에까지 입사하여 높은 연봉을 받게 되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후진국에서 왔다고 왕따를 주면서 그러더니내가 그냥 못들은 척하고 일을 계속하자 나중에는 '간첩'이 아니냐고 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 모르는 사람은 참고 일을 하지 왜 사직 하는가고 물을 때 정말 열이 머리끝까지 올라요."[연구인터뷰참여자G]

② 한국인인데도 이방인으로 차별함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

서 경험한 것만이 아니다. 남한 사회에서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현장에서 남보다 일 잘하고, 급여를 많이 타면 시샘을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보고 '거지', '간첩이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되고 있음으로 사회정착에 저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이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한국인데도 이방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한국에서 용접기술을 배워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에서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모 대기업에까지 입사하여 높은 연봉을 받게 되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저거지가 여기 어떻게 들어 왔을까고 수군거리고 있지 않는가하면 급여를 줄때면 제 통장을 채서 보기도 하고는 급여가 자기들보다 높다는 것을 알자 거지가 일 잘하네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간첩이 아니야 하고 공공연히 말을 하는 것이요. 나는 정말 분이 머리꼭대기까지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일을 하였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나를 개 도덕으로몰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간첩이라고 할 때는 담당형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개도덕이라고 할 때는 여행자에 가서 비자 발급받았는가를 알아보기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너무 열을 받아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이방인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 G]

"나는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1t트럭을 몰고 회사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지금 도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주먹이 막 울어요. 그래도 참자고 결심하고는 있 지만 힘들 때가 많아요. 말씨가 우리 함북도 말씨가 연변 말하고 가깝다 보니 조선족 같아 보였는지 한 치가 와서 빙정거리기에 옆에서 물러가라고 하자 돈 벌러 왔으면 죽었소 하고 돈이나 벌 것이지 말대꾸하네 하면서 목덜미를 쥐기 에 난 조선족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하고는 저 윗동네 '거지'가 아니면 '간첩'하 는데 정말 죽을 맞이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함께 차를 모는 북한이탈주민 친구 가 그 사람 특수부대에 있다 왔어 잘 못 다치면 죽어요 하자 그럼 쳐보라고 들 이대기에 그 친구가 막으면서 당신들이 모르 것이 하나있네 우리 탈북자는 목숨을 내놓고 넘어서 온 사람들이기에 너××같은 것 하나죽이고 감옥 가는 것은일도 아니야 그러니 그만해라고 하자 손을 떼는데 죽을 맞이었답니다. 그 후에는 덤비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한국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참 한심해요. 좋은생각을 가졌다가도 이런일을 겪을 때마다 이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연구인터뷰참여자F]

"나는 뉴스에서 북한이탈주민 간첩이 나왔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겁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E]

(4) 남한사회에 속하지 못함

① 따가운 시선 받음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경험한 것만이 아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국적을 취득했고,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있는 것이다. 지나가다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자신들을 특이한 존재로 보는 내용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에도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시선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어색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일들도 잦은 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사회구성원이 아닌듯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 때면 남한사회에 있지만 완전히 남한사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 OO아파트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도 따갑고 밖을 나가지 못하였어요. 마트에 가느라고 길에 나서는데 사람들이 '어제 OO동에 온 탈북자래. 굶어죽게 되어서 왔을까? 아니면?'하기에 돌아보니 다시 돌아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A]

"지금도 뉴스가 한번 터지면 남한 사람들이 북학이탈주민은 어떻다고 할 때마다 외국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B]

②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남한사회에 적응하면 남한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남한사회에 통합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도 뭐 여기 법하고 여기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다들 인간이니까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다 알려준다고 시간이 가면은 우리 사람들도 여기서 뭐 배우고 느끼는 거 많으니까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한국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A]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도 자기네 문화를 다 모르면서 우리보고 적응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보고 한국 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국 사람이 되라는 것과 같은데 우리도 그 사회에서살아온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을 좋은 것은 남한에 보여주고 남한 문화도우리가 빨리 익혀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데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하는데 그것은 잘 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연구인터뷰참여자B]

"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가 앓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이 제3 국을 걸쳐 목숨을 걸고 온 걸음인데 우리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연구인터뷰참여자C] "온지 오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처럼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는 유치원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뜻이 다 영어이다 보니 우리가 알아들을 내용이 몇 개나 되요. 빨리 적응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따라 못가는 우리나다 똑같은 사고력인 것 같네요.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아직 이발도 안나온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적응해요. 나는 그래서 그러들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E]

③ 인종차별 받음

더구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은 남한사회가 다문화 인을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흑인보다는 낫 게 여기지만 조선족보다는 못하게'여기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남한에 오니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흑인보다는 조금 낫고, 조선족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연구인터뷰참여자D]

"우리가 북한에 알고 있던 남한이 아니네요. 실제로 와서 보니 흑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때 너무도 후회스러워 외국에 망명갈 생각까지 가져보기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이 통하는데서 적응 못하는 것이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적응하기가 더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E]

4) 연구참여자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과 심리 · 사회 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2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가 구분되었다. 범주는 '우울증'과 '분노'이며, 각각 하위범주는 '우울증', '울다', '분하다', '자살하고 싶다', '화가난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는 <표-45>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내 용

 우울증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불다
 통곡을 하며

 분하다
 조그마한 고마움도 없다는 게 분하다

 분노
 억울하다

 합신여길 때

화가나다

예전에는 참았지만 같이 화를 내고

<표-45>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응

(1) 우울증

① 우울증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였고, 남한에 와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우울증이 심각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도 일한 것만큼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나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

고 있답니다. 기술적인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급여는 다른 사람보다 작게 받으니 골 때리는 것이지요."[연구인터뷰참여자B]

"내가 이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엄마도 나처럼 이래서 이혼을 하였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를 하고 철이 들라하니까 엄마는 내 곁에 없어요.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콱 죽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군 하였어 요. 어떤 달에는 전화비가 100만원 나와 차단된 적도 있었어요. 현재는 우울 증으로 병원치료 중에 있구요. 지나온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더나요."[연구인터뷰참여자F]

② 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힘든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울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토로할 때가 없어서 이들은 '통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는 경우가 있다.

"그때에는 그냥 혼자 울고, 맞아서도 울고 그랬죠. 옆에 뭐 부모 있거나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디 가서 해 볼 데가 없으니까. 혼자 울고, 바 닷가 나가서 혼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통곡 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아 편해지더군요."[연구인터뷰참여자A]

"남한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에 따라 주지 않아 너무도 힘들었지만 남자건 여가건 관계없이 마음속으로 통곡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여도 해결할길이 없다보니 혼자서 또는 술친구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정상이지요."[연구인터뷰참여자F]

(2) 분노

① 분하다

이들은 특히 조선족/한족 남편이 자신들을 이용만 하고 여전히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자신들끼리만 즐겁게지내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폭발'할 정도의 심리적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때문에 온가족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초청하여 남편이 한국국적을 가 졌는데 조그마한 고마움도 없다는 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연구인터뷰참 여자A]

"같은 일을 하고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주는 문제는 정말 분하고 화가 많이 나요.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받아도 서운한데 남보다 기술적인 일을 다하고 그러니까 분하지 않겠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F]

② 억울하다

이들은 북한사회에서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했으며, 제3국에서도 주로 참고 살아왔다. 하나원을 퇴소하여 나오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억울함 을 호소할 방법을 모르고 퇴소하였으며, 하지만 남한에 와서까지 폭력과 업신여김을 받으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호소한다.

"국정원에 들어오니 우리를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보고 물건도 발로 차서주고 하여 속상하였지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조사가 끝나서 하나원에 넘어오니 알아 듣지 못하는 말을 하여 강의시간에 졸리거나 참가하기 싫어 들어가지 않았다고 정착금을 잘랐어요. 이건 억울하지 않아요. ... 그래도 우리는 말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하네요. 총무가 하라니 할 수 있어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힘없으니 할 수가 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A]

"당당하게 한국국적을 쥐고도 자신의 역할을 하기가 힘드네요. 회사에서 탈북자란 이유로 말씨를 놀리거나 비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들어와서 역시 가정적으로 힘드니까 폭력이 가해지니 억울하다고 해야 할 지 ... 아니면 ...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먼저오신 분들이 이런 것을 다 겪고 적응하느라 얼마나 고생 하였을까요. 무시당하고, 업신 받고, 차별받고, 폭력이 가해지니 자살할 생각밖에 안들었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B]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애교라도 부리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 남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격과 말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때가 한두번 이 아니네요."[연구인터뷰참여자G]

"남한사람들이 우리 말투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이 참 머리가 아파요. 원래 말투가 투박한데 흉내를 내고, 또 조금만 자기네 비위를 거슬리면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정말 한 대 치고 싶어요. 사람이 기계 아닌 이상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나면 조금 잘 못할 수도 있는데 ... "[연구인터뷰참여자F]

③ 화가난다

이들은 과거 주로 참고 살아왔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폭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폭력에 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격한 폭력으로 치닫기 보다는 폭력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정도이다.

"예전에는 막 참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도 같이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쥐어지는 대로 마구 던졌더니 도리어 방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 관경을 체험하면서 내가 왜 이때까지 저리처럼 맞고 울기만 하였을까하고 생각하니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한심하여 그러지요."[연구인터뷰참여자A]

"때로는 차별을 받을 때 정말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데 참고 있다가 언제 주먹을 날릴까봐 걱정도 된다. 북한사람들은 성격이 좀 과격하니까 참기가 힘든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내 혼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몇 번 씩 곱씹어 보아요. 그러니 저녁이 되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상가에서 술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점점 더 술이 느네요. 와이프가 찡찡대도 할 수 없지 않아요."[연구인터뷰참여자D]

"죄 없는 우리를 놓고 무조건 '간첩', '빨갱이'등의 말을 할 때는 이 세상을 콱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을 겠어요. 괴롭힐 때마다 북한은 가고 싶지 않고 해외로 망명가고 싶어요. ...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연구인터뷰참여자G]

V. 결론

제1절 양적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인식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가정폭력의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서 23개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춘화(1996)에서 사용한 폭력에 관한 인식 척도를 이해하기쉬운 용어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장덕희(2001)에서 직접가정폭력과 간접가정폭력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연복(2001)에서 폭력허용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에서 폭력태도를 척도로 사용하고, 김희숙(2011)에서 법에 대한 인식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로젠버그(1979)의자아존중 척도와 고광신(2010)에서 사용한 사회적 차별 척도와 심리·사회적응 척도를 이해하기쉬운 용어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돌렸지만 390부 중에서 20부를 버리고 370부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인식 및 가정폭력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여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국내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미치는 심리·사회적응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포함한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의 가정폭력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집단차이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인 가정폭력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 가정폭력 법인식, 폭력경험과 통제변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종속변인인 심리·사회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뿐만 아니라 제언 및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성비는 남성이 135(36.5%), 여성이 235(63.5%)로 전체 응답자의 2/3가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심리적응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예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에 따른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사회적 차별이 낮을수록 심리적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집단변인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때 직접경험에서 하위집단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적응이더 낮은 것을 알수 있다. 폭력에 대한 간접경험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때 간접경험에서 하위집단이더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간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적응이더 낮은 것을 알수 있다.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심리적응이집단 간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이상위집단이더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인식

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에 대하여서도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허용도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응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태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에 따른 심리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조사대상의 성별과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 직접경험, 간접경험,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태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예민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차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사회적 차별이 높을수록 심리적응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직접경험, 간접경험,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집단변인으로 구분하기위하여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대한 간접경험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은 간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사회적응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법에 대한 인식에 따른 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대하여서도 적응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력허용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은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태도에 따른 사회적응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폭력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북한학력, 배우자 출신, 수급여부에 따른 폭력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폭력에 대한 경험은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요인을 확 인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 인, 심리사회적 변인, 폭력인식변인, 폭력경험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할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있었다. 투입된 변인들이 북한이탈 주민들의 심리적응 설명하는 설명력은 높게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 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심 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심리적응을 보다 더 잘하 는 것을 그리고 배우자가 북한 사람인 것에 비하여 남한 사람일 경우에 심리적응을 잘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차별 모두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심리적응을 보다 더 잘하 며, 사회적 차별을 받을수록 심리적응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인식 변인으로는 폭력허용도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변인 중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폭력인식변인과 폭력경험변인이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폭력인식변인과 폭 력경험변인은 심리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보다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보다 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차별경험은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 인, 심리사회적 변인, 폭력인식변인, 폭력경험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할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있었다. 투입된 변인들이 북한이탈 주민들의 심리적응 설명하는 설명력은 52.0%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투 입된 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때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는 나이, 월평균소득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남 한 사회에서 사회적응을 더 잘하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 서 사회적응을 보다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응을 보다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인식 변인으로는 폭력인식,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며,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잘 인식할수록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경험변인 중 심리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폭력인식변인과 폭력경험변인이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폭력인식변인과 폭력경험변인은 심리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다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심리사회적변인들이 보다 더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질적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구성요소와 9개의 범주 와 22개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범주가 '어린 시절 폭력경험', '폭력과 의 결혼', '이용당함', '가정폭력 인식부재'로 나타났다. 범주에 따른 각 하 위범주는 '어린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됨', '이혼/새가정', '인신매매를 당함', '할 수 있는 곳이 없음'. '시아버지에게도 구타당함', '자식을 낳고 엄마를 이해 함', '180도 달라짐', '가정폭력이해가 부족했음', '남한에 와서 가정 폭력 알게 됨', '가정폭력을 알게 됨'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 모두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원인이 경제 적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가정불화인 것을 알 수 있 다. 가정이 불화한 경우 대부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화풀이 대 상이 되는 등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가정은 대 부분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후 새 가정을 꾸린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 우 새 가정에서 새엄마 또는 새 아빠로부터 이유 없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 가정을 꾸리지 않은 경우에도 이 혼이 이루어졌을 경우 어린 자녀들은 이혼한 부모의 생활스트레스를 그 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희망을 안고 들어오지만 가정폭력과 결혼이 어린 시절 폭력 가정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생활 역시 폭력가정의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른 모습을 갖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결혼하여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대로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을 거쳐서 온 경우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하여 한족이나 조선족에 게 가게 되고, 강제로 동거생활을 하게 된다. 자의적 결혼이 아니라 강제 성을 띤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국적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차별이나 폭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찌검을 당해도, 언어적인 폭력을 당해도 '중국공안에 고발할까봐' 참고 지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에서 국적 없이 숨어사는 환경에 놓이다보니 이들의 폭력의 정도는 심각했는데 조선족 또는 한족 남편에게서만 폭력을 당한 게 아니라. 심지어 시아버지에게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한가정의 아내나 며느리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종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결혼은 결혼을 의식하기도 전에 타인에 의해서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결혼이라 할 수 없으며 '폭력과의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차별 및 폭력상황에 있는 결혼생활이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 울거나 소리 내어 통곡하는 경우가 있으며, '말하는 짐승과도 같음'(인간의 가치가 없음)며 차별을 당하던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폭력과 학대를 받으며 원망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폭력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역시 결혼한 후 자식을 낳은 후에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보다는 엄마를 선택하겠다는 표현은 엄마가 당했던 가정폭력을 직접 당해보니 이제는 이해할수 있다는 심정의 표현을 하였다. 결국 이들은 폭력가정에서 자랐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타인에 의한 결혼생활을 경험하게 되며, 남한에 와서도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게 되는데, 중국으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하여 조선족이나 한족과 강제 결혼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들이 남한에 와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결혼생활을 인정받으면 바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에 있을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남편이나 자식을 초청해서 오게 했을 경우, 이들 역시 남한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중국에 있을 때 차별과 폭력을 행하던 조선족/한족 남편들은 결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보지만 고마운 마음을 갖기 보다는 여전히 중국에서 보이던 차별과 폭력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이들의 태도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잘해주겠다'고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태도가 '180도로'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북한이탈주민 여성 (아내)은 '왕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서 상당한 기간 적응하기 전까지는 '가정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술을 먹고 아내나 자식을 때리는 것을 '가정불화'라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일어나 는 폭력에 대해 정당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흔히 일 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불화'라는 관점에 있 어서도 남자의 경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상이라고 여기는 반면 여자 의 경우는 가정불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남한에 와서야 북 한에서 있었던 일들이 폭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국적 없이 중 국에서 당한 자신들의 경우가 인신매매이며,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한 사회가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상담 등 여러 대처방법이 있다 는 것을 알고는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정 폭력을 이해한 후에는 북한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을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보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만약 이들이 가정폭력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한족 남편을 남한으로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좋은 교육기회인데 그 중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깊게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만약하나원 교육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중국에서 강제결혼한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권침해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와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가정폭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의 삶도 가정폭력이었고, 현재 남한에서도 역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는 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남한사회의 법적 조치가 현실과는 맞지 않게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대처할 경우에는 '폭력'에 대응하는 대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정사에 대처하는 형식적인 대처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것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는 '중국에서 차별', '또 다른 차별', '남한에서의 차별'로 나타났으며, 각각 하위범주는 '국적없음', '도움 받고도 차별 함', '한국인데도 이방인으로 차별함', '따가운 시선 받음', '너무 빠른 적응을 원함', '인종차별 받음'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의 차별은 북한을 이탈한 직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갈 때 인신매매에 의하여 조선족이나 한족과 강제결혼(동거)하게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조선족/한족은 돈 주고 사왔다는 인식이 강해서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중국국적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등 위협을 가하고, 뿐만 아니라 국적이 없는 불쌍한 것을 데리고 산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남한사회에 왔을 경우 중국에 있는 남편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은 그들로부터 폭력과 차별을 받은 것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계로 오히려 '고마움을 표해주어야 할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초기에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있었던 차별과 폭력의 모습이 다시금 남한에서도 그대로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결론적으로 볼 때 자신들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는 도리어 차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앞서 폭력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들이 '가정폭력'을 제대로인식했을 경우 조선족/한족 남편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결 같이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경험한 것만이 아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국적을 취득했고,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있는 것이다. 지나가다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자신들을 특이한 존대로 보는 내용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에도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시선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어색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일들도 잦은 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사회구성원이 아닌듯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 때면 남한사회에 있지만 완전히 남한사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남한사회에 적응하면 남한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남한사회에 통합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은 남한사회가 다문화 인을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흑인보다는 낫 게 여기지만 조선족보다는 못하게'여기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가 구분되었다. 범주는 '우울증'과 '분노'이며, 각각 하위범주는 '우울증', '울다', '분하다', '화가난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였고, 남한에 와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우울증이 심각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마음을 토로할 때가 없어서 바닷가나 공원에 나가 '통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은 특히 조선족/한족 남편이 자신들을 이용만 하고 여전히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자신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폭발'할 정도의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에 주로 참고 살아왔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폭력에 대해 인 식하게 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폭력에 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격한 폭력으로 치닫기 보다는 폭력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정도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정신 질환을 앓다가 심하면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한에 도착한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이질적인 남한문화와 언어로 인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변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끝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은 역경을 헤치고 성장하는 모습의 발견과 분단의 아픔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역경을 타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제시된 것처럼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이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료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모습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다면 이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를 가지며,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법을 만들어 주는데도 큰 의의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제3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 일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 상담가들은 이들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경험에 따른 이 슈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이해함으로써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하여 사회지 실천적 제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사회복지적 차원에 서 실천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문제를 제언하게 된다.

첫째,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왔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환경을 가지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제대로 개입이 되고 있지 못한 결과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임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하였으므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폭력 넓은 이해를 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본다. 본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의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질적 연구에서 독특하게 잘 표현을 하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적대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이 연구하여 제시하여 왔지만 1990년대 배고파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면, 2000년 이후로는 엘리트계층과 가족동반 탈북이 진행되므로 정책도, 사회복지서비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그들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며, 사회에 나가면 본인들이 기대하고 왔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후진국에서 왔다', '빨갱이', '거지', '간첩이 아니야'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하고, 가정 안에서는 밖에서 받은 냉대와 고달 품이 가정폭력으로 번져 한참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직·간접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실천현장에서 2000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개인의 삶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2010년 10월 22일 남북하나재단(북 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되어 하나센터 그리고 콜센터가 생겨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가정마다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파악하는 정도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직업이라는 개념이 더 짙어져 있으므로 그들 의 삶을 책임진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라는 개념이 미약함으로 실천현 장에서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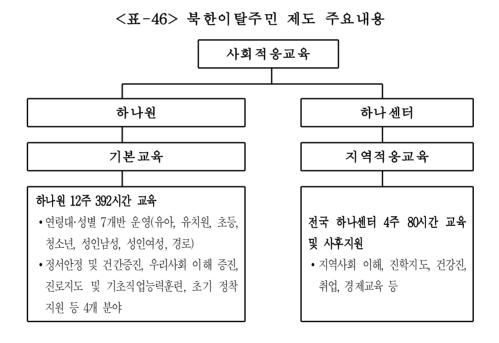
2. 사회복지 정책적 제언

본 연구자는 연구자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도 하여왔다. 통일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북 한이탈주민들을 다문화에 인입시켜야 한다고 논의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한 영토에서 3.8선(휴전선)이 막혀서 제3국으로 돌아 한국에 들어왔을 따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라는 말이 없으며 또는 다문화라는 말자체가 없다. 그러나 북하이탈주민 과 북한이탈주민끼리 결혼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조선족 또는 한족과 결혼한 대상은 다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북한이 탈주민들은 복합적인 가정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 은 북한을 탈출하여 본의 아니게 중국에서 팔려 조선족, 한족과 동거하 여 자식을 낳아 남한에 입국시키고 있으므로 일부대상은 다문화에도 들 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탈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닐까 한다. 이런 복합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도 복합성에 맞게 정 책이 제언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하나원 단계에서 교육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2013년 7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편람에서 <표-46>에서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내용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원에서 12주 392시간이란 교육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들한테 꼭 필 요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미 남보영(2012:102)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

제 정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 폭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을 알아듣고는 있지만 길에 나서면 유치원아이들처럼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하나원에서 유능한 강사들을 뽑아 출연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강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문화에 대한 남한강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진로상담이나, 심리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도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또 제3국을 걸쳐서 함께고생한 준비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배치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와치유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 가정폭력, 성폭력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으므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 상담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하나원에서 필수적 으로 가정폭력, 성폭력교육이 진행되는데 우선적으로 사례와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정 폭력. 성폭력 법을 설명하는 법규책자들을 만들어 하나원과 하나센터에 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은폐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셌째, 하나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북한학을 하였거나 시민단체,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강의와 강사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출연하였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한다. 그 러므로 하나원을 퇴소하여 지역에 배치되면 하나원에서 배운 것이 하나 도 쓸모없다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여 준다면 그 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그들에게 맞는 강사출연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상담에서 법규화

북한이탈주민의 70-80%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고문피해자,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심리·정서적으로불안을 떨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잘알고 그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문가적 상담가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한에서 대학(교육부장관 인정받음)을 졸업하고 남한에서 다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 특히 하나원을 퇴소하여 5년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적인 경험을 체험하고, 성공한 북한이탈주민들로서 상담사로 활동을 하게 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담사들을 상담원으로 함께 배출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남한전문가는 남한의 문화를 잘 알고, 북한이탈주민전문가는 북한이탈주민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 관한 채용을 법규화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하나원과 하나센터 교육프로그램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맞춤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건강악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노동도구로 보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원에 맞는 맞춤교육 그리고 하나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으

로 바꾸어서 진행함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보다 교육수준이 조금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하다. 이러한 평가도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아까운 예산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제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남한사회에 동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야 한다.

4)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강사채용문제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에서 주로 남한 사람위주로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다음 북한이탈주민을 형식상 강사로 활용시키고 있는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 남한에 와서 믿고 따를 사람은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잘 선정한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귀중한 시간과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로편입 되는 순간부터 일정하게 자신의 힘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강사를 제대로 파악이 없이 채용하여 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강사를 채용하여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경험사례를 강의하여 줄 수 이어야 한다.

5)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문제

- (1) 북한이탈주민에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법규를 개발하여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실정이다.
- (2)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제대로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교육을 예방적 차원에서 의무화 하여야 한다.

(3) 북한이탈주민들이 70-80%이상이 제3국을 걸쳐 피해를 당하고 오기때문에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을 절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상담사 채용을 법규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서 교육대학(교육부장관의 인정받음)을 졸업하고, 남한에서 다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알고 진로상담과 학업상 담, 취업상담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교육은 필수적인 문제로 제정하여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 교육자들은 남한 사회의 교육자와 다른 점이 있다. 남한은 학교에 상담사가 따로 있지만 북한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상담사이며, 교육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남녀 간 그리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인식 차이를 후속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결과, 결혼생활에서 남한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사이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들어오면 처음에 조사기관을 걸쳐 조사를 받고 보호시설 하나원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교육을 마치면 거주지에 정 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약 400명에 해당한 설문지 를 통해 370명의 설문과 양적연구의 보완을 위해 연구 참여자 7명의 인터뷰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북한이탈주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력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인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을 연구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위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8). "부모교육 ; 탈북 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남한사회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프로그램 효과"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 사회복지학 27, 2008.12, pp.173-193
- 강란혜(2008)."부모교육 ; 탈북 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남한사회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프로그램 효과"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2008권 2호. pp.158-158
- 강숙정(2009), "새터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증진 프로그램개 발" 홍익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은희·이현림(2008).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권 2호. 2008. pp.85-102
- 강은희(2009),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상담이 가정폭력행위 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호선(2011)."가정폭력전문상담원의 전문성이 사례관리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례관리 필요성 인식의 조절효과"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6권 1호. 2011 pp.23-43
- 강희경(2007). "대학생의 가족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팅 폭력"한 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4권 6호. 2007 pp.21-41
- 고광신(2010)."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고광신·김형태(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5권 0호. 2011.pp.45-84 곽병선(2003)."전라북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형

- 사정책>15권 1호. 2003. pp.341-374
- 김가령·전영주(2013).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살태도 및 학교폭력 역할유형인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학연구> 20권5호. 2013. pp.49-75
- 김광웅(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명 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이봉근(2011)."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5권 1호. 2011 pp.1-38
- 김경신·김정란(200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 광주지역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 한국가정과학회, <한국가정과학회지> 4권 2호. 2001. pp.15-28
- 김경은(2013)."가정폭력경험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관계에서 학교폭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8권 1호. 2013. pp.5-30
- 김경준·이수정·김현아·원재연·강희석·함세정(2008)."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발원 연구보고서, 2008, 12, 2-201(188 pages)
- 김동기(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6권 6호. 2009. pp.135-159
- 김미애(2008).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대구대학 교 대학원 상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애(2010). "가정폭력유발요인과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효과", 한국심리학 회지 : 여성, 15(4), 587-611.
- 김미애(2011)."가정폭력 유발 척도개발 연구"지역사회연구, 제19권 제2 호 189p~190p

- 김승철(2004),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서울: 자료원. p.239
- 김승용(2002.2), "노인부부폭력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주·조경미(2011). "간호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 및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한국아동심리재 활학회, <놀이치료연구> 15권 2호. 2011. pp.97-109
- 김재민(2013)."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1권 2호. pp.43-61
- 김재엽(1995)."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개입에 관한 연구; 재미한인가정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세사회복지연구> 2 권 0호. 1995 pp.86-107
- 김재엽(1996)."가정 폭력의 피해자의 가해자를 위한 개입 방안 연구"-임 상 치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구 한국복지재단), <동광> 93권 0호. 1996 pp.19-35
- 김재엽(1996)."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제5권. (국회도서관)
- 김재엽(1997). "한국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과 아동복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국회도서관)
- 김재엽(1997)가정폭력과 아동복지: 제 1 주제"가정폭력; 한국인의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7권 0호. 1997 pp.94-134
- 김재엽(1997).창간호: "부부권력구조와 갈등 , 그리고 폭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권 0호. 1997 pp.41-65
- 김재엽(1998)."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18권 1호. 1998 pp.170-183

-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한국가족사 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2권 0호. 1998. pp.87-114
- 김재엽(1998)."스트레스 및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 김재엽(1998)."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35권 0호. 1998 pp.133-155 Research> 36권 10호. 1998 pp.103-118
- 김재엽·류원정·오세헌·이현(2014)."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9권 1호. 2014 pp.81-101
- 김재엽·이병화·윤여원(2011). "신체적 장애인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성인 기 가정폭력과의 관계 연구 -법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8권 6호. 2011. pp.201-225
- 김재엽·이지현·정윤경(2008)."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 해행동에 미치는 영향"-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2008. pp. 31-59.
- 김재엽·이서원(1997)"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모형에 관한 연구" 영세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33권 0호. 1997 pp.71-93
- 김재엽·이효정·송아영(2007).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권 0호. 2007. pp.27-52

- 김재엽·김희진·최장원(2010).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아내 폭력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한 국소통학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3권 0호. 2010.pp.39-70
- 김정규·이상하·이린아·김정한·신지영·이동후(2014)."게슈탈트 관계형성 향상프로그램(GRIP)이 하나원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자아개념, 사회성, 충동성, 불안과 우울을 중심으로-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18권 1호. 2014 pp. 89-103.
- 김정란(2006), "여성폭력 반대행동" 16일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6.12.06
- 김정란(2014)."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 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내재화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 <한 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23권 2호. 2014 pp.269-279
- 김정수(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5권 1호. 2008. pp.271-299
- 김준호·김선애(1991).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연구총서>1991. 권 15호. 1991 pp.1-214
- 김준호(1991).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 사정책연구> 6권0호. 1991. pp.7-52
- 김준호·김선애(1992)"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2004).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46.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2008).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 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1호, 2008. pp 49-73.
- 김활수(2006)."탈북청소년의 진로선택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김희숙(2011)."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군산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보영(2012),"탈북 남성과 남한 남성의 가정폭력 비교연구"-남한사회 적응과 PTSD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남보영·김재엽(2013). "탈북 남성의 폭력 허용도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남한사회적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8권 1호. 2013. pp.71-91
- 남순현(2008)."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인문 사회과학연구, 19, 51-87.
- 노근성(2004). 보호관찰 중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준법의식, 준법행위수준에 관한 연구: 대인폭력행위자와 비교하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기봉(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0권 4호. 2008. pp.63-83
- 도기봉·오주(2010). "학교폭력 중복경험자의 자아존중감과 문제대처행동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한국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지: 학교> 7권 1호. 2010. pp.37-53
- 독고순(2000)."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2 박사학위논문
- 류도희(2013). "가정폭력 부부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부부상

- 담 사례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권 4호. 2013 pp.67-87
- 류도희(2013)."이혼 소송 중에 있는 가정폭력부부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부부상담 사례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8권 2호. 2013 pp.23-49
- 문남숙·남기민(2008)."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8권 4호. 2008 pp.1227-1248
- 문영희(2014)."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 권의 관점에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8권 1호. 2014 pp.155-182
- 박가람(2014)."가정폭력이 무엇이 문제인가?" 충북일보- 음성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순경
- 박근혜(2012),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혼남성의 대처과정"이화여 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순(2008)."사회적지지가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2014)."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체험된 폭력과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 브 탐구"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권 4호. 2014 pp.3-33
- 배화옥(2011).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 학> 34권 0호. 2011. pp.7-28
- 서경현·최수동·김익현(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 <한국심 리학회지: 건강> 12권 1호. 2007. pp.153-170

- 선우현(2012)"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국내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 제를 중심으로-한국동서철학회논문 「동서철학연구」제64호, 5-28
- 설진배·송은희·이은미(2014)."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 논총> 70권 0호. 2014 pp.157-174
- 송혜정(2013)."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 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한서대학교 대학원 2013.2.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2003).「질적간호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해숙(2004)."가정 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권 3호. 2004 pp.611-636
- 안형숙(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권 1호. 2014. pp.185-203.
- 양계민 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11권 1호. 2005. pp.97-115.
- 양정훈(2005)."북한(사회)의 폭력성이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607-632.
- 양정훈(2007) "북한사회의 폭력성이 새로운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 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7권 0호. 2007. pp.1-21
- 엄경남(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심리·사회적 인 측면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8

- 엄태완(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 상학적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61권 2호. 2009. pp.189-213.
- 엄태완(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처과정의 긍정적 힘에 대한 질적 연구"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32 no.0 pp. 215-1
- 오승환(2001)."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2 박사학위논문.
- 유광욱·원유병(2007)."인문,사회과학편 :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종류 및 폭력 원인"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 과학> 46권 4호. 2007 pp.105-116
- 유만수(2000), "성장기 부부폭력관찰경험, 성 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 법 인지정도가 이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정폭력 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윤여상(2001)."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여상(2002)"탈북자 적응에 관한" 『 태도변용이론 』의 적용 가능성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10권 1호. 2002, pp.195-223
- 윤여상(2003),"탈북자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대하 평가와 전망" 대한정 치학회보 11집 1호, 2003. pp. 353-375
- 윤여상(2003)."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과제"서울 : 통일교육원 발제 자료: 2003. 3. 169. - 23.
- 윤여상·김현아·한선영(2007)."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007, Vol. 19 No. 3, 693-718.
- 윤인진(2004)"탈북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방안".최협·김성국·정근식·유

명기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서울:401-402

- 윤인진·최정민.(2010)"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연구총서 2010-04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 윤진·양승연·박병금(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9권 6호. 2012. pp.79-107
- 이귀숙(2014). "지각된 부모관여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과 또래관계를 매개변수로-"한국아동복지학의, <한국아동복지학의 45권 0호. 2014. pp.261-287.
- 이기영(1999)."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갈등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회과학 연구, 6(1), 389-404.
- 이기영(2006)."소수자집단(minorities)에 대한 사회적 배제: 미국, 독일의 난민이주자, 한국의 탈북이주자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인문사회 연구책임 5회 수행 /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22편 게재 / 저역서 1권 저술 / 총 피인용 134회
- 이기영·성향숙(2001)."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7, 243-271.
- 이덕정(2012)."북한이탈 중년여성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평생학습 경험"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2 박사학위논문
- 이병도·조춘범(2013)."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5권 3 호. 2013. pp.71-93.
- 이서원·조성상(2005). "폭력목격경험 및 폭력허용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도 노인부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

- 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권 0호. 2005. pp.111-131.
- 이수천·김형태(2012). "그룹홈 청소년이 맺는 대리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3권 2호. 2012. pp.87-111.
- 이수정·양계민(2013)."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3 pp.395-421.
- 이선미·이은희·황진숙(1988)."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교육과 가정학연구, Vol.- No.4, 38-46
- 이연복(2001). "대전 , 충청지역 여성들의 성장기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 가정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세사회복지연구> 6,7권 0호. 2001. pp. 180-211.
- 이윤수(2014)."천안함 사건"-유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 한국가족사회복 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43권 0호 2014. pp. 87-110.
- 이정윤(2004)."자살생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문제행동,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학교적응을 중심으로-"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5권 1호. 2004. pp.163-175.
- 이종규(2007). 「질적 연구방법론」교육과학사
- 이종렬·김혜진·고효진(2014).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치위생학회(구 한국치위 생교육학회),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14 권 1호. 2014. pp.39-47.
- 이지연·오경자(2008). "아동 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 회,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8권 0호. 2008.

pp.586-587.

- 이춘화(1995)「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한국청 소년개발원 서울.
- 이춘화(1996)."청소년의 폭력에 관한의식 및 실태 조사 연구"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364.36
- 이혜선·이수정(2010), "가정폭력에 있어 스토킹 행위의 진단적 의미 : 인 명피해의 예측요인으로서의 스토킹"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제 1권 제2호 (2010년 7월), pp. 137-154.
- 이희연·박태정(2010)"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연구. 2010년 제1호 통권 제78호 (2010년 6월), pp. 159-200.
- 장덕희(2001)."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윤옥(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61권 1호. 2013. pp. 231-260.
- 장인섭(2004)."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4.
- 전영평·장임숙(2008)."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과정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 확산성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8권 0호. 2008. pp. 1-23.
- 정은미(2012)."월남자 가족"-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화-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8 권 2호. 2012. pp. 311-347.
-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6)."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한국심리학

- 회,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06권 0호. 2006. pp. 362-363.
- 조성은(2011). "장애인 정책의 사회적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9권 4호. 2011. pp. 247-278.
- 조영아·전우택(2005).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적응문제: 결혼경험자를 중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17-35.
- 조윤오(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한국 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18권 1호. 2010. pp.159-183
- 조윤오(2010)"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폭력수용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 연구. 제18권 제2호 (2010. 10), pp.159-182
- 조인섭(20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 공청회발 제). 2012년 9월 14일
- 조하나·최연실(2013)."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4권 2호. 2013 pp.1327-1345
- 진미정·이순형(2006) "새터민의 자아존감 및 내적귀인성향에 따른 사회 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 권 7호. 2006. pp.141-152
- 진서연(2012)."탈북자를 경시하는 해외공관풍토 고쳐야 한다" 한국논단, <한국논단> 276권 0호. 2012. pp.204-205
- 최선희·김희수(2007)."아내폭력 요인의 다차원 상호작용 구조" 한국가족 사회복지학회 19, 77-96
- 최승호(2010)."충북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충북 발전연구원(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발전연

- 구소 연구보고서(기본과제)> 2010권 13호. 2010. pp.1-5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서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세희(2003)."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차별 ;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지 향성에 내재된 차별"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 이론> 23권 0호. 2003. pp.241-264
- 한인영·홍준성·문현주(2013). "조부모,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폭력가해 경험 간의 관계"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5권 1 호. 2013. pp.181-200
- 허소영·허남순(2003)."경찰관의 가정폭력개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11권 0호. 2003. pp. 103-123.

외국문헌

- Akin, T., Cowan, D., Dunne, G., Palomares, S., Schilling, D., & Schuster, S. (1990). The best self-esteem activities: For the elementary grad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6-359.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lbert.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rown, Jonathan D. and Mankowki, Tracie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ev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Bruce, N, Danforth, J, (2003). Health status and Canada's immigrant popul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1981-1995.
- Caetano, R., Cunradi, C. B., Clark, C. L., & Schafer, J.(2000). Intimate

- partner violence and drinking patterns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S. Journal of Substance Abuse, 11(2), 123-138.
- Campbell, J. C(1991). Prervention of wife battering insights from cultural analysis. Response, 14, 18-24
- Conger, K. J., Rueter, M. A., & Conger, R. D. 2000. "The role of economic pressure in the lives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family stress model."In L. J. Crockett & R. K. Silbereisen(Eds.). Negotiating in times of social change(pp.201-22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Man, A., Dolan, D., Pelletier, R., & Reid, C.(1993). Adolescent runaway: Familial and personal correla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11). 15-27.
- Dibble, U., & Straus, M.(198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1), 71-80.
- Dibble, U. G., & Straus, M. A.(1990). Some social structures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71-80.
-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tino, T., Anderson, G., & Sutton, S.(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58-265.
- Gelles, R. J. (1993). Trough a sociological lens: Social structure and family violence. Newsburt park, CA: Sage publication.
- Goldstein, D., & Rosenbaum, A. (1985).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ly violent men. Family Relations, 34(3). 425-428.
- Glene, C. 200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Allyn & Bacon. 211-220
- Hanson, D., & Shreeve, W. 1997. "Burnout confined or widespread."

-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7: 145-150.
- Hermansson, A, C., Timpka, T., & Thyberg, M.(2002). The mental health of war-wounded refugees; an 8-year follow-up. Journal of mervous and Mental Disease, 190(2), 374-380.
- Hinton, W. L., Yung-Cheng J. C., & Nang, D.(1993). DSM-III-R disorders in Vietnamese refugees: preval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3, 181, 113-122.
- Hughes, H. M., Parkinson, D., & Vargo, M.(1989). Witnessing spouse abuse and experiencing abuse: A "double whamm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2), 197-209.
- Jansinski, J. L.(1998). The Role of acculturation in wife assaul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0(2), 175-191.
- Jeon, W. T., Yoon, D. R., & Um, J. S. (2004).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Study of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Psychiatric care, 43(1), 93-104.
- Kaufman, L., & Zigler, E. (198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In D. Cicchetti and V. Carlt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man, H. C.(1961). Processe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ly. 25.
- Kerley, Kent R, Xu, Xiaohe, Sirisunyaluck, Bangon, & Alley, Joseph M. 2010. "Exposure tofamily violence in childhood and intimate partner perpetration or victimization in adulthood: Explor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urban Thailand."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3): 337-347.
- Kessler, R. C., Molnar, B. E., Feurer, I. D. & Appelbaum, M.(2001). Patterns and mental health predictor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4(4-5), 487-508.
- Kim, J. R.(2003).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 children's wife abuse witnessing and child abuse victim: Adolescent children's

- domestic violence exposure & psycho-social mal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5), 171-180
- Kim, Y. Y. (2008). A study on the adjustment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rovement methods. Korea Institute of policing policy.
- Kitzmann, Katherine M, Gaylord, Noni K, Holt, Aimee R, & Kenny, Erin D. 2003. "Child witnesses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2): 339-352
- Korbin, JE(1995). Social network and family violenc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vember symposium Motiv, 42, 107-134.
- La Gory, M., Ritchey, F. J., & Mullis, J.(1990). Depression among the homel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87-101.
- Lazarus, R. S.(1977). Personality and Adjust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Lee, S. C.(2012).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enagers`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exercising school violence. Forum for Youth Culture, 29, 116-135.
- McLoyd, V. C.,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pp. 105-135). NY: Cambridge Univ. Press.
- Murphy, C., Meyer, S. L., & O`Leary, K. (1994). Dependency characteristics of pattner assaultity 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729-735.
- Nelson, C., Treichier, P. A., & Grossberg, C.(1992). Cultural studies. In: C. Grossberg, C. Nelson, & P. A.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pp. 1-16. New York: Routledge.
- Norton A. J.(1980). The Influence of Divorce on Traditional Life-Cycle Measur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1) 63-69
- O'Keefe, M.(1994). Racial/ethnic differences among battered women & their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 63-78.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 Pico-Alfonso, M.(2005). Psycholog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ajor predictor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29, 181-193.
- Rangaraj, A. (1988). The health status of refugees in Southeast Asia, In D, Miserez(Ed.). Refugees: The trauma of exile. Dordrecht, Netherlands: Nijhoff.
- Reisenhofer, S., & Seibold, C. (2007). Energency department care of women experiencing initimate partner wiolence: are we doing all we xan?. a Journal for the Australian Nursing Profession, 24(1), 3-14.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N. A. (1979). What do I do with him 24 hourrs, Gerontogy, 19(3), pp. 345-355
- Rubin, A & Babbie, E. (199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ifflin.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 Shuchte, S. R., and Zisook, S.,(1993). The course of normal grief, 23-43, in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K. H. (2009).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s of social adjustment. Korea Institute of policing policy.
- Sorensen, S. B., & Telles, C. A.(1991). Self-reports of spouse violence in a Mexican-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population. Violence and Victims, 6(1), 3-15.
- Stiffman, A. R.(1989).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runaway youths, Child Abuse & Neglect, 13(3), 417-426.
- Straus, M.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1), 75-88.
- Torres, S.(1991). A comparison of wife abuse between two cultures:

 Perceptions, attitudes, nature and extent. Issue in Mental Health

 Nursing, 12(1), 113-131.

- Torres, S., Campbell, J., Campbell, D. W., Ryan, J., King, C., Price, P., Stallings, R. Y., Fuchs, S. C., & Laude, M.(2000). Abuse during and before pregnancy: Prevalence and cultural correlates. Violence and Victims, 15(3), 302-321.
- Tyhurst, L.(1951). Displacement and Migration, a study in social psychiat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7, 561-568
- Tyhurst, L.(1980). Refugee Resettlement. Paper presented at Second Pacific Congress of Psychiatry, Phillippine.
- Tyhurst, L.(1982). Coping with Refugees. A Canadian experience 1948-1981.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28, 105-109
- Walker, L. E. (1978). Battered women and leamed helplessness. Victimdogy, 2, 525-534.
- Walker, Lenore E(1977-1978), Battered Women and Learned Helplessness. Victimology.
- Watkin, D. (1978).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71-182.
- Wolfe, D. A., Jaffe, P., Wilson, S. K., & Zak, L.(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3, 657-665.

기타자료

가정행복상담센터 http://COUNSELNG1004.onmam.com

공익과 인권(2004)."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 단 공익인권법센터 주관 2004년도 제2차 학술회의

국가인권위원회(200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06)"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관한연구"

국민일보 (2013, 7, 28). 아내 폭행한 40대 구속…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후 처음.

경기일보 (2013. 5. 16).

구례경찰서 토지파출소 소장 인터넷 2013.5.7.

남성의 전화연합회(2008)

남북의창(2013). "KBS방송"

북한법률제정 법률센터(2007)

서울뉴스 2013년 9월 5일

통일부(20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p. 73-80.

통일부(2013.)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2014.) http://www.unikorea.go.kr

여성가족부(2005).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1)"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서울 여 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부 연구보고서 55. pp. 634. 여성가족부(2013)"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 등 신속한 대응

과 예방 체계 내실화"정부,「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발표 서울 여성가족부 2013.

여성가족부중앙회 2014년 7월 2일

여성의긴급전화1366서울센터

인터넷자료「북한이탈 주민 여성 가정폭력 대책 시급」여성신문 1039호 [사회]

한국여성의전화협회(2008)."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

부록(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번 호			
작성일	년	월	일
담당자			
비고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및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를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각 질문에는 결코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 하게 응답된 설문지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작성하신 설문 지가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빠진 문항이 없이 성실하게 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박 정 순

지도교수:김 형 태

연구자 연락처: mo8879@naver.com

성 별	본인연령	배우자연령	시·구·동	취업여부
□여자□남자	만()세	만()세		□취업□미취업

다음은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에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No	질 문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동의하 는 편이다	이주 동약한 다
1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4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5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6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심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폭력이라고 볼 정도의 심한 체벌이 필요하다.					
8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 될 수 없다.					
9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					
10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11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					
1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13	가족 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14	아이들을 야단치기 위해 때리는 것도 폭력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15	폭력은 사회문제이므로 가족 간의 폭력사용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16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					
17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때려서는 안 된다.					
18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19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					
21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					
22	가까운 사람(가족, 친구 등)까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23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된다.					
24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매는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25	나와 가까운 시람을 때린 시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26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이다.					
27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회롱하는 것은 성폭력 이다.					

2 다음은 과거(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님 간에 있을 수 있었던 말과 행동입니다. 직접 보았거나 소리로만 들은 경험도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해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없었 다	l년에 한두 번	한달 에한 두번	l주일 l화이 상	거의 매일
1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욕이나 모욕적 인 말을 한 적이 있다.					
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이버지에게) 고함을 지르거 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3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4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5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건을 집어던 지려고 한 적이 있다.					
6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건을 부수거 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7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건을 집어던 진 적이 있다.					
8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9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0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발로 차거나 주 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1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1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13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이버지에게) 칼이나 흉기로 위 합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3. 다음은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한 말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없었다	l년에 한두번	 1주일 1회이상	거의 매일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				
6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7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8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9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0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1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 이 있다.				
1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나에게)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 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4. 다음은 여러분들의 폭력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보기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않 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결국 대화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2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3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법적인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 적인 경우가 많다				
4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5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옛말은 일리가 있다				
6	폭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도 많다				
7	옳지 않은 문제를 합법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8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9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만 한다				
10	사회발전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11	많은 경우에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12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13	요즘부모들은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14	사람 간에 말이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란 별로 없다				
15	문명사회에서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5. 다음은 여러분들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대하여 알아 보기위한 질문입니다. 여러 분들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하여 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다.				
2	남편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수 있다.				
3	남편은 아내의 친구관계나 전화를 감시할 수 있다.				
4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있을 때는 외출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5	아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버릴 수 있다.				
6	아내를 때릴 듯이 위협할 수 있다.				
7	아내를 손바닥으로 때릴 수 있다.				
8	아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수 있다.				
9	아내가 원치 않아도 성적 행위를 강요 할 수 있다.				·
10	아내가 불륜인 경우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				

6. 다음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 해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 다음은 귀하가 남한에 거주하면서 남한인으로부터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그 ^렣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주위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무시합니까?					
2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배려하지 않고 모욕한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3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듯 대합니까?					
4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냅니까?					
5	당신을 공공장소에서 감시하거나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6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마치 바보처럼 대한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7	주위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볍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까?					
8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엿듣거나 당신에게 불쾌한 농담을 합니까?					
9	주위사람들이 당신에게 창피를 주거나 모욕합니까?					

8. 최근(지난 6개월간)의 여러분의 감정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 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않 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2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까?				
3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집니까?				
4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여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5	평상시보다 집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6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7	당신은 당신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8	당신은 당신이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합니까?				
9	당신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합니까?				
10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11	당신은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보냅니까?				
12	당신은 자신이 현재 쓸모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13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4	당신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낍니까?				
15	당신은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낍니까?				
16	당신은 생존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낍니까?				
17	당신은 당신의 일상생활을 즐깁니까?				
18	당신은 당신이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심각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19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겁이 나고 공포감을 느낍니까?				
20	당신은 당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1	당신은 모든 것(사람)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22	당신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까?				
23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24	당신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25	당신은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까?				
26	당신은 당신의 미래(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27	당신은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28	당신은 지속적인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29	당신은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30	당신의 예민한 신경이 당신을 방해합니까?				

다음은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폭력관련법이란 다음 2개의 법률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며 피해자와 기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가정폭력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 ① 알았다 🖒 10번부터 응답하여 주세요.
 - ② 몰랐다 ⇨ 11번부터 응답하여 주세요.
- 10. 가정폭력관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해주세요.

No	질 문 내 용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1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3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5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6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 출두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11. 다음을 읽고 가정폭력이라고 생각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세요.

No	질 문 내 용	가정폭 력이다	가정폭력 아니다	<u></u> 다
1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2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3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4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5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6	목을 조르는 행위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8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9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0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11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2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12.	귀하의 중국입국방법은?
	① 여권 또는 도강증② 여권 없이 도강
	<u> </u>
13	북한을 탈북한 때는 언제입니까? (년월일)
14.	남한에 입국한 때는 언제입니까? (년월일)
15.	하나원에서 퇴소한 때는 언제 입니까? (년월일)
	
16.	하나원 기수는 몇 기입니까? (기)
17.	귀하의 가장 큰 탈북 동기 하나만 골라주세요
	① 생활고 때문에 ② 동반탈북을 위해서
18.	귀하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오기까지 체류했던 국가에 모두 √표기하여 주세요
	<u> </u>
19.	귀하가 남한에 입국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나요?
	① 비행기로 입국② 배편으로 입국
	(3) 기타()

20.	귀하가 남한에 입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국하였나요?
	① 관광비자로 ② 남한인과의 국제결혼 비자로
•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u>모두</u> √표시해주세요.
_)
00 -	키크레카 카크카 시스타바O
	귀하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_	① 있다 ⇒ 있다면 23번부터 응답 하십시오
_	② 없다 ⇨ 없다면 24번부터 응답 하십시오.
00 -	
	다음 중 귀하의 자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_	
2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_	① 미혼 □> 미혼인 경우 28번부터 응답 해주세요
	② 기혼③ 이혼④ 동거⑤ 별거
_	
25.	귀하의 배우자(이전배우자나 동거자도 포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_	① 북한출신② 남한출신
_	③ 조선족 ④ 중국본토출신
_	⑤ 기타()
26. T	다음 중 귀하의 결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③ 결혼상담소를 통해 ④ 브로커를 통해
27. 귀하의 혼인 상태에 대하여 해당란에 기입 해 주세요.
① 결혼년도 :년
② 이혼년도 :년
③ 사별년도 :년
④ 동거시작년도 :년
⑤ 별거시작년도 :년
28 귀하의 북한에서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29. 귀하의 남한에서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 되나요?
(⑤ 고등역교(□재역 □중되, □들법)(④ 문대역(□재역□중되,□들법) (⑤ 대학교(□재학 □중퇴, □졸업)
30. 귀하는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았나요?① 그렇다② 그렇지 않다
31. 귀하는 직업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요?① 그렇다② 그렇지 않다
32 귀하의 배우자(전배우자 또는 동거자 포함)의 북한에서 학력은 어디에 해당 되
<u>\$?</u>
⑤ 대학교(□중퇴, □졸업)⑥ 기타()

33.	귀하의 배우자의 남한에서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① 초등학교(□재학 □중퇴, □졸업)②중학교(□재학 □중퇴,□졸업)
34.	귀하의 배우자는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았나요?
_	① 그렇다② 그렇지 않다
35.	귀하의 배우자는 직업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요?
	① 그렇다② 그렇지 않다
36.	귀하의 취업상태는?
	① 취업중 🖒 37번부터 응답하여 주세요.
37	귀하의 직업에 해당되는 곳은?
.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 작 5년 첫 년년 70 0 주 7 () 년년 20 () 전 2년 20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 기타()
38	귀하 가정의 경제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i>.</i>	
3a	귀하의 <u>월평균 가구소득</u> 은 얼마입니까? 약 ()만원
JJ.	마이의 <u>큰'6번 기타크</u> 도 큰다립하기: 하 (
40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입니까?
1∪.	1) 예

41.	귀하는 국가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② 아니오③ 기타()
42.	귀댁의 주 수입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근로소득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③ 정착보조금
	④ 기타()
4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자기집② 전월세집③ 영구임대
4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가정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⑦ 모텔 ⑧ 고시원 ⑨ 기타()
45.	귀하의 종교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 해 주세요.
	① 개신교 (교회)② 천주교 (성당)③ 불교 (절)
	④ 없음 ⑤ 기타 ()
46.	북한이나 제 3국 또는 해외에 현재 살아계신 가족을 <u>모두 표시</u> 해 주세요.
	⑦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⑧ 기타 ()

ABSTRACT

The Experience of Violence at Home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PARK, Jeong-Soon

The Doctor Degree Cours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Christian Schoo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oung-Ta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by adop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parallel, based on precedent study named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Quantitative study established research model from the study issue of "Do the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affect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The quantitative study identified the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by in-depth interview from study participants' viewpoints,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results of quantitative study.

From the quantitative study, major variables' characteristics were found as follows:

Firstly, from the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population was composed of 135 male (36.5%) and 235 females (63.5%), so two thirds of respondents were female.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sex, education in North Korea, background of spouse, eligibility to welfar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allowance level of violence, psychological adaptation to violent attitude of the study participants, T-test and ANOVA was implemen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 to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is point, the higher self-esteem was found to make psychological adaptation more sensitive.

Secondly, T-test and ANOVA was implemen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sex, education in North Korea, background of spouse, eligibility to welfar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recognition of law, allowance level of violence, psychological adaptation to violent attitude of the study participants.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 to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suggest that social concern and intervention is required for preventing discrimination on an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gard to the social discrimination through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recedent studies reports that variable of violence recognition and variable of violence experience do affect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But in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variable of violence recognition and variable of violence experience were found as the factors not exercising big influence on psychological adaptation. Rather,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re found as more influential on psych-social adaptation.

From qualitative study, the contents are categorized into 3 constituent factors, 9 fields and 22 sub-fields, by in-depth interview results.

Firstly, the experience factors of domestic violence by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ategorized into 4 fields and 11 sub-fields,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 results. The categories were experience of violence at childhood, marriage with violence, being utilized, lack of recognition on domestic violence. Each sub-field from the categories were exposure to violence since childhood, divorce/remarriage, victim to human trafficking, nowhere to go, beaten by father in law, understanding mom after delivering my own child, changed mind by 180 degree, lack of understanding on domestic violence, coming to know domestic violence after coming to South Korea, coming to know domestic violence etc.

North Korean defectors come to South Korea with great hope, but the marriage of those participants who grew up in violent home in their childhood are typically violent as well. In their childhood, they made up their mind to act differently when they grow up as they watch their parents' violence, but they appear as succeeding to past violence of their parents.

Secondly, by the result of in-depth interview, the contents of social discriminative experience were categorized into 3 fields and 6 sub-fields. The fields were discrimination in China, another discrimination, not able to join South Korean society, no nationality, discriminative though supporting, discriminating as foreigner regardless of Korean nationality, disapproving manners, demanding too quick adaptation, racial discrimination etc. Though

the marriage is discriminative and violent, they have to lead an isolated life as they have no place to rely on, in fact. So they do cry or wail alone, and speak out their feeling of discrimination as "I feel like a beat speaking human language (human value is lost)". Moreover, the discrimination recogniz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has something in common to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society to multicultural people. W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feeling in South Korean society is that South Koreans regard them higher than the African Americans but lower than Korean immigrants to China.

Thirdly, by the result of in-depth interview, the content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sychological and social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2 fields and 4 sub-fields. Fields comprised depression and anger. And sub-fields were composed of depression, cry, vexation, anger etc.

Most of the participants appeared as suffering depression. As they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North Korea, discrimination and violence while in transition to South Korea, and as they face further discrimination in Korea, their depression should be found as grieve. Serious problems appear and some tries suicide etc. Most are taking treatments at hospital. As they have no place to speak their minds, they sometimes cry to a level of wailing in outer space such as seaside or parks.

They have been exercising patience for living. When they were not recognizing violence, they had no other way than patience. However, as they have recognized the violence in South Korea, they show changed behavior of resistance to violence. However, their resistance remains at genuine protection of themselves, rather than taking excessive violent behaviors. As the proverb "A mouse at bay bites the cat", North Korean defectors' patience can be regarded as exhausted.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with introspective character may take the ultimate option of suicide after

suffering depression, sociophobia, mental disease.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filled with strange culture and languag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endlessly endeavoring in such chaotic environment to find out their own position, rather than a peripheral being. In such process, participants are leading their lives, overcoming hardships to grow, as if they were the symbol of the agony of the divided nation. As the participants presented during the interview,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shall be deemed as the basic barrier to the ir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domestic violence, social discrimination, adaptation, laws on domestic violence.